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자원조 활용 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Multilateral Aid for Enhancing ODA
Effectiveness in Korea's Fisheries Sector

2017. 12.

정명화·이지은·이동림·김세인·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정명화: 연구총괄, 제1~7장

〈연구진〉

이지은: 제3장, 제4장 제1절

이동림: 제4장 제2절

김세인: 제4장 제2절, 제5장 제1절

오서연: 제4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신형태 (한국수산물품질연구원 박사)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유현숙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선진국 원조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마련하여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틀하에서 추진된 우리나라 ODA 사업의 규모는 2014년 1조 9,578억 원에서 2018년 2조 3,903억 원으로 연평균 5% 증가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중(ODA/GNI)을 0.2%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DAC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0.3%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ODA 사업 추진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익 실현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어업 전체 생산량의 45%는 해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원양 어업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원양어업은 주로 연안 개발도상국과 남태평양 등 군소도서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해외 어장을 이용하는 조업국의 책임있는 기여를 요구하고 있고 연안국에서도 지역간 국제기구 및 경제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분야 양자원조 사업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련 다자기구에 대한 협력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자원조의 이론적 배경과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검토한 결과 향후 수산분야 ODA 사업에서 다자원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의 정책과 추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중점 협력이 필요한 다자원조기구를 규명해 낸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이면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됩니다.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수산분야 ODA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수산연구본부의 정명화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박사님, 한국수산업어촌연구원 신영태 원장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세종 박사님, 해양수산부 유현숙 사무관님, 세계은행 Allison Yi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본원의 조정희 연구위원과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요 약 · i



Executive Summary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3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7
1. 이론적 배경	7
2. 선행연구 분석	12
3.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수산분야 다자원조와 국제사회 논의동향 · 17

제1절. 국제사회 다자원조의 논의 동향	18
1. 새천년선언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18
2. 몬테레이 합의와 로마선언	18
3. 파리선언	19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1

제2절.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필요성	24
1. 수산자원 공동관리 중요성 증대	24
2. 수산분야 원조사업의 규모화	24
3. 수원국의 원조 일치 추구	25
4.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 가시성 제고	27
제3절. 주요 국제기구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27
1. OECD	27
2. 세계은행그룹	33
제4절. 시사점	38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현황 · 40

제1절.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체계	40
1. 법제도 및 추진체계	40
2. 추진방향	45
3. 추진 현황	47
제2절.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현황과 특징	50
1. 추진체계	50
2.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현황	50
제3절. 시사점	55



제4장 국내외 사례 · 56

제1절. 국내 농업 사례	56
----------------------	-----------

제2절. 해외 사례	61
1. 일 본	61
2. 미 국	79
제3절. 시사점	92



제5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인식도 조사 · 95

제1절. 수산분야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도 조사	95
1. 조사 개요	95
2. 조사 결과	96
제2절. 시사점	105



제6장 수산분야 다자원조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 106

제1절. 비전 및 목표	106
1. 비 전	106
2. 정책 목표	106
제2절.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	107
1. 기본 방향	107
2. 추진 과제	10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2

제1절 요약 및 결론	112
제2절 정책 제언	116
1. 법제도 개선	116
2. 조직 정비	118



참고문헌 · 120



부 록 · 127

〈표 1-1〉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	10
〈표 1-2〉 선행연구 분석	15
〈표 2-1〉 파리선언 주요 원칙과 12개 지표	21
〈표 2-2〉 MDGs와 SDGs의 비교	22
〈표 2-3〉 남태평양 지역 다양한 협의체	26
〈표 2-4〉 OECD DAC 회원국의 수산분야 ODA 추이	31
〈표 2-5〉 OECD DAC 주요국의 수산분야 양자 ODA 지원 규모	32
〈표 2-6〉 수산 ODA의 국제기구 지원	33
〈표 2-7〉 수산 다자원조의 분야별 지원 추이	34
〈표 2-8〉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 프로그램	37
〈표 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체계	41
〈표 3-2〉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주요 업무	44
〈표 3-3〉 2014-2018년 우리나라 ODA 현황	48
〈표 3-4〉 2011-2016년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	49
〈표 3-5〉 2015-2017년 해양수산부 ODA의 규모	51
〈표 3-6〉 2015-2017년 해양수산부 ODA 세부유형	52
〈표 3-7〉 2017년 해양수산부 ODA 계속사업	53
〈표 3-8〉 2017년 해양수산부 ODA 신규사업	53
〈표 3-9〉 국제수산기구 기구별 납부액	54
〈표 4-1〉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ODA 세부사업 분류	59
〈표 4-2〉 2017년 농촌진흥청 ODA 세부사업 분류	60
〈표 4-3〉 2017년 산림청 ODA 세부사업 분류	60
〈표 4-4〉 일본 국제기구별 다자원조 현황(2015년)	63
〈표 4-5〉 일본 정부의 ODA 일반회계 예산	64
〈표 4-6〉 일본 부처별 ODA 예산	64
〈표 4-7〉 JICA 미션 및 목표	66
〈표 4-8〉 JICA 주요 사업(2015년)	69
〈표 4-9〉 2017년 OFCF 사업 자금계획	71
〈표 4-10〉 OFCF 주요 사업 내용	72

〈표 4-11〉 일본 수산분야 다자원조 규모	73
〈표 4-12〉 일본 수산분야 다자원조 ODA 사업(2015년)	74
〈표 4-13〉 IOTC-OFCF 프로젝트 추진 개요	78
〈표 4-14〉 IOTC-OFCF 프로젝트 주요 활동	78
〈표 4-15〉 미국 수산분야 다자원조 지원규모	88
〈표 4-16〉 2015년 미국 수산분야 ODA 사업	88
〈표 4-17〉 SALT사업 개요	92
〈표 5-1〉 조사 설계	96
〈표 5-2〉 설문 응답자 특성	96

〈그림 2-1〉 UN SDGs의 17개 목표	23
〈그림 2-2〉 서부아프리카 SRFC 협정 구역	27
〈그림 2-3〉 OECD DAC 회원국의 ODA 구성	29
〈그림 2-4〉 DAC 회원국 ODA 추이(2000~2013)	30
〈그림 2-5〉 주요 국제기구의 지정기여와 비지정기여(2013년 기준)	30
〈그림 2-6〉 OECD DAC 회원국의 수산분야 ODA 추이	32
〈그림 2-7〉 OECD DAC 주요국의 수산분야 양자 ODA 지원규모 추이	33
〈그림 3-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42
〈그림 3-2〉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	45
〈그림 3-3〉 다자협력 추진전략 체계도	46
〈그림 4-1〉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체계	57
〈그림 4-2〉 2015~2017년 농업분야 ODA 예산 현황	58
〈그림 4-3〉 일본 전체 ODA	61
〈그림 4-4〉 일본의 양자원조	62
〈그림 4-5〉 일본의 다자원조	62
〈그림 4-6〉 일본 ODA 일반회계 예산 추이(2013~2017년)	63
〈그림 4-7〉 JICA 본부 조직도	67
〈그림 4-8〉 OFCF 조직도	70
〈그림 4-9〉 OFCF 지원 흐름도	70
〈그림 4-10〉 일본의 수산분야 ODA	73
〈그림 4-11〉 CARIFICO 대상국 위치	75
〈그림 4-12〉 CARIFICO 주요 활동	76
〈그림 4-13〉 CARIFICO 운영 전략	77
〈그림 4-14〉 미국의 전체 ODA	79
〈그림 4-15〉 미국의 양자원조	80
〈그림 4-16〉 미국의 다자원조	80
〈그림 4-17〉 미국 ODA 지원 지역과 및 경제규모	81
〈그림 4-18〉 미국 ODA 지원 산업 분야	82
〈그림 4-19〉 미국의 주요 국제기구별 지원규모(2016)	83

〈그림 4-20〉 미국 ODA 체계도	84
〈그림 4-21〉 USAID 조직도	85
〈그림 4-22〉 MCC 조직도	86
〈그림 4-23〉 미국 수산분야 ODA	87
〈그림 5-1〉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인식 수준	97
〈그림 5-2〉 양자원조 사업의 인식도 수준	98
〈그림 5-3〉 다자원조 사업의 인식도 수준	98
〈그림 5-4〉 우리나라 국제개발계획의 인식 수준	99
〈그림 5-5〉 수산분야 양자원조 참여 횟수	99
〈그림 5-6〉 우리나라 ODA 사업 대상 지역 분포도	100
〈그림 5-7〉 수산분야 양자원조의 비교우위	101
〈그림 5-8〉 수산분야 양자원조의 애로사항	101
〈그림 5-9〉 다자원조 참여 경험	102
〈그림 5-10〉 다자원조 참여 횟수	102
〈그림 5-11〉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기관	103
〈그림 5-12〉 다자원조의 장점	103
〈그림 5-13〉 다자원조의 추진시 애로사항	104
〈그림 5-14〉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추진시의 개선사항	104

요약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자원조 활용방안

1. 연구의 목적

- 국제사회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동향 및 주요 선진공여국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정책과 추진전략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기초분석	- 다자원조의 이론적 배경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체계 및 현황 -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 관련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자원조의 특징 및 비교우위 도출 - 국제사회 논의동향 파악
설문조사	-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인식도 설문 조사	- 전문가 모집단 42명	-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 -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방향성 도출
출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일본 · OFCF(일본해외어업협력재단) · JICA(일본국제협력단) - 미국 · USAID(미국국제개발처) · World Bank(세계은행) · USDS(미국 국무성)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 면담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전문가 자문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성 설정 및 시사점 도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원 조 외에도 다자원조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 하였으며, 수산분야에 대한 다자원조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자원조의 특징 및 비교우위를 도출하고,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 하기 위해 수산분야에 대한 다자원조의 필요성을 도출함
-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등 국제기구 전문가 자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추진 방향성을 설정함
- 또한 미국과 일본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시행 기관 담당자와 면담 조사 (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계, 연구소,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 전체 ODA 종합 계획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2016~2020) 기본계획은 중점협력기구 선정 등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다자협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농업분야의 경우 ODA의 추진 체계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신규 ODA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양자원조 사업과 다자성양자 및 순수다자 사업을 적절한 비중으로 구성함
- 하지만 우리나라 수산분야 대외 원조는 주로 해외 어장 이용과 관련한 연안국 및 군소도서국 중심의 양자 ODA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양자

와 다자원조건 균형있는 추진 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 수산분야의 경우 해외 어장을 이용하는 조업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역별 지역수산기구(RFMOs), UNDP, UN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다자원조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음
- 이미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지한 선진공여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산분야 다자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 지역수산기구의 세미나 및 연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대상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수행함으로써 국제기구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다자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다자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공여국-다자기구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채널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연계시킴으로써 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킴
-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인식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분석 결과,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양자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다자원조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자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다수의 응답자들은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의 비교우위로 국제기구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 지역 및 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활용, 선진 ODA 사업 추진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높이 평가함
 - 또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균형감 있는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나, 다자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 추진에 따른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수산분야 다자원조는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우리나라 수산분야 국익 추구와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양자원조 사업과 상호 보완 및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수산분야 다자원조 증진을 위한 정책 비전으로 「우리나라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기여와 국격 제고」를 설정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는 ‘수산 ODA 사업의 선진화 달성’, ‘수산 ODA 지원 채널의 다양화·규모화를 통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다자원조를 통한 우리나라 수산 ODA의 국제사회 인지도 제고’를 제시함
- 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산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필요성 확립’,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산 사업 선정’, ‘우리나라 수산분야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선정 및 중점 지원’, ‘신탁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국제기구 관할 부처와의 협력 추진’으로 제안하고, 이들 4대 기본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이를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제언은 다음 4가지로 제시함
 - 첫째, 법제도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근거 마련, 둘째,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 컨트롤 타워 구축, 셋째,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발굴 협력 체계 마련, 넷째, 해양수산부-세계은행 환경국간 MOU 체결 통한 수산 다자원조 사업 기반 마련

2) 정책적 기여

- 수산분야 다자원조 활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비전, 목표, 기본방향, 추진과제로 세분화해 제안함으로써 수산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설정에 기여
- 수산분야 ODA 사업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적시함으로써 정부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신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에 활용

3) 기대효과

- 양자와 다자원조건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수산 ODA 다양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 다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산 ODA 효과성 제고 및 우리나라와 국제기구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산분야의 책임있는 기여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해외 어장 확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이바지
- 향후 정부 및 해양수산부의 ODA 관련 정책개발 또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

Executive Summary

Multilateral Aid Utilization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Fisheries ODA

1. Purpose

- The study aims to find the strategies and measures to implement and improve multilateral aid for fisheries in Korea by reviewing the current global trend and donor countries' strategies and policie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able〉 Research Methodologies

Div.	Main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 for Selection
Basic Analysis	- Theoretical background for multilateral aid - Multilateral aid implementation system and current status in Korea - Global discussion trend on the effectiveness of ODA	- Literature review -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advantage of multilateral aids based on the latest data due to lack of related research - Read global discussion trend
Survey	- Awareness survey on multilateral aid in Korean fisheries sector	- A group of 42 experts	- Awareness survey on multilateral aid - Set the direc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verseas Investigation and	- Japan · OFCF (Overseas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 Meeting with the concerned	- Set the direction and identify implications through consultation with

Div.	Main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 for Selection
Professional Consultation	·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USA ·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World Bank · US Department of State	- people of overseas and domestic organizations and groups - Consult with professionals of each area and gather opin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vely involved in fisheries multilateral aids and experts from donor countries

2) Features

- The study reviewed the logical basis for the idea that multilateral aid should be in parallel with mutual ai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ODA in Korea and aims to suggest the need for multilateral aids in the fisheries sector and its implementation directions.
- The precedent studies have been analyz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 aids and comparative advantages of multilateral aids and also to establish the necessity of fisheries multilateral aids for stable supply of overseas fisheries resources and for the overseas advancement of Korean deep-sea fishery.
- The consultations with the expe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vely involved with fisheries multilateral aids including World Bank and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or PICES have been conducted to set the implementation direction for the fisheries multilateral aids.
- The face-to-face interviews have been carried out with fisheries multilateral aid officers of USA and Japan to find implications.
- A survey was taken on the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ODA in the fisheries sector in Korea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level and to set the directions into effective implementation.

3. Results

1) Summary

- Korea's comprehensive ODA plan, the 2nd General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 2020) provides multilateral aid strategi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focus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promotes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 The agricultural sector has relatively effective ODA implementation system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to develop new ODA projects by keeping a balance among bilateral, multi-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s.
- However, fisheries ODA mostly focuses on bilateral ODA with coastal and archipelagic states regarding the use of overseas fisheries, without balanced implementation strategy betwe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s.
- While the demands increase for the countries fishing in overseas fisheries to make responsible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growing importance of multilateral aid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RFMOs, UNDP and UN FAO increases the necessity for the strategic use of multilateral aids.
-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that have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aids ar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fisheries multilateral aids to maintain strategic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
- Japan has identified current issues of the target regions through

continuous RFMOs' seminars and annual meetings and discovered and implemented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the findings. As a result, Japan could expand its influence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effectively leverage multilateral aids to improve friendly relations with the concerned countries.

- The US recently established a new governa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aids. Getting out of the existing donor - multilateral organization frame, it diversified channels and used comparative advantages of each channel only to implement ODA projects more effectively.
- The awareness survey on fisheries multilateral aids was carried out on the experts from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hat implements fisheries ODA in Korea.
- As a result, while the awareness level of ODA projects and bilateral aids was high, that of multilateral aids was low. It was analyzed that only few number of experts have carried out or participated in multilateral aid projects.
- The majority of respondents highly recognized the wide net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high expertise in project, an opportunity to learn advanced ODA implementation system as comparative advantages of fisheries multilateral aids.
- The survey result re-confirms the necessit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s and suggests the need to find policy solutions for the expected issues such as lack of multilateral ODA experts and difficulty in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The research result implies that the fisheries multilateral aids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promote sustainable use of overseas fisheries resources and national interest in Korean fisheries sector in a harmonious way and also mutually complement and keep a balance

with bilateral aids.

- [Contribute to Sustainable Securement of Overseas Fisheries Resources and Improvement of National Status] was presented as a policy vision to increase multilateral aids in the fisheries sector. And the policy goals to achieve the vision includes ‘advancement of fisheries ODA projects’, ‘stable securement of overseas fisheries resources through diversification and increase of fisheries ODA channels’ and ‘raising global awareness about Korean fisheries ODA through multilateral aids’.
- The basic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establishment of the necessity for multilateral aid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isheries sector’, ‘selecting the fisheries project which is comparatively advantageous for Korea’, ‘select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lated with Korean fisheries sector and provide support with priority’, and ‘cooperate with the departments work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 trust fund created. And the strategies and the implementation tasks have been presented by sector to realize the four basic directions.
- Four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the government implementation as follows.
 - First, lay a gro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nd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through revision of legal system, second, establish ODA control tower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third, develop a fisheries multilateral aid project discovery and cooperation system and fourth, lay a foundation for fisheries multilateral aids through MOU with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of Korea and World Bank Environment Bureau.

2) Policy Contribution

-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new policy paradig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ODA by making a detailed suggestion of policy directions by segment for the use of fisheries multilateral aids by vision, goal, basic direction and task
- Lay a ground for the government to promote multilateral aids policy in the fisheries sector by reading new trends in fisheries ODA and facing the importance and the needs to adjust to new changes.
- Utilize the research data to correct/complement the existing policies and come up with mid-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s and to establish plans and measures to implement new government tasks.

3) Expected Effects

- Diversification in fisheries ODA through balanced implement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mutual aids and expansion of global influence.
-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fisheries ODA through multilateral expertise and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 between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Promote the expansion of overseas fisheries and stable fishery supply through the fisheries sector's responsible contribution
- Expect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would utilize the research as a basic data in developing ODA policies and mid-and long-term plan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 빈곤 격차가 커지고 빈곤 인구가 점차 증가해 세계 인구의 18%에 달하는 11억의 인구가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빈곤퇴치와 개발협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Social Development Summit)에서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선진국들이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1996년 5월 「OECD의 21세기 구상(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2000년 9월 세계 189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로 확대되어 재천명되었다. MDGs는 201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개발협력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SDGs 구현을 위해서는 다른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여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주체 및 재원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기후 변화, 식량안보, 교역, 난민 문제와 같은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수원국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다자원조는 양자원조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발협력 수행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를 누릴 수 있다. 즉, 다자원조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 원조의 전문성과 노하우, 재원을 할당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채널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원조의 규모의 경제를 허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원조 행정의 인력과 비용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셋째, 원조 행정의 선진화, 즉 전문적 기술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의 현장 훈련의 수단으로서의 다자원조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정치군사적 이유 및 기타의 이유로 양자간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다자간 원조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투자사업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로 다자간 원조를 활용할 수 있다. 다자원조가 가지는 이러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세계 다자원조 총액은 약 250억 달러였으나 2013년 기준 OECD DAC 국가의 전 세계 다자원조 총액은 5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특정 목적을 위한 지정기여금(earmarked funding)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에서 13%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어업 생산량이 정체 또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외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NG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산자원 고갈을 우려해 책임있는 행동 규범을 점차 강조함에 따라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공유재적 성격을 가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제기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수의 지역 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RFMOs)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하 WWF) 등이 수산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이들 국제기구는 최근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에 대한 규제 노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연안 개도국의 IUU 어업 규제를 위한 모니터링·감시 시스템(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이하 MCS) 구축 및 관계 기관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발맞추어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수산강국은 자국의 해외수산자원 공급을 위해서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 지역수산기구(RFMOs), 지역경제협력체와 전략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원조뿐만 아니라 다자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자국에 해외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과 제2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이 마련되면서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비율 목표를 약 75:25 수준으로 설정하여 총 16개 부처가 50여 개 국제기구에 약 1,655억 원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분야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과 해양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ODA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원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수산자원 공급 지역이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연안 개도국임을 고려할 때 양자 ODA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전략적 병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산 국익 실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 수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행 수산분야 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기존 양자원조 중심의 원조사업에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를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 경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국격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다자원조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이 이뤄졌다. 9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된 다자원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자원조의 효과성과 공여국에 대한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Milner(2006)는 다자원조가 상대적으로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Miquel-Florensa(2006), Milner & Tingley(2013)도 양자원조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원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다자원조는 원조 행정의 인력과 비용,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수원국 개발정책과 투자사업에 효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조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정치·군사적 문제로 양자원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다자원조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장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로마선언에 이르기까지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다자원조가 가지는 일반적 비교우위와 더불어 수산 공유재의 공동관리 중요성 증대, 수산분야 원조 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한 인프라 지원, 연안 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국의 수산분야 원조 일치를 위한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 가시성 제고 등 네 가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산분야 원조의 효과성 제고 관점에서 다자원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체계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현재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다자원조의 규모는 전체 ODA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 ODA 지원규모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나 대부분 양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사업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체계 및 시행 주무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국내 농업 사례와 해외 주요 선진공여국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정책 및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의 ODA 사업 추진체계, ODA 지원 정책 및 원칙,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을 검토하였다. 특히 양국의 다자원조 사업 분석은 1차적으로 OECD DAC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규모 및 사업 유형을 도출하였고, 2차로 직접 현지 출장 조사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수산분야 국익 실현을 위해 FAO, 세계은행, 지역수산기구, 지역경제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자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자국의 수산분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자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수산분야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수산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관계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도 병행하였다. 크게 다자원조의 인지 수준, 다자원조의 비교우위, 다자원조 수행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수산 ODA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원조 사업에 비해 다자원조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자원조 사업시 국제기구의 인적자원 활용 및 우리나라 수산 ODA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국제기구와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은 수산분야 다자원조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비전 및 목표를 제시

하였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본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는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보고서와 OECD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다자원조의 이론적 배경, 다자원조의 특징 및 비교우위, 해외 수산분야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ODA KOREA의 공식 통계 자료와 국회, 해양수산부의 예산 관련 보고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다자원조의 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다자원조 추진 동향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추진 방향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시행 전문가의 면담 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함으로써 양국의 수산분야 국익 실현을 위한 다자원조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은행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의 관계자 자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계,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자원조의 인식도, 다자원조 사업의 비교우위, 다자원조 추진의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3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1. 이론적 배경

공적개발원조에서 다자원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여국이 원조 전달 경로로서 다자원조의 선택 원인, 다자원조가 특정 결과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¹⁾. 최근에는 다자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들과 대비하여 양자원조의 비교우위를 논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이와 관련해 다자원조가 전달경로로서 보다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원조가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공여국의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Milner, 2006).

Alesina & Dollar(2000), Headey(2005), Minoiu & Reddy(2007)에 따르면 양자원조는 전략적,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원조를 지원하는 공여국은 지원 분야와 지원 집행 방식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원조가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수원국의 구매처를 공여국으로 제한하는 “구속성(tied)” 원조의 형태이다. 이러한 조건 제한은 공여국이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양자원조가 수원국의 필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Rodrik(1995)은 양자원조가 전략적, 정치적, 군사적 고려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원조에 흔히 제기되는 비판이라고 지적하였다.

Milner(2006)에 따르면 다자원조는 상대적으로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개발 지향적이거나 수원국의 필요에 근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다자원조는 원조 재원에 대해 수원국에 보다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한하는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발에 더 많은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표적화된 원조 제공으로 비용 효과성을 증

¹⁾ Headey, 2005; Minoiu & Reddy, 2007; Radelet, 2006; Ram, 2004; Rodrik, 1995

²⁾ Minoiu & Reddy, 2007; Headey, 2005; Rodrik, 1995

진시켜 개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Miquel-Florensa(2006), Milner & Tingley(2013)는 다자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목표를 혼합하기보다 순전히 수원국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odrik(1995)은 다자기구와 수원국간 상호 작용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다자원조가 양자원조보다 빈곤 퇴치를 위한 효과적 조건 부과(conditionality)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다자원조의 정당성은 개발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자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들이 개도국에게 원조를 받는 대가로 개발 친화적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큰 유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과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다자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 촉진과 빈곤 감소를 위해 향후 거시 경제적·사회적 계획을 포함한 자체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Ram, 2003). 또한 정부 개혁과 반부패조치를 자금 공여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Charron, 2011). 이러한 조건들이 부과되고 수원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다자원조 공여국은 보다 많은 원조 재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원국에 부과된 조건이 일반적으로 개발 촉진과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원조의 지원 조건과 결합하게 되면 개발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예측하였다(Burnside & Dollar, 2000). 한편 양자원조 공여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조건을 부과할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신규 시장 개방과 같은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자국의 이익 추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자원조에서의 조건 부과는 다자원조보다 수원국의 개발 촉진 및 빈곤 퇴치에 덜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자원조의 조건 부과가 보다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들이 투표 블록을 결속해 자국에 유리한 재원 배분을 추진할 경우 다자원조 공여국은 양자원조 공여국보다 불리한 선택에 대처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³⁾. 이러한 “협상을 통한 규칙(negotiated rules)” 제정 절차는 다자원조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수원국에 대

한 조건 부과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해 수립된 다자원조 책임 추적 시스템은 양자원조보다 취약할 수 있다(Christensen, Homer, & Nielson, 2011). 이와 관련해 OECD(2013)⁴⁾도 다자원조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도 책무성과 감독 절차를 갖추고는 있지만 개별 공여국이 다자간 협력과정에서 한 단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원조에 비해 통제력이 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내용으로는 다자원조가 수원국의 민간부문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Bird 및 Mori & Rowlands(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자기구는 수원국에 대해 광범한 정책 분석을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기구의 차관 결정이 민간 기업에게 대상국에 대한 투자 결정시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승인 도장(stamp of approval)”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또한 Kingombe et al(2011), 및 Romero & Van de Poel(2014)도 다자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관 보증을 제공하거나 민간 부문 자원 유치를 위해 정부 또는 기업의 표준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대량 유입하는 “구축효과(crowding in)”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대개의 지속적인 원조는 민간 채널이 제공할 수 있었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crowd out)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다자원조는 수원국에 대해 정당성(legitimacy)이 확보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지원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원조 경로로 간주하고 있다.

나아가 Rodrik(1995)은 다자원조의 또 다른 강점으로 정보 제공을 꼽고 있다. 수원국에 관한 정보는 공유재이기 때문에 다자기구는 개발기금을 적절한 경로로 전달하고 수원국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잘 제공할 수 있다. 즉, 다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정보와 광범한 기술 및 시행

3)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국은 양자원조 또는 다자원조 공여국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조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위험이 야기된다. 공여국은 원조가 개발 성과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한 정치적, 사회적 정책을 원조 조건으로 부과하고자 하지만 수원국은 다자기구의 정책 설정 과정에서 그러한 제한에 반대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태를 통해 수원국은 공여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기타 비용을 회피하면서 계속 원조를 받을 수 있다. (Burnside & Dollar, 2000)

4) Multilateral Aid Report, OECD, 2013

에 관한 전문지식(technical and implementation expertise)을 활용할 수 있어 양자원조보다 원조 전달에 효율적이다. 또한 다자기구는 자원을 공동 보유하고 개별 양자원조 공여국의 능력을 넘어선 지리적 범위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OECD, 2013). 역으로 Cassen(1994)은 유럽 공여국과 많은 구식민지 개도국 간의 관계에서 보듯 공여국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제도적 유사성(institutional compatibility)이 있는 국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양자원조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언어 및 인적 동질성, 기술 능력과 공통된 제도적 구조로 인해 다자간 관계보다 신뢰, 상호 이해와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ssen의 주장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원조보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자원조의 비교우위에 관한 마지막 논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채널을 통해 큰 규모의 원조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양자채널과 다자채널의 수를 늘리는 경우 원조의 분절화(aid 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수원국과 공여국에 원조의 흐름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Acharya, Fuzzo de Lima, & Moore, 2006; IDA, 2007). 그러나 보다 집중화된 원조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2012년도 OECD의 ‘다자원조에 관한 개발원조위원회 보고서(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에 따르면 원조 집중률이 다자원조 공여국의 경우 평균 65%, DAC 회원 공여국의 경우 평균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자원조가 원조의 분절화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1-1〉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

속성		재원규모 증가		비용효과성 증가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
		양자	다자	양자	다자	
1. 원조의 방향	1.1. 개발 목표		✓		✓	다자원조가 공여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인도주의 또는 개발에 대한 고려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음.
2. 공여국의	2.1. 전략적 목표	✓		✓		원조에 제약조건이 부과되거나 공여국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될 경우 양자원조 공여국이 원조규모를 확

속성		재원규모 증가		비용효과성 증가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
		양자	다자	양자	다자	
통제력						대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증대됨. 이러한 원조 자금의 사용 또는 제공 방법에 대한 제한은 원조 자금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음. 그러나 부과되는 제약조건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2.2. 조건 부과		✓		✓	다자기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지속적인 원조를 받는 대가로 개발성과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예를 들어 인권) 또는 경제적(예를 들어 자유화) 정책 개혁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다자원조는 조건 관련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약정의 대가로 더 많은 원조를 동원할 수 있음.
	2.3. 공여국에 대한 책임성	✓	✓	✓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모두 공여국의 신뢰와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무성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양자원조의 경우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책무성 및 감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다자원조의 경우 공여국의 개입이 배제됨
3. 민간투자를 위한 신호 보내기		✓	✓			민간기업은 다자원조 지출이 개도국의 정책에 대한 승인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다자원조 수원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음. 반면 양자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 모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위험 감소 또는 기준 설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4. 수원국에 대한 정당성					✓	다자기구는 정치적으로 보다 중립적이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원국과의 협력이 보다 용이함.
5. 특화 및 전문지식					✓	다자기구는 시행 전문지식과 수원국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 또한 다자기구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음.
6. 제도적 호환성		✓		✓		유럽 국가와 과거 식민지였던 수원국의 협력에서 보듯 제도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경우 양자원조 공여국은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고, 수원국도 보다 큰 규모의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7. 원조 분절화의 완화				✓	✓	다자기구를 통해 핵심기금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의 원조전달경로의 수를 줄일 수 있음. 그러

속성	재원규모 증가		비용효과성 증가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
	양자	다자	양자	다자	
					나 공여국들의 사업 확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원조규모 대비 양자원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자료 : University of Washington Evans School Policy Analysis and Research(EPAR), *Relative Effectivenes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on development and social outcomes*, 2015. p.6 Table 1 인용, 저자 번역, 재정리

2. 선행연구 분석

1)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⁵⁾

홍현표 외(2010)는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ODA 사업 및 수산분야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수산분야의 경우 타 산업분야에 비해 ODA 사업 비중이 매우 낮고 사업의 다양성도 부족하였다. 또한 사업추진기관들의 역할이 서로 분명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고, 우리나라 원양어업과의 연계성도 미흡하였다. 이에 비해 노르웨이, 호주,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수산국들은 수산분야 ODA를 꾸준히 추진하여 국제개발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 실현도 도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업생산 분야에서 연근해 자원관리 실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다양한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발전, 불법어선 감독을 통한 개발경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산가공, 어촌인력 및 어업인프라 등의 분야에도 개발 경험이 풍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수산부문 협력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협력 지역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서부태평양 도서국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 ODA의 필요성과 수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5) 홍현표 외,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수산분야 ODA 사업의 비전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기본 목표로 첫째,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둘째, 수원국의 어촌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 퇴치, 셋째,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본 방향으로서 수산분야 ODA 사업 지속 확대, 수산담당 부처의 자체 ODA 사업 확대, OECD/DAC 기준 준수, 수산 ODA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2)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⁶⁾

본 연구는 주요 선진공여국 5개국(영국,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호주)을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각국의 다자원조 추진 현황과 전략, 집행 체계, 성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는 탐색적 자료분석기법(Exploratory Data Analysis, EDA)과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여 5개국의 다자원조 추진정책의 비교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은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일관성 있는 다자원조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다자원조 추진을 위해서는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우선순위, 중점 협력분야, 국제기구 선정 및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 정책 문서의 작성 및 공표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자원조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선진공여국의 예시를 참조하여 전체 ODA 대비 3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다자원조를 확대하고 지정기여를 활용하여 양자원조와 연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는 다자원조의 전략과 원칙 등을 반영하여 평가체계, 방법론, 평가와 지원의 연계,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손혁상 외,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정책연구, 2013, 13-11

3)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⁷⁾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원조의 통합적인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권율 외(2013)는 국제사회 다자원조의 추진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다자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권율 외(2013)는 다자원조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정책과 원칙 그리고 목표를 검토하고, 향후 ODA는 빈곤 퇴치에 기여하면서 수원국의 자립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UN기구 그리고 글로벌 펀드의 다자원조 비중을 60:28:12로 설정하면서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 및 비중을 산정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지원금 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협의체 개선, 부처간 통합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원조 ODA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4)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⁸⁾

동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해양수산 ODA의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명화 외(2015)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 사업간 미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분절화하고 규모화되지 못하

7) 권율 외,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3-29

8) 정명화 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사업 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2015.

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양수산분야 ODA 중점지원 국가 선정에 위하여 수산자원국(아프리카, 남태평양), 양식환경국으로 수원국을 분류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ODA의 평가기준, 사업분야 및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 효과성과 ODA 사업의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야별로는 수산, 해양, 해운물류, 항만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국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협력관계 및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으로 6가지를 제안하였다. 사업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사업, 자원관리형 양자협력사업, 기후변화관련 양자협력사업, 연안국 저장 및 발전시설 양자협력사업, 양식분야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사업, 남태평양 해양수산 거점 협력사업 등이 도출되었다.

〈표 1-2〉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연구자(연도): 홍현표 외(2010) · 연구목적: 수산분야 ODA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도출	· 문헌조사, 관련기구 자료조사 · ODA 사례분석 · 외부 전문가 활용 등	· 우리나라 ODA 사업 및 수산분야 추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주요 선진국의 ODA 추진사례 검토 · 잠재적 협력국가 및 수요 사업 검토 · 수산분야 ODA 사업의 비전 및 기본 목표 제시
	2 · 과제명: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자(연도): 손혁상 외(2013) · 연구목적: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의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문헌조사 · 계량분석 · 해외 사례분석	·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정책 ·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 분석 ·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
	3 · 과제명: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 연구자(연도): 권을 외(2013)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국제사회 다자협력 추진 동향과 특징 · 우리나라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 연구목적: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원조의 통합적인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도출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4	·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 연구자(연도): 정명화 외(2015) · 연구목적: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현황 파악 및 선진공여국의 ODA 사업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의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및 모범사업 발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유관기관 및 심층면담 · AHP 분석 · 공동연구 및 전문가 자문	·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현황 · 주요 공여국의 해양수산분야 ODA 추진전략과 특징 · 주요 수원국의 해양수산분야 현황과 양자협력 사례 ·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ODA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3.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는 수산분야 ODA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증장기 전략 제시,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공여국의 사례 연구 등이 이뤄졌지만 연구 범위가 양자원조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일부 연구가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자원조 및 다자성 양자원조의 동향,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 추진전략을 의미있게 다루고 있지만 수산분야와 연계된 다자원조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원조 외에도 다자원조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자원조의 특징 및 비교우위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산분야에 대한 다자원조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현장 중심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미국과 일본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시행 기관 담당자와 면담 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여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를 도출하였다. 둘째,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은

행 및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등 국제기구 전문가 자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추진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계, 연구소,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제2장 수산분야 다자원조와 국제사회 논의동향 《

제1절. 국제사회 다자원조의 논의 동향

1. 새천년선언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국제사회가 원조의 효과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OECD DAC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한 보고서인 「OECD의 21세기 구상(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1996)」을 통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절대적 빈곤에 처한 인구수를 201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세계 정상들이 채택한 새천년선언을 통해 유엔의 개발협력과 원조 제공의 방향성을 결정한 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면서 원조의 효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새천년선언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개발목표를 지구적 차원의 의제로 통합하여 이를 8개항으로 구성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UN기구의 활동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 몬테레이 합의와 로마선언⁹⁾

새천년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였다.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활용을 논의한 몬테레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2002)는 개발자금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ODA 확대와 개도국의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 수원국과 공여국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빈곤 퇴치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

⁹⁾ 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2008, pp48~50 발췌, 저자 요약 정리함

두었다.

몬테레이 합의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원조 금액을 확대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자는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2003)을 탄생시켰다. 로마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원국간 지원의 조화와 일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으나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공여국간, 공여기구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었다. 즉,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우선적으로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원국과 공여국은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수원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상호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구간에는 절차와 과정 및 요구사항들을 조화롭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파리선언¹⁰⁾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파리선언에 집약되어 있다. 전 세계 90여 개국 관계 장관과 OECD, IMF, 세계은행 등 원조 관련 다자기구 및 다자개발은행(MDB), 그리고 주요 NGO가 참여하여 효과적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파리회의에서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Ownership, Harmonization, Alignment, Result and Mutual Accountability, 2005)’이 채택되었다”¹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다. 수원국은 자국의 개발 정책과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이 자주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과 제도 수립을 위

10) 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2008, pp51~54 발췌, 저자 요약 정리함

11) 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2008, pp51 인용

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즉, 수원국은 개발 전략을 주도적으로 입안·실행하고, 개발 전략을 성과 지향적으로 실행하여 다양한 지원 제공 주체와 협의·조정하는 노력을 주도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둘째, 원조의 일치(alignment)이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제도, 시스템 수립과 연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수원국은 원조 관리에 필요한 국가 시스템, 절차 및 제도 수립과 기타 개발 지원들을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원국의 공공재정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부 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여국간 원조 활동의 조화로운 운영(harmonization)이다. 즉, 공여국간 원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국은 공통의 조정 사항을 이행하고 원조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공여국간 역할 분담을 통해 공여국이 가진 비교우위와 공여국의 상호 보완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가별·분야별 명확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성과지향적 관리(management for results)이다. 즉, 수원국과 공여국은 개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활동을 관리 및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은 개발 성과에 대해 상호 책임(mutual accountability)을 져야 한다.

〈표 2-1〉 파리선언 주요 원칙과 12개 지표

5대 원칙	지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치(alignment)	2	신뢰가능한 수원국 시스템	공공재정관리 조달시스템
	3	국가 예산에 원조금액 반영	
	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5	수원국 시스템 사용	PFM 시스템 조달 시스템
	6	프로젝트 시행기관 중복방지	
	7	원조예측성	
	8	언타이드	
공여국간 조화 (harmonization)	9	공여국간 조정된 원조집행 메커니즘	
	10	공동수행	현지조사 수원국 진단 평가
성과 중심의 관리 (managing for results)	11	성과 중심 프레임워크	
상호 책임 (mutual accountability)	12	상호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경제포커스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2011, Vol.5 No. 46, p. 4 표 1 참조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¹²⁾

1990년대부터 지속된 원조 지원에도 불구하고 괄목한만한 개발 성과가 없었
다는 비판과 더불어 수원국의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이 나타나면서 OECD
DAC의 회원국 중심으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논의가 이뤄
졌다. 논의 결과 개발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 중 “원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¹²⁾ SDGMUN 자료수집 보고서,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종합 보고서’, 2015, pp. 6~7 발췌, 인용

가 확대”¹³⁾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MDGs가 좁은 의미의 사회개발 즉, 교육, 보건 등의 목표들만 다루고 빈곤의 근본적 문제인 불평등, 환경 등의 문제를 협력의 범주에 두지 않은 점과 목표 이행의 주체를 개도국에 한정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MDGs를 계승하는 차기 개발 목표는 포괄적 관점에서 빈곤문제 해결이 지구촌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중진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되고 국제사회는 MDGs의 한계를 보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라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마련하였다. SDGs는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Goal 16과 Goal 17은 SDG의 Goal 1~15의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Goal 16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도모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세계 약 43%의 절대 빈곤이 취약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취약국가의 약 3분의 2가 빈곤 감소에 실패함에 따라 SDGs의 비소의 원칙을 근간으로 취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와 제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2-2〉 MDGs와 SDGs의 비교

목표 이름	새천년개발목표(2002~2015)	지속가능개발목표(2016~2030)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사회, 환경)
달성 주체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 마련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국내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이행을 UN에 자발적 보고	UN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자료 : KOICA,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6, p.8 인용

¹³⁾ SDGMUN 자료수집 보고서,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종합 보고서’, 2015, p. 6 인용

〈그림 2-1〉 UN SDGs의 17개 목표



자료 : UN 홈페이지(<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prettyPhoto>)
그림 인용 (검색일 : 2017.09.15.)

세부 목표 16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SDS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 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며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부목표 17은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해서는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할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SDGs 세부 목표 16과 17을 근거로 하여 OECD는 향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SDGs 개발 의제 수행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2절.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필요성

1. 수산자원 공동관리 중요성 증대

FAO(2016)는 전 세계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족이 1974년 90%에서 2013년 68.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¹⁴⁾. 즉, 세계 어족자원의 약 31.5%는 과잉어획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 자원의 감소는 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연안 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국의 국민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수산업은 자국민에게 주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 산업이자 주요 외화 획득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주요 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와 NGO 등 민간 시민단체는 수산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경우 정착성 어종 이외에 다수의 회유성 어종도 많으므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접 국가 등과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외교적 중립 위치를 유지하고, 인접국간 정책 조율 및 협력 조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수산분야 원조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수산분야 원조사업의 규모화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진다. 수원국의 빈곤 감축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육상과 해상을 연계하는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¹⁴⁾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 Contributing to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or all, FAO, 2016, P. 38

들면,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경우 어선의 어획 능력도 부족하지만 어획 후 집하장 및 판매 시설, 제빙 시설 부족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손실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수산분야의 특정 지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력,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 구축과 연계될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는 원조 사업 규모의 증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ODA 지원 규모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뿐만 아니라 여성,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ODA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정된 ODA 재원으로 수산분야에 ODA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제약 사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고,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양자원조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분야에서는 FAO 등 UN 산하 기구, 세계은행, 해역별 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RFMOs)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지역수산기구는 각 해역의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기초하여 매년 회원국에게 쿼터량을 할당하고 있으며 자원평가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과학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총 18개이며 그중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남태평양지구수산위원회(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RFMO) 등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을 수행하고 있다.

3. 수원국의 원조 일치 추구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 전략에 기초할 수 있는 원조의 일치성이 요구된다. 수산분야 주요 수원국은 크게 아프리카, 중남미, 아세안의 연안 개발도상국과 남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의 군소도서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연안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원양어업

이 진출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식민지 이후 EU, 미국 등 선진공여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 수산업의 구체적 개발 전략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요 수원국으로 고려하는 연안 개발도상국 또는 군소도서국은 수산업 정책 방향,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큰 틀을 지역 경제협력체 또는 지역 기반 수산위원회에서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후변화,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함인데, 대표적으로 남태평양 도서국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와 같은 정치 조직체 외에 남태평양공동체사무국(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FFA) 등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수산 전반의 정책 방향성이 설정되고 있다.

〈표 2-3〉 남태평양 지역 다양한 협의체

남태평양 지역 그룹	주요 활동 내용
PIF (Pacific Islands Forum)	16개 남태평양 도서국의 정치적 연합체
SP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22개 태평양 도서국의 회원국, 개발관련(경제개발, 수산자원, 기후변화 등)의 자연과학 데이터 수집 및 정책 연구 수행
FFA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17개 회원국, 다량어 자원 관리 및 통제 시스템 이행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지역수산관리기구 중 하나, 중서부태평양 수역 다량어 자원관리 조치 시행

자료 : 저자 정리

서부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카보베르데, 기니, 시에라리온, 감비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세네갈 7개국 이 소지역수산위원회(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이하 SRFC)를 운영하며 영해와 배타적경제구역(Exclusive Economic Zones, 이하 EEZ)을 포함한 협정 수역에서 수산자원 보존 및 이용, 행동 관행(best practice) 채택이라는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림 2-2〉 서부아프리카 SRFC 협정 수역



주 : 짙은 회색 표시는 회원국, 파란색 표시 부분이 협정 수역을 의미함

자료 : FAO 홈페이지 그림 인용(<http://www.fao.org/fishery/rfb/srhc/en>) (검색일: 2017.09.15.)

따라서 이들 연안 개발도상국 또는 군소도서국과 수산분야 ODA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자 ODA 사업 외에도 해당 국가 수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력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 가시성 제고

제한된 수산 ODA 예산의 최대 효과 즉,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와 우리나라 ODA 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ODA 사업의 가시성(visibility)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Frank Voller(2012)는 “가시성이란 보이는 또는 보여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원조의 효과성 관점에서 가시성은 원조의 투명성과 수원국의 주목받고자 하는(want to be noticed) 홍보(public relation)의 중간적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하였다.¹⁵⁾ 가시성은 시각적으로 쉽게 보일 수 있는 상징

¹⁵⁾ Frank Voller, Increasing Vi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How to reconcile two competing objectives?*,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2

(sign), 심볼(symbol), 단어(words or descriptors)의 조합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기구는 누구나 인지(awareness)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홍보물(leaflet) 제작·배포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사업의 가시성은 양자 ODA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예산은 1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4년 27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해양수산 ODA 사업은 모두 남태평양 도서국이나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에 양자 ODA 사업으로 집중 지원되었고 대부분 물자지원 등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조 활동의 가시성이 낮았다. 점차 확대되는 수산분야 ODA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ODA 사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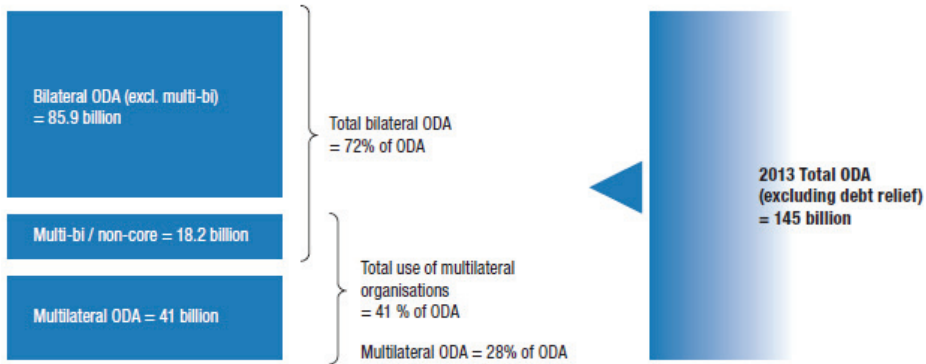
제3절. 주요 국제기구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1. OECD

1) OECD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개요

2015년 발표된 OECD의 다자원조 보고서(Multilateral Aid 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DAC 회원국의 총 ODA 지원 규모가 1,450억 달러이다. 이 중 양자원조 규모가 859억 달러이고 다자원조가 약 592억 달러이다. 다자원조는 다시 비지정기여와 지정기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지정기여 규모가 410억 달러, 지정기여가 182억 달러로 각각 28%, 13%를 차지하였다.

〈그림 2-3〉 OECD DAC 회원국의 ODA 구성



자료 : OECD,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2015, p.2 그림 인용 (검색일: 2017.09.15.)

비지정기여와 지정기여의 의미¹⁶⁾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한 원조는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원조 공여국에서 협력국 즉, 수원국으로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자원조는 국제기구에 모인 여러 공여국으로부터 출연금¹⁷⁾ 또는 출자금¹⁸⁾을 수원국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원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자원조는 조건부에 따라 비지정기여(core contribution)와 지정기여(non-core 또는 earmarked funding)로 분류할 수 있다. 비지정기여는 특정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출연금, 출자금을 일컫고, 지정기여는 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특정 지역, 국가, 분야, 수행조건 등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기금에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여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지정기여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양자원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DAC 회원국의 연도별 다자원조 규모는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정기여금이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다자원조의 비지정기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기여금의 증가로 전반적인 다자원조의 규모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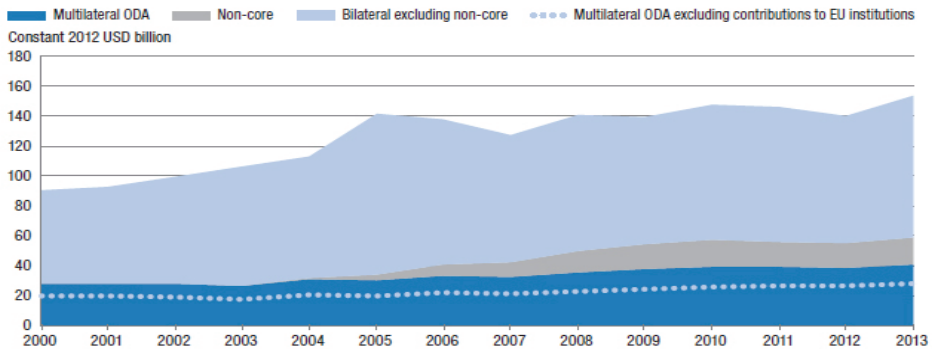
¹⁶⁾ 김종섭 외, 다자성양자원조: 다자원조의 양자화인가 양자원조의 다자화인가? 국가 사혜의 제도적 접근, p.2

¹⁷⁾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양허성 자금출연으로 상황이 불가함.(http://www.odakorea.go.kr/mz.contents.ContsView.do?conts_key=17)(검색일: 2017.09.15.)

¹⁸⁾ 국제기구 신규 가입, 개발은행 등에 대한 정기 자원 보충을 위해 공여국이 납입하는 자금. 자본금의 형식으로 탈퇴 시 상환가능함 .(http://www.odakorea.go.kr/mz.contents.ContsView.do?conts_key=17)(검색일: 2017.09.15.)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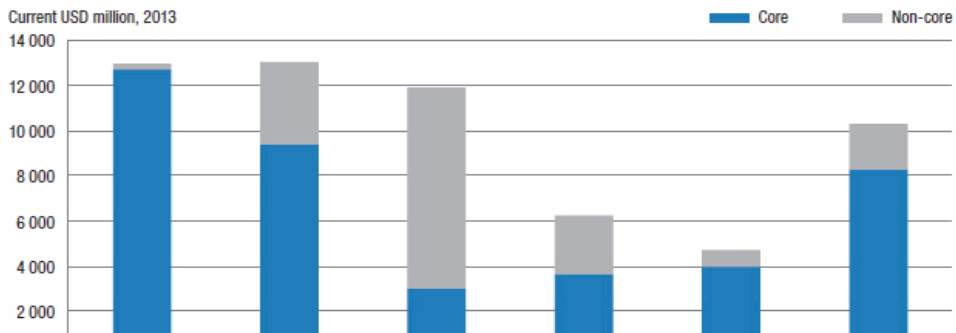
〈그림 2-4〉 DAC 회원국 ODA 추이(2000~2013)



자료 : OECD,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2015, p.3 그림 인용 (검색
일: 2017.09.15.)

OECD에서 분류하는 다자원조의 채널은 크게 UN 및 UN 산하 기구, EU, IMF,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이하 WBG), WTO,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 이하 RDB) 기타 다자기구펀드이다. 2013년 기준, 지정기여 비중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는 UN 기금 및 프로그램, 세계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EU도 지정기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DAC 가입국이자 ODA 공여국인 EU가 자체 개발 정책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 DAC 보고서에 다자기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주요 국제기구의 지정기여와 비지정기여(2013년 기준)



자료 : OECD,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2015, p.5 그림 인용

2) OECD DAC의 수산분야 ODA 지원 동향

OECD DAC의 ODA는 크게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 생산 부문(production sectors), 멀티 부문(multisector), 프로그램 지원, 부채 탕감, 인도주의적 지원, 기타로 분류된다. 생산 부문은 다시 농업, 산림, 수산업으로 세분화된다.

2007년 생산 부문 ODA 지원 규모는 88억 달러였으나 점차 지원 규모가 늘어나 2015년 14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07년~2015년 생산 부문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이다. 양자와 다자원조를 합한 수산분야 전체 ODA 규모는 2011년 332억 달러에서 2015년 약 32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ODA에서 양자원조가 2011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4,900만 달러로 연평균 약 5%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다자원조는 2011년 1억 4,90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6,800만 달러로 연간 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OECD DAC 회원국의 수산분야 OD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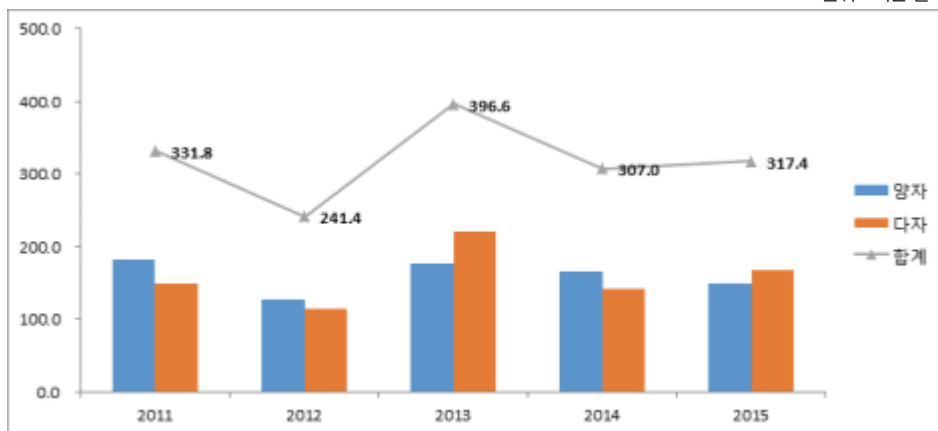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연평균 증감률
양자원조	182.9	127.8	176.7	164.6	149.4	47.1	(4.9)
다자 원조	149.0	113.6	219.8	142.4	168.0	52.9	3.1
합계	331.8	241.4	396.6	307.0	317.4	100	(1.1)

자료 : OECD,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2015 참조 저자 작성

〈그림 2-6〉 OECD DAC 회원국의 수산분야 ODA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2015 참조 저자 작성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수산분야 양자 ODA의 주요 공여국은 일본, 미국,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대 공여국으로 2011년 2,560만 달러에서 2013년 7,360만 달러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지원 규모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5,180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미국, 노르웨이, 스페인은 2012년 이후 지원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2-5〉 OECD DAC 주요국의 수산분야 양자 ODA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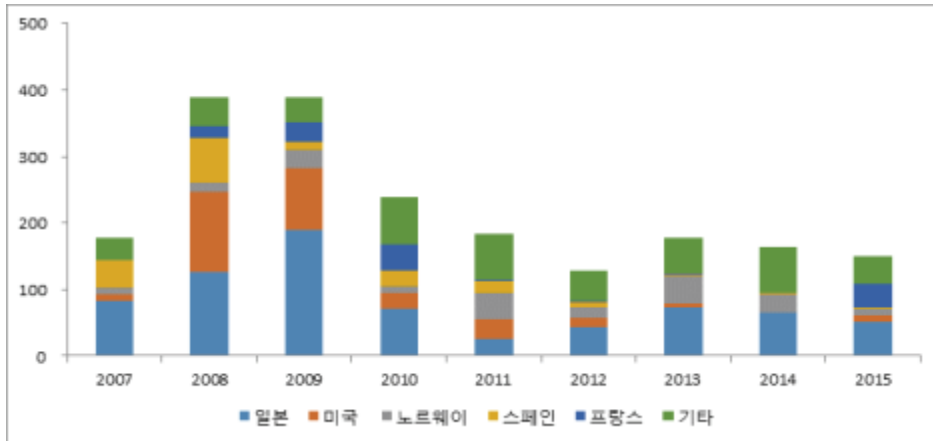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2007	...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07년 기준 비중	'15년 기준 비중
합계	178.4		182.9	127.8	176.7	164.6	149.4	221.7	100	100
일본	82.6		25.6	43.7	73.6	64.9	51.8	81.0	46	35
미국	9.3		29.7	13.0	5.7	0.8	9.9	34.0	5	7
노르웨이	11.3		38.6	16.0	41.4	26.8	9.5	21.6	6	6
스페인	41.3		17.7	8.1	1.1	1.9	2.0	19.7	23	1
프랑스	..		3.3	2.3	2.2	1.2	34.8	15.8		23
기타	33.9		67.9	44.7	52.8	69.0	41.4	56.6	20	28

자료 : OECD DAC CRS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7〉 OECD DAC 주요국의 수산분야 양자 ODA 지원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2015 참조 저자 작성

수산분야 ODA 사업의 다자원조 주체는 주로 WBG, UN, RDB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산분야 다자원조 지원 규모는 약 5억 7천만 달러 수준이며, 이 중 2010년 WBG가 지원한 41억 달러를 예외로 하면 평균 지원 규모는 약 1억 3천만 달러이다.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주요 분야는 ‘수산정책’과 ‘수산개발’이며 2013년부터는 ‘수산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6〉 수산 ODA의 국제기구 지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15년 기준)
합계	92	40	108	4,121	149	114	220	142	168	100%
WBG	4	17	43	4,063	68	67	98	31	98	58%
UN	0	18	0	31	13	0	51	41	39	23%
EU	55	5	46	25	6	17	38	16	22	13%
RDB	34		19	0	2	..	27	11	9	5%
기타				1	60	30	5	44	1	0%

자료: OECD DAC CRS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7〉 수산 다자원조의 분야별 지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산 정책	55.2	9.0	57.6	4,078.6	100.3	45.5	146.1	68.4	73.8
수산 개발	37.3	31.1	41.7	36.1	39.0	58.9	66.5	33.8	64.1
수산 서비스	..	..	..	4.2	..	..	7.2	40.2	30.1
수산 연구	..	..	8.9	1.7	9.7				

자료 : OECD DAC CRS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OECD DAC 회원국이 대상국을 지정하는 다자성 양자 ODA 사업의 경우 주로 UN 및 UN 산하기구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는 UN 이외에도 세계은행, 기타 다자기구 등으로 사업 주체가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세계은행그룹

1) 주요 사업

세계은행은 다른 국제기구보다도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의 발전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세계 총국민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약 61%가 해양과 접하고 있는 연안 100km 반경 이내에서 생산되며,¹⁹⁾ 연안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해양은 자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량 자원과 천연해양 광물 자원의 보고이자 고용 창출을 하는 주요 경제활동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은행은

¹⁹⁾ Rio Ocean Declaration, *Calling for strong and immediate action to me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oceans, coast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t Rio+20 and beyond, 2012, p. 2*

(<https://globaloceanforumdotcom.files.wordpress.com/2013/03/riooceandeclaration.pdf>)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연안 개발도상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며 수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해양 및 연안 자원의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어업의 지원,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설정, 해양 오염원 배출 저감, 연안 통합자원 관리, 해양 건강(ocean health)과 관련한 지식 및 역량 강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색 성장 포트폴리오(blue growth)’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약 64억 달러이다. 수처리(water treatment), 연안 오염원 저감 활동 등 인프라 건설에 54억 달러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어업, 연안 및 해양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 어업은 세계 어업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프로피쉬 프로그램(PROFISH Program)’에 의해 지원된다.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사업별 지역은 남태평양 군소도서국,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남서인도양 연안국이다.

둘째, 해양 및 수산분야 지식 강화 사업이다. 세계은행은 2017년 군소도서국 및 연안 최빈개도국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 혜택을 논의한 ‘청색 경제의 잠재성(Potential of the Blue Economy Report)’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²⁰⁾.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 생태계 건강 등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색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임을 규명하며,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소도서국 및 연안 최빈개도국가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협력과 차별화된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안 최빈개도국의 실질적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수산분야 지식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및 수산분야 지식강화 사업의 결과는 세계 어업, 양식어업, 해양 관련 지역에 관한 지표를 담고 있는 ‘The Little Green Data Book’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²¹⁾.

²⁰⁾ WorldBank, *The Potential of the Blue Economy : Increasing Long-term Benefits of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Coastal Least Developed Countries*, 2017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해양 투자(ocean investment) 활성화, 해양 개혁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활동은 PROFISH Program, 지속가능 어업 연맹 (Alliance for Responsible Fisheries), 아프리카 어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Strategic Partnerships for Fisheries in Africa), 지속가능 어업 및 생물다양성 협약을 위한 해양파트너십(Ocean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Fisherie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2) 주요 성과

가.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 프로그램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 프로그램(The West Africa Regional Fisheries Program)의 대상 국가는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 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이다. 수산업 거버넌스 강화, 불법 어업 저감, 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해양 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세계은행에서 2009년 10월 승인되어 2016년 9월에 종료되었는데 사업 규모는 1,000만 달러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4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사업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 및 규범 강화, 어선 등록 및 유지 관리, 주요 어족 자원의 생물학적 자원 평가, 수산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 어업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세부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기존 승인 금액은 980억 달러였으나 실제 집행 규모는 1,695만 달러였다.

21) WorldBank, *The little Green Data Book*, 2016

〈표 2-8〉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 프로그램

단위: 만 달러

구분	주요 사업	세부 사업	집행 예산
1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거버넌스 구축	- 어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량, 규범, 절차 개발 - 어업권 도입 - 어업노력 및 어획노력량 조정 - 마케팅, 통신 및 투명성	1,695
2	불법어업 저감	- 불법어업 저감을 위한 환경 조성 - MCS 시스템 구축 - CSRP의 MCS 기능 강화 기술 지원	980
3	현지 수산업 생산 증대 기여	- 어업 양륙지 클러스터 조성(냉동창고, 전력 등 기본인프라 포함) - 수산물 교역 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	496
4	조정, 모니터링, 평가 및 프로그램 관리	- 국가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훈련 및 운영비 지원 - CRSP 지역 조정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1,264

자료: 세계은행 프로젝트 홈페이지 인용, 저자 정리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74981509978681209/pdf/ICRR-Disclosable-P106063-11-06-2017-1509978657440.pdf>)(검색일: 2017.12.19.)

나. 기니비사우 해양 및 생물다양성 관리 프로젝트

기니비사우의 해양 및 생물다양성 관리 프로젝트(Coastal and Biodiversity Management Project)는 국가 지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48만 헥타르의 연안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5개 보호구역 중 4개 지역 국립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효과성이 2005년과 2010년 사이 최소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페루 엔초베타 과잉어획능력 저감 사업

세계은행은 페루 정부와 협력하여 엔초베타 어업의 과잉어획능력을 저감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페루 엔초베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엔초베타 어획량 한도를 설정하고 엔초베타 어업이 어획량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페루 어선의 약 30%에 해당하는 총 329척의 목선과 강선을 감척시키고 관련 어업 종사자를 다른 경제 활동에 이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 조정의 성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고품질의 엔초베타를 생산양
 륙할 수 있게 되었고 엔초베타의 가격이 구조조정 이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4절. 시사점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시작되어 2005년 파리선언
 에서 집대성되었다. 5대 원칙과 12개 지표를 담고 있는 로마선언에 따르면, 수
 원국이 스스로 수립한 개발 정책과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공여국은 수원국의 해당
 개발 정책과 전략에 연계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은 성과를 도
 출하기 위해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성과가 없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할 때 원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두드러진 개발 성과가 미약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을 의식한 가운데 출범한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괄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다자
 원조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원조 사업의 규모의 경제,
 폭넓은 전문가 풀과 원조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활용 등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다자원조 사업은 수산분야에서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고, 수산분야 지원 사업의 성과 도출
 을 위해서는 수산업과 연관된 전력, 도로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연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OECD DAC 국가들의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지원 규모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2004년부터 다자원조 규모가 증가하였다. 2011년~2015년 5년 평균 양
 자원조의 규모는 연평균 4.9%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다자원조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성화될 것이라

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을 양자원조 사업과 다자원조 사업으로 균형감있게 구성하고, 국제기구의 다자원조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원조의 일치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수산분야 수원국은 아프리카 지역 또는 남태평양의 군소도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지역 경제협력체 또는 수산소위원회, 지역수산기구 등을 협력하여 수산계획 등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경제협력체 또는 수산 관련 위원회에 원조 사업을 지원할 경우, 원조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수산분야 ODA 사업을 하는 세계은행, UN에 대한 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현황 《

제1절.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체계

1. 법제도 및 추진체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한 법으로는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약칭 : 국제개발협력법)이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ODA의 상위개념으로서, 「국제개발협력법」은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O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법적·행정적 기본틀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²²⁾ 하고 있다. 특히 제2조는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양자원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며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이다.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7.09.29.)

〈표 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위원회의 운영
제4조	기본원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당 등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
제11조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평가소위원회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정보 공개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협약체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18조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7.09.24.)

동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이 종합·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1차 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2017년 6월 현재까지 제29차 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수립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의결 및 전년도 평가 등의 심의·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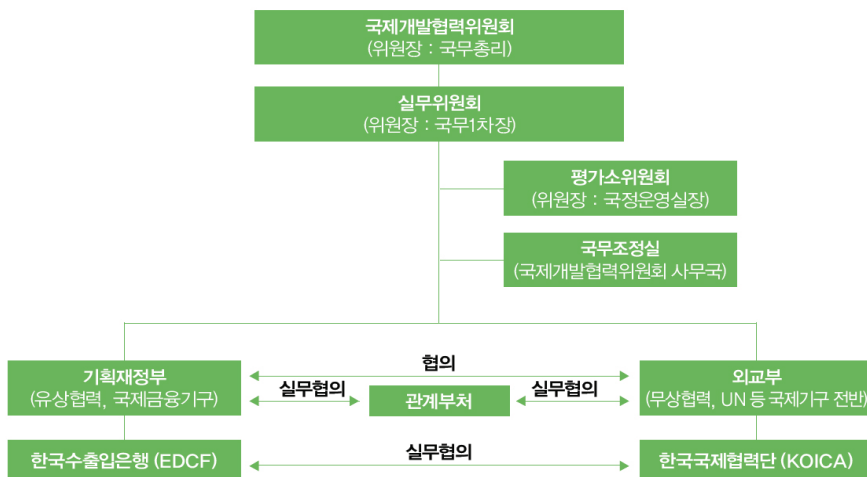
또한 9조에서는 다자간 개발협력의 주관기관으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 장관”을 지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은 총괄, 주관, 시행기관으로 구분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가 각각 유상 및 무상 ODA를 주관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및 외교부의 KOICA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2006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으로 법률상 위원회가 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및 평가소위원회를 직속 산하위원회로 두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정책들이 종합·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ODA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심의·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 구성원은 ODA 주요 중앙행정·관계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들로 이뤄져 있다.

〈그림 3-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 p.40 그림 인용

2010년에는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두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서 간사 위원인 국무조정실장이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현재 개발협력정책관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발협력정책관실의 기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중기계획·연도별 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전략 및 사업지침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 산업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양자·다자간 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 국별·지역별 지원전략의 수립 및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대외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참조, (http://pmo.go.kr/pmo/office/office02_03.jsp#n)
(검색일 : 2017.09.28.)

한편, 기획재정부는 양자 유상협력, 외교부는 양자 무상협력의 주관기관으로 각 부문의 5개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수립·시행·조정·이행 점검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양자 유상협력 주요 시행기관인 EDCF와 경제발전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총괄하고 있는데, 각각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와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EDCF를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되며, EDCF 운영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유상협력 사업 발굴, 집행,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양자 무상협력 주요 시행기관인 KOICA를 관리·감독하며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 채널 역할, 국제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표 3-2>와 같다. 또한 외교부는 전체

무상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들이 시행하는 무상 협력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표 3-2〉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개발정책과	· 무상원조정책 수립·총괄 · 공여국 및 OECD DAC, UN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 ·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 수립 · 무상원조분야 평가 업무
개발협력과	·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무상원조와 관련된 지역별·국가별 원조계획 수립 총괄·조정 · KOICA 지도·감독, 무상원조 관련 통계 집계, 민간사회와의 협력 지원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및 국제적 재난 및 분쟁으로 인한 재건 복구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긴급구호에 관한 업무 ·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자개발협력기구 관련 업무

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 개발협력국 업무 소개, 참조

(http://www.mofa.go.kr/introduce/organized/depart/20110921/1_25497.jsp?menu=m_70_40_10)

(검색일: 2017.09.28.)

양자 유상협력 및 무상협력 시행기관은 각각 EDCF와 KOICA이다. EDCF는 도로·상하수도·병원 등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민자사업 차관 등을 공여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EDCF는 ‘우선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협조융자사업’은 다자원조로 진행되는 우선 추진사업으로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등의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KOICA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개발건설팅, 초청연수,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대한민국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및 전문가 파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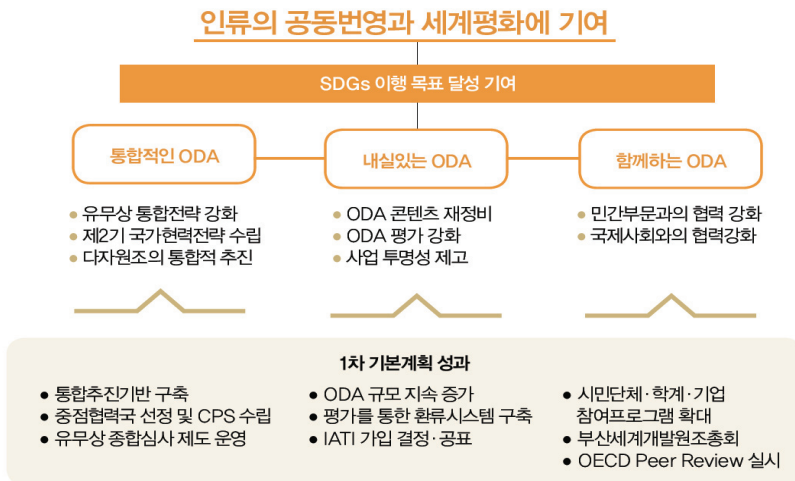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 pp.42-43 참조

이외에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각 기관의 전문분야에 맞추어 프로젝트,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다자협력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EDCF, KOICA가 발주하는 ODA 사업에 여타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 등도 참여하고 있다.

2. 추진방향

현재 우리나라 ODA 사업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과 「다자협력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반영하여 ‘통합적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로 분류되는 8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3-2〉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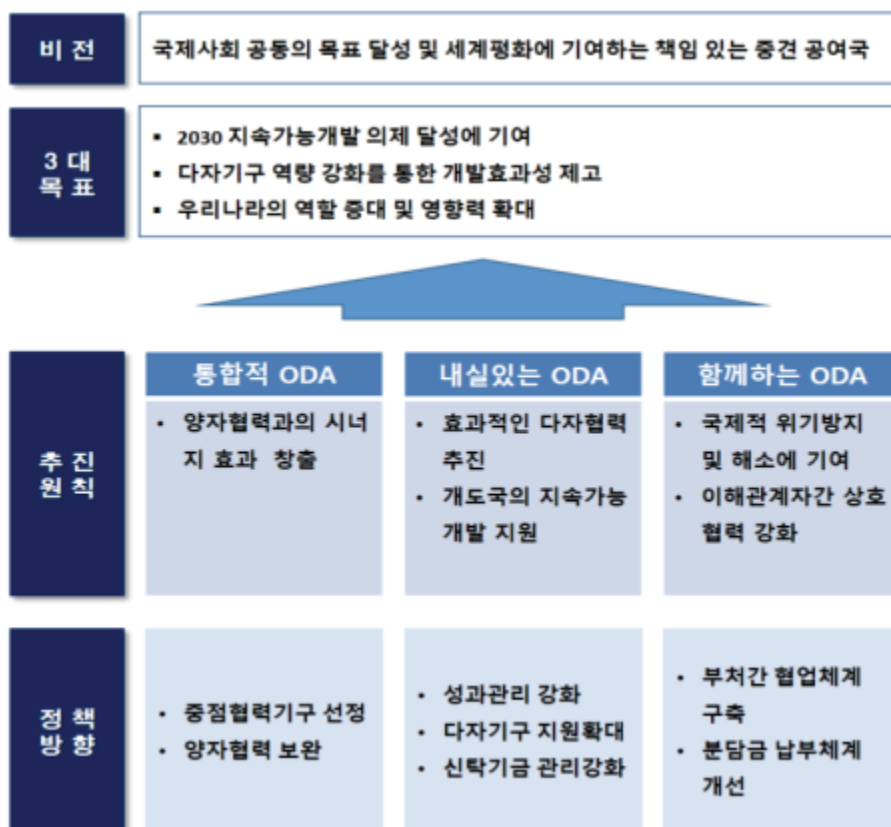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017, p.61 그림 인용

2017년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다자전략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을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 집중 지원하고 둘째, 중점협력 대상기구로 선정된 5대 UN 기구(UNDP, WFP, UNICEF, WHO, UNHCR)에 UN 및 기타 기구 지원 예산의 40% 이상을 집중하며 셋째, 다자협력 분야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²⁴⁾

〈그림 3-3〉 다자협력 추진전략 체계도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2016, p.54, 그림 인용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09.23.)

24) 관계부처 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p.21,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2016년 2월 개최된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동 전략에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 공여국’이라는 비전하에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에 기여하고 둘째, 다자기구 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며 셋째, 우리나라의 역할을 증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이러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통합적·내실있는·함께하는 ODA’라는 추진원칙을 세우고 중점협력기구 선정, 양자협력 보완, 성과관리 강화, 다자기구 지원 확대, 신탁기금 관리강화,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분담금 납부체계 개선의 7가지 정책 방향이 마련되었다.

3. 추진 현황

우리나라 ODA 사업의 추진체계는 총괄-주관-시행이라는 3단계이며 각 단계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이 ODA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42개 기관이 1,24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금액은 2조 3,903억 원에 달한다.²⁵⁾

아래 <표 3-3>의 최근 5년간 우리나라 ODA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ODA 시행 기관의 수는 평균 31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사업수와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 수는 2014년 986개에서 2018년 1,372개²⁶⁾로 연평균 8.6% 증가하였으며, ODA 총액은 2014년 1조 9,578억 원에서 2018년 2조 9,386억 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0.2%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제1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도 이러한 목표 수준이 설정되었으나 2014년

25) 관계부처 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과,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28-1호)』, 2016, p.28 참조,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26) 2018년 국내 ODA 규모 자료는 정부의 예산 요구액으로 2018년 12월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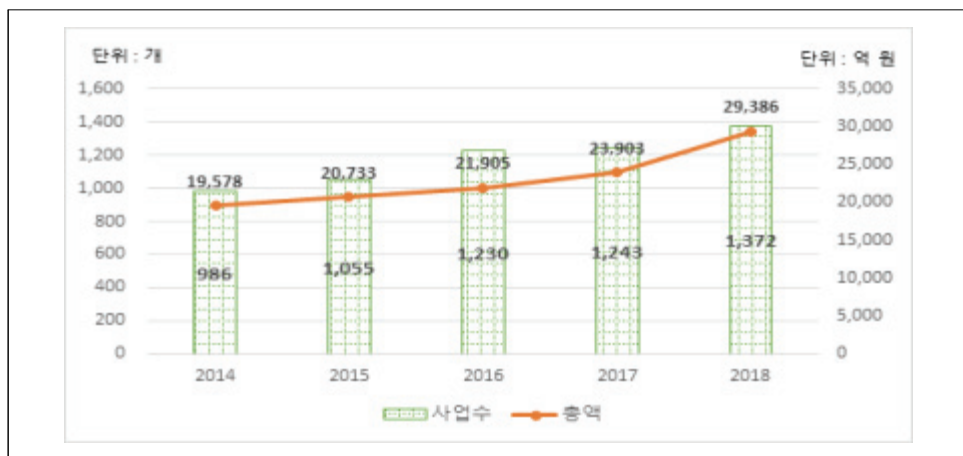
ODA/GNI 비율이 0.13%(잠정)로 목표치인 0.25%에 미치지 못하자 2020년까지 0.2%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DAC 회원국의 현 평균 수준인 0.3%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²⁷⁾

〈표 3-3〉 2014-2018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개, 개, 억 원

연도	ODA 시행기관 수*	사업 수	총액
2014	28	986	19,578
2015	31	1,055	20,733
2016	32	1,230	21,905
2017	33	1,243	23,903
2018(요구액)	32	1,372	29,386

주: ODA 시행기관 수에서 지자체는 제외됨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3-1호)』, 2015, p.17

2) 및 관계부처 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p.28

3) 및: 관계부처 합동,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9-1호)』, 2017, p.33 참조, ODA코리아, 하여 저자 작성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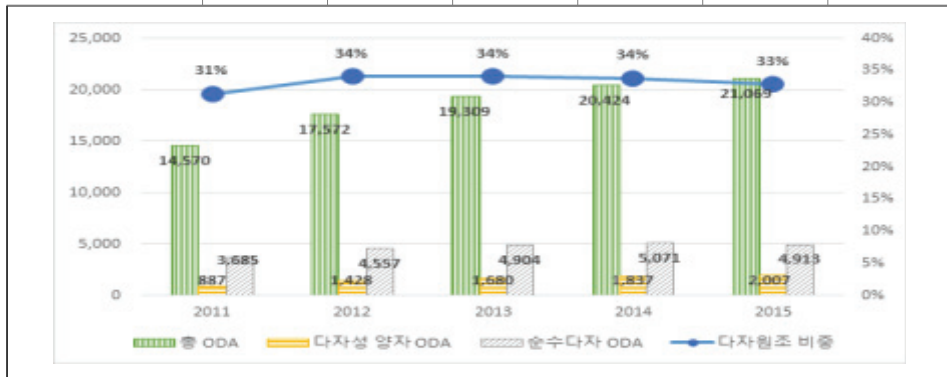
²⁷⁾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2015, p.2 및 p.4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4〉는 2011년부터 2015년²⁸⁾ 우리나라 다자원조²⁹⁾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4,572억 원에서 2015년 6,919억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ODA 대비 다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에서 2015년 33%로 2%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다자성 양자원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887억 원에서 2015년 2,007억 원으로 연평균 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순수다자원조는 2015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1년 3,685억 원에서 2015년 4,913억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2011-2016년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

단위: 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총 ODA	14,570	17,572	19,309	20,424	21,069	21,615
다자성양자	887	1,428	1,680	1,837	2,007	n/a
순수다자	3,685	4,557	4,904	5,071	4,913	4,699
소계	4,572	5,985	6,584	6,908	6,919	4,699
다자원조 비중	31%	34%	34%	34%	33%	22%



주 : 1) 순수다자는 비지정기여 유형의 ODA를 의미하며, 여기서 다자원조는 다자성양자 및 순수다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다자성양자원조의 2016년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아 2016년 다자원조 비중은 순수다자원조의 비중임.

자료 : OECD, Total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C1],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7.10.1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8) 2016년의 다자성양자원조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6년은 분석에서 제외함.

29) 여기서 다자원조란 다자성양자원조와 일반적인 의미의 다자원조(순수다자)를 합친 것으로 정의함.

제2절.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현황과 특징

1.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해양의 개발 이용, 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자간 개발협력의 주관 기관을 기획재정부,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로 명시하고 있어 수산분야 다자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외교부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실 산하 ‘국제협력총괄과’와 ‘원양산업과’가 수산분야 다자원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협력총괄과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크게 ‘해양수산분야 양자협력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업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해양수산분야 운용계획의 협의’이다³⁰⁾. 또한 해양수산 다자협상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총괄·지원한다.

원양산업과의 수산분야 다자원조와 관련있는 업무는 ‘국제수산기구의 협상 및 협력·교류’, ‘국제수산기구 관련 업무’, ‘국제수산회의 국내 개최 및 국제수산기구 유치·지원’이다.

2.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 현황

1) 수산분야 OD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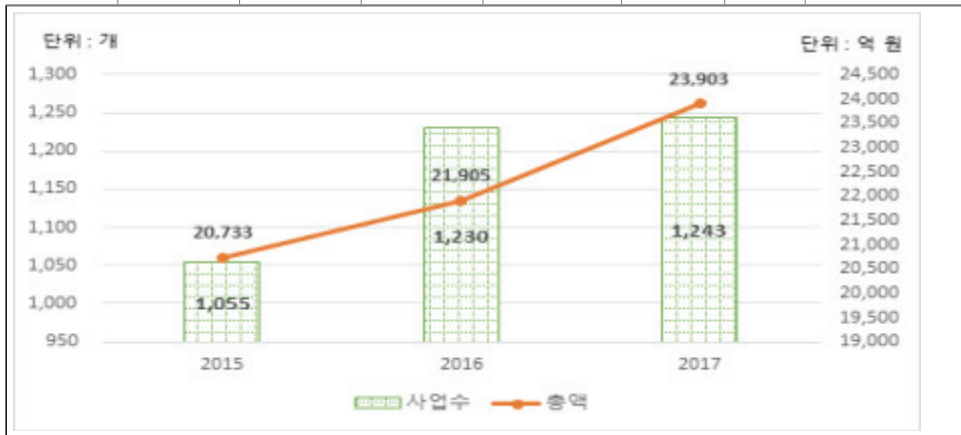
2015-2017년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의 ODA 규모를 살펴보면(〈표3-5〉 참조) 연간 사업 개수는 2015년 7개에서 2017년 10개로 늘어났고 총 금액은 26.6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이 모두 양자무상 ODA에 지원되었으며 3년간 다자성양자 및 순수다자 ODA는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³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gov.kr/portal/gvnmWrkChrgDpt/1192000?srchTxt=1192026>)
(검색일 : 2018.01.06.)

〈표 3-5〉 2015-2017년 해양수산부 ODA의 규모

단위: 개, 억 원

연도	사업개수			양자 무상	다자성양 자	순수다 자	합계
	소계	계속	신규				
2015	7	4	3	26.6	-	-	26.6
2016	14	12	2	28.8	-	-	28.8
2017	10	4	6	47.7	-	-	47.7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7-1호)』, 2014, p.99

2) 및 관계부처 합동,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0-1호)』, 2015, p.100

3) 및 : 관계부처 합동,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3-1호)』, 2015, p.99

4) 및 : 관계부처 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pp.108-109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ODA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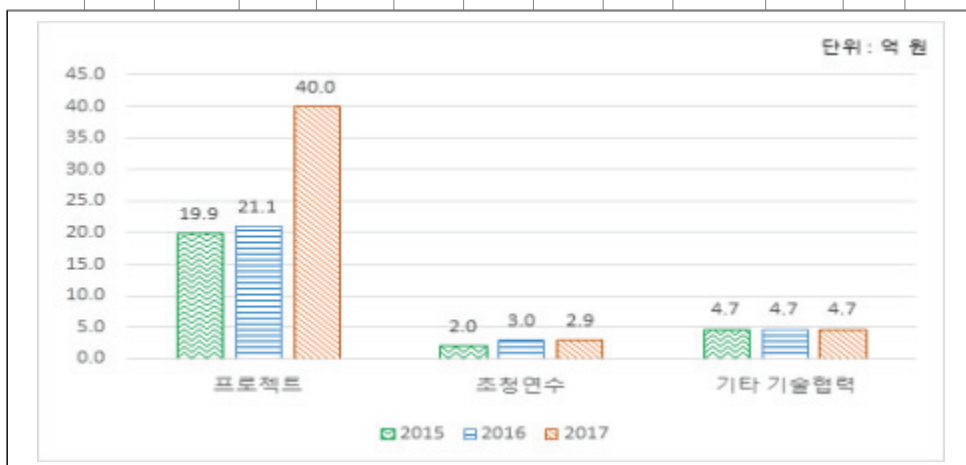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검색일: 2017.10.06.)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2015-2017년)간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유형은 주로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이다. 기술협력의 세부사업까지 볼 경우 초청연수와 기타 기술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총 3가지 세부유형의 ODA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사업은 해양수산부 ODA 총 규모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2015년 19.9억 원에서 2017년 40억 원으로 연평균 41.9%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청연수 및 기타기술협력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큰 증감 없이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2015-2017년 해양수산부 ODA 세부유형

단위: 억 원, %

구분	계	프로 젝트	프로 그램	개발컨 설팅	기술협력				민관 협력 (NGO, 기업)	행정 비용	기타	순수 다자
					초청 연수	장학 지원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 협력				
2015	25.56	19.86	-	-	2	-	-	4.7	-	-	-	-
	100	77.7	-	-	7.8	-	-	18.4	-	-	-	-
2016	28.8	21.8	-	-	3.0	-	-	4.7	-	-	-	-
	100	73.2	-	-	10.4	-	-	16.3	-	-	-	-
2017	47.7	40.0	-	-	2.9	-	-	4.7	-	-	-	-
	100	84.0	-	-	6.2	-	-	9.9	-	-	-	-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0-1호)』, 2015, p.100
 2) 관계부처 합동, 및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3-1호)』, 2015, p.99
 3) 관계부처 합동, 및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pp.108-109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12.)

확대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 대부분이 수산분야와 관련되어 있는데 2017년
 의 경우 10개 중 7개 사업이 ‘수산, 어업, 양식’과 연관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ODA 시행 목표인 '연안 개도국의 해양수산분야 기반 구축을 통한 빈곤 해소 및 해양수산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어장의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³¹⁾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2017년 해양수산부 ODA 계속사업

	사업명	사업 유형	예산(억원)	양·다자
1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기타기술협력	4.7	양자무상
2	수산물 위생관리 기술 전수, 실험 분석 장비 지원 및 담당자 초청 연수	프로젝트	4.6	양자무상
3	해상교통 안전과 자연재해 예방 기반 구축	프로젝트	11.1	양자무상
4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관리 역량 강화(피지)	프로젝트	7.0	양자무상
합계			27.4	-

자료 :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pp.108-109, 참고하여 저자 작성.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표 3-8〉 2017년 해양수산부 ODA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 유형	예산(억원)	양·다자
1	연안도서국 해양수산기술 및 정책 연수 교육사업	초청연수	2.0	양자무상
2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기술 이전(키리)	프로젝트	2.2	양자무상
3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기술 이전(세네갈)	프로젝트	4.4	양자무상
4	수산인프라시설 지원(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	3.8	양자무상
5	미크로네시아 열대관상어자원 개발 및 기술 전수	프로젝트	7.0	양자무상
6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연안·해양환경관리역량 강화	초청연수	0.9	양자무상
합계			20.3	-

자료 :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pp.108-109,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31) 관계부처 합동,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9-1호)』, 2017, pp.101-102, ODA코리아,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검색일: 2017.10.06.)

2) 지역수산기구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12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의무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원양어획 쿼터 및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2개 국제수산기구에 납부한 분담금은 21억 1,700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약 2억 원이 증가한 23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제분담금은 기본분담금과 국가분담금, 어획량을 주요 산출 요소로 하며, 적용 비율은 기구마다 상이하다. 기본 분담금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되고, 국가분담금은 국민 총소득,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어획량이 높을수록 분담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표 3-9〉 국제수산기구 기구별 납부액

구 분	'17년 집행(백만원)	'18년 계획(백만원)
□ 국제수산기구분담금	2,117	2,320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981	1,143
·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214	225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34	36
· IOTC(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	223	234
·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179	188
· IWC(국제포경위원회)	40	42
·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39	41
· NPAFC(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157	165
· SEAFO(남동대서양수산기구)	82	86
· SPRFMO(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36	38
·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	48	51
· SIOFA(남인도양수산협정)	84	71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활용

이러한 분담금 외에도 국제수산기구의 과학조사 지원 등 과학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수산기구별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지원이 OECD가 규정한 다자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규모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

제3절. 시사점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체제와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다자원조의 주관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자원조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주관하고, 외교부는 UN 및 UN 산하기구 등과의 다자 개발협력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다자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집중 지원과 UNDP, WFP 등 5대 UN 기구가 중점협력기구로 선정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관 기관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원조 사업을 발굴·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자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제 금융기구 다자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UN 관련 기관 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와와의 협업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ODA 전체 예산 증가와 더불어 최근 해양수산부의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ODA 시행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어장에서의 안정적 조업’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예산 증가는 우리나라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축적된 발전경험과 해외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등에서 소외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중점협력국가 재지정과 관련하여 오세아니아 지역이 누락되고, 24개 중점협력국에서 수산업을 중점협력분야로 명시한 국가가 세네갈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련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에 중점협력국가 및 중점협력분야 조정을 위한 관계 부처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 각 기관이 추진하는 ODA 사업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국내외 사례 ≪

제1절. 국내 농업 사례

2017년 기준 농업분야 ODA 사업³²⁾은 총 207개 사업, 2,084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ODA예산(2조 6,367억 원)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양자원조는 90.6%, 다자성양자는 4.8%, 순수다자원조는 4.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³³⁾

농업분야 ODA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3개 기관 이외에도 외교부(KOICA), 기획재정부(EDCF),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의 농업분야 유무상사업이 2017년 전체 사업의 61.6%를 차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의 비중은 28.7%를 차지하고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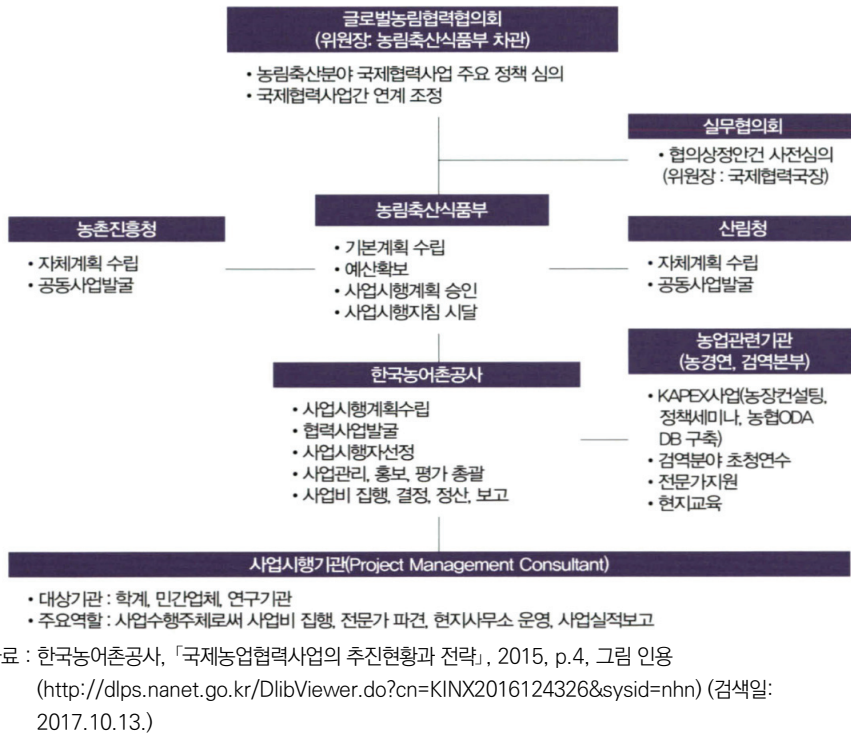
농업분야 ODA 추진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 농업분야 ODA 사업이란 식품분야 및 수자원개발, 식수개발 관련 사업을 포함함(허장·홍석현, 2017)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32호, 2017, pp.5-6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32호, 2017, pp.5-6

〈그림 4-1〉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체계



농업분야 ODA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ODA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농업협력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농업분야 ODA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기관간 ODA 사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ODA 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협업이 가능한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농업분야 ODA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전체 ODA 예산은 2015년 510억 원, 2016년 523억 원 2017년 599억 원으로 연평균 8.3%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 기관 예산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ODA 사업은 농업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각각 '17년 기준 144억 원(전체 예산의 44.2%)과 134억 원(41.2%)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담금 지원사업은 주요 농업 관련 국제기구인 FA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UN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에 분담금을 지원하는 순수다자원조로 분류된다.

한편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농업관련 인프라(관개시설, 저장시설 등) 건설을 지원하며 농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농기술 교육, 농업 정책 수립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양자무상원조,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성양자원조 사업은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 2015-2017년 농업분야 ODA 예산 현황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개도국 농업 발전 손 잡다', 정책브리핑 2017.05.01.,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33181&pageIndex=1&startDate=2008-02-29&endDate=2017-05-01&repCodeType=&repCode=&srchWord=>) (검색일: 2017.10.12.)
 2) 및 관계부처 합동,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0-1호)』, 2015, ODA코리아, 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표 4-1〉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ODA 세부사업 분류

단위: 개, 억 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수	총사업 예산	양다자	비중
1	분담금 지원 (FAO, IFAD, WFP)	3	143.9	순수다자	44.2%
2	국제농업협력(ODA)	19	134.4	양자무상	41.2%
3	개도국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확 산 사업(KAPEX)	3	12.0	양자무상	3.7%
4	개도국 조류독감 대응능력 제고사업	1	8.6	다자성양자	2.6%
5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지도 및 가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	5.0	다자성양자	1.5%
6	남태평양 주요 도서국 농림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1	5.0	다자성양자	1.5%
7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2	4.5	양자무상	1.4%
8	동식물검역검사(ODA)	4	4.1	양자무상	1.3%
9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	1	3.0	양자무상	0.9%
10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능력 개 발 및 우수사례 교환	1	3.0	다자성양자	0.9%
11	축산물이력제 교류협력	1	0.8	양자무상	0.2%
12	축산물품질평가체계교류협력	1	0.8	양자무상	0.2%
13	농산물 안전성 관련 ODA	1	0.7	양자무상	0.2%
	합계	39	325.8	-	100%

자료: 관계부처 활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술개발 분야에 특화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현지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농업 연구기관과 함께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하 KOPIA)은 사업 규모가 109억 원이며, 2017년 기준 20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기술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대륙별로 진행되는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가 있으며 운영 규모가 약 72억 원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양자원조에 해당하며 다자성양자사업은 1.6억 원(5개 사업), 순수다자사업은 3.2억 원(1개 사업, 국제농업연구자문단 분담금)이다.

〈표 4-2〉 2017년 농촌진흥청 ODA 세부사업 분류

단위 : 개, 억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수	총사업 예산	양다자	비중
1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KOPIA, 기술협력협의체 등	24	183.3	양자무상	97.5%
		분담금 지원	5	1.6	다자성양자	0.8%
		분담금	1	3.2	순수다자	1.7%
합계			30	188.1	-	100%

자료 : 관계부처 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2017.10.06.)

산림청은 조림사업 및 산림 관광을 개발해 산림 지역 주민 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생태관광협력사업 등의 양자무상사업을 2017년 기준 59.3억 원(6개 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순수다자원조로는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등 산림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3억 원, 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자성 양자사업으로는 FAO,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등과 협력사업(77.6억 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 2017년 산림청 ODA 세부사업 분류

단위 : 개, 억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수	총사업 예산	양다자	비중
1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협력, 분담금 등	6	75.4	다자성양자	53.9%
		조림사업, 기술지원 등	6	59.3	양자무상	42.4%
		ITTO 의무분담금	1	3.0	순수다자	2.1%
2	산림과학연구 공적개발원조	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의무분담금 지원	1	2.2	다자성양자	1.6%
합계			14	139.9	-	100%

자료 : 관계부처 합동,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2016,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검색일 : 2017.10.06.)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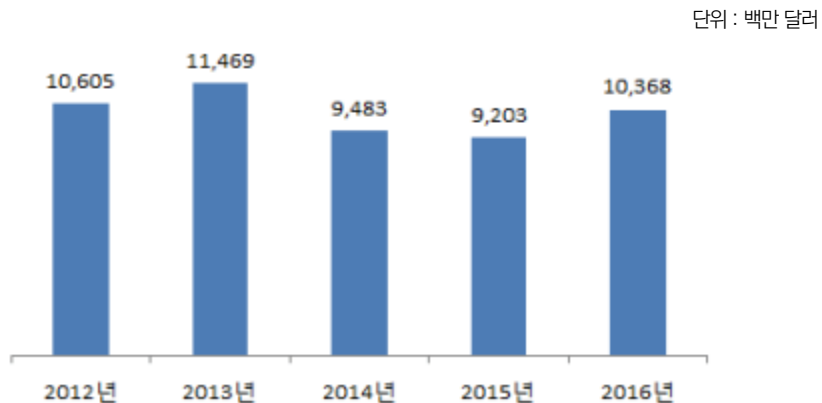
제2절. 해외 사례

1. 일 본

1) ODA 추진 현황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5대 공여국으로 적극적인 ODA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³⁵⁾ 2016년 기준 일본의 전체 ODA 규모는 104억 달러로 전 세계 ODA의 6%이며, OECD DAC 회원국 기준 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4-3〉 일본 전체 ODA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일본의 ODA는 2007년 77억 달러(약 8조 4천억 원)에서 2016년 104억 달러(약 11조 3천억 원)로 지난 10년간 약 25억 달러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DA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소폭 감소 후 2016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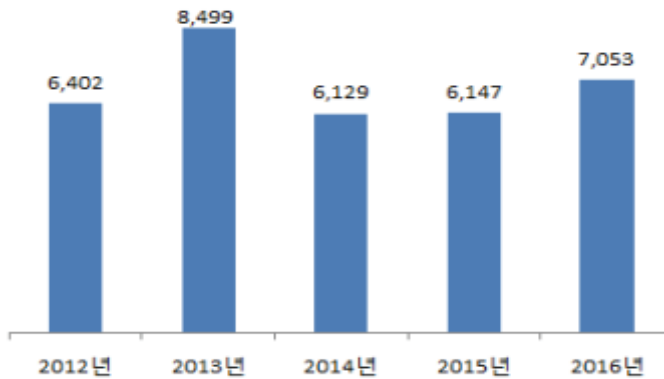
³⁵⁾ 2016년 국가별 ODA 공여 규모는 미국(33,589백만 달러), 독일(24,670백만 달러), 영국(18,013백만 달러), 일본(10,368백만 달러), 프랑스(9,501백만 달러) 순임(OECD Stats 활용).

2016년 일본의 ODA/GNI 비율은 0.2%이다.

2016년 일본 전체 ODA 중 양자원조는 71억 달러, 다자원조는 33억 달러로 각각 68%, 32%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일본 양자원조는 연평균 2%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양자원조 규모는 2007년 대비 22%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 다자원조 규모는 2007년 대비 7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이다.

〈그림 4-4〉 일본의 양자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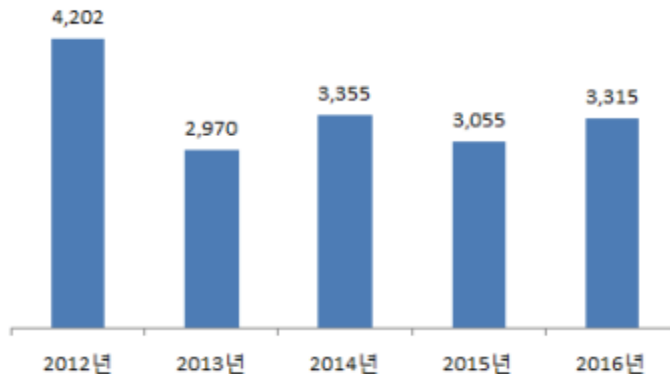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그림 4-5〉 일본의 다자원조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2015년 일본의 국제기구별 다자원조는 WBG이 9억 2,100만 달러(36%)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RDB이 4억 9,200만 달러(19%), UN이 4억 2,400만 달러(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일본 국제기구별 다자원조 현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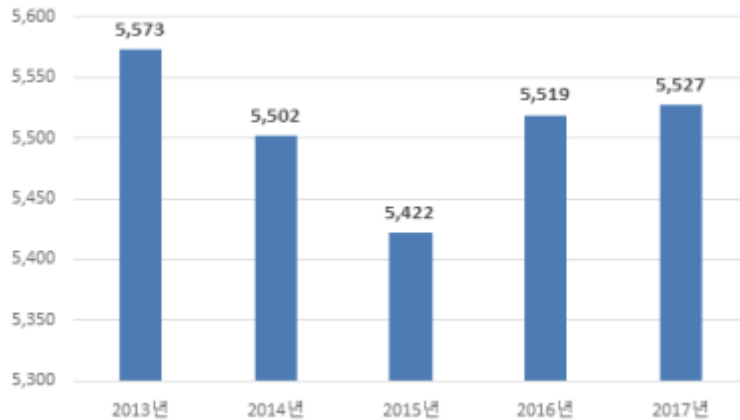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UN	EU	IMF	WBG	WTO	RDB	기타	합계
2015년	424	0	1	921	0	492	693	2,531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그림 4-6〉 일본 ODA 일반회계 예산 추이(2013~2017년)

단위: 억 엔



자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policy/oda/budget/index.html>)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2015년 기준, 일본에서 총 12개 부처와 10개 성(Ministry)에서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외무성의 ODA 사업 규모는 4,238억 엔으로 전체 예산의 약 78% 비중을 차지한다. 외무성의 ODA 예산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가 담당하는 기술협력과 무상자금 협력, UNDP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5〉 일본 정부의 ODA 일반회계 예산

단위 : 십억 엔, %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가율
1. 증여(Grants)	501.7	493.9	-1.6%
- 양자 증여(Bilateral Grants)	422.5	408.3	-3.4%
- 국제기구 자원(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institutes)	79.2	85.6	8.1%
2. 차관(Loans)	48.5	48.3	-0.4%
합 계	550.2	542.2	-1.5%

자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policy/oda/budget/index.html>) 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표 4-6〉 일본 부처별 ODA 예산

단위 : 백만 엔, %

구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가율
경찰청	13	14	7.7%
금융청	113	119	5.3%
총무성	790	816	3.3%
법무성	205	212	3.4%
외무성	423,005	423,810	0.2%
재무성	79,373	78,318	-1.3%
문부과학성	22,230	14,926	-32.9%
후생노동성	5,815	6,313	8.6%
농림수산성	2,780	2,828	1.7%
경제산업성	14,981	13,833	-7.7%
국토교통성	284	301	6.0%
환경성	616	667	8.3%
합계	550,204	542,156	-1.5%

자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policy/oda/budget/index.html>) 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2) ODA 사업 추진체계

기존의 일본 개발협력 추진 체제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유상원조는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이 전담하고, 무상원조는 JICA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6년 8월 ODA 정책의 일원화 및 선진 공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여 다자원조와 양자원조 ODA 업무를 총괄하는 외무성 국제협력국을 발족시켰으며, 그해 11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일명 JICA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 10월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통합된 ODA 수행기관인 신국제협력단(New JICA)이 탄생하였다. 일본 ODA 사업의 수행주체인 JICA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핵심지원전략을 설정하여 개발협력현장의 이상을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구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12개 부처에서는 개별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산분야 ODA 사업 주무 부처는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이다. 각 부처는 고유의 ODA 예산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며, 외무성의 협력사업은 JICA, 농림수산성의 협력사업은 일본해외어업협력재단(Overseas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of Japan, 이하 OFCF)에서 수행하고 있다. 외무성이 마련한 원조방침이나 JICA에서 수행하는 수산 ODA 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성과 OFCF에서 전문가 자문 및 지식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하고 있다.

가. 일본국제협력단(JICA)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자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까지의 기존 JICA는 기술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JBIC의 유상원조와 일본 외무성의 무상원조 일부를 전부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JICA의 비전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발협력(Inclusive and Dynamic Development)’이다. 포괄적 개발협력은 모든 사람들이 개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동적인 개발협력은 경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JICA의 미션 및 목표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JICA 미션 및 목표

□ 미션

-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적극 대응
- 고용 확대와 공공 서비스 강화로 공정한 성장 및 빈곤 감소를 도모
- 개도국의 취약한 거버넌스 개선
- 필수적인 안보를 보장하고 기초적인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

□ 목표

- 신흥국·개도국의 경제성장 장려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제발전 추구
- 일본 안보 및 평화 구축 장려
- 국제 협력 및 국제 원조 질서 확립
- 일본 내 민간부문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도국 지원
- 개도국의 여성 인권 강화 및 사회적 참여 지원

□ 주요 전략

- (통합 원조) 기술협력, 유상원조,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종합적인 지원 실시
- (지속적인 원조) 다양한 원조를 상황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제공
 - 재해 예방, 재해 발생 후 사후 복구, 중장기적인 개발 지원 등 각 국면에 적합한 다양한 원조 제공
 - 최빈국, 중진국 등 각 국가별 발전 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
- (개발 파트너십의 촉진) 상대국 및 다른 원조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 개도국의 자구 노력 및 현장을 중요시함에 따라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강조
 - 지방자치 단체, 대학, NGO, 민간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 (연구 및 지식공유를 통한 발전) 지속적 연구 및 현장 지식 활용 등으로 기관 발전 도모

자료 1: JICA 홈페이지(<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검색일: 2017.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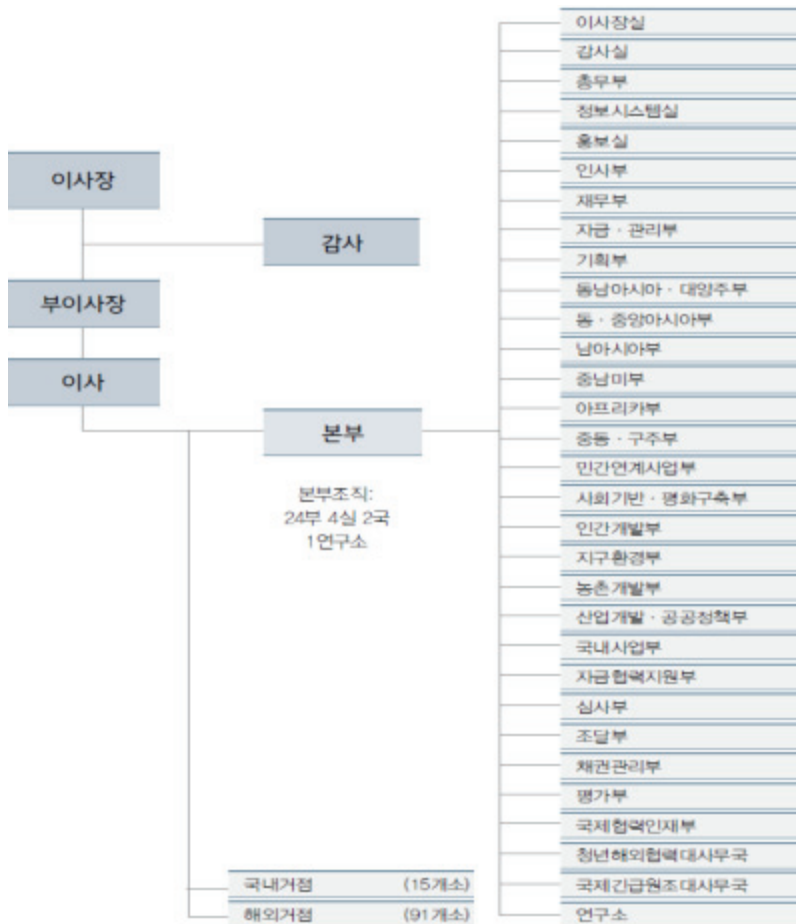
2: 「2015 세계 개발협력기관 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5, pp.28~29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JICA가 신JICA로 통합되면서 국별·지역별 전략을 강화하고, 각 지역국은 현지 지역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 조직은 총 24부 4실 2국 1연구소로 구성되는데, 주요 부서로는 지역담당부, 과제담당부, 자금협력 지원담당부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동경에 위치한 본사 1개, 지역사무소 15개, 해외 사무소 91개가 있다. JICA 본부는 원조 방침 책정, 사업 심의안 작성 및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시행을 담당한다. 지역 담당부는 상위본부로서 국별지원 정책 및 연동계획 작성, 사업 심사, 상대국 정부의 합의문서 작성 및 체결 등을 수행하고 과제 담당부는 전문적 관점에서 과제별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수집,

분석 제공한다. 자금협력 지원담당부는 사업 단계별 실무를 지원한다. 국내 및 해외 사무소는 현장에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원조 방침을 기획, 입안하며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JICA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핵심지원전략을 마련하여 개발협력현장의 이상을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구현하고 있으며, Japan Brand ODA 모델을 통해 일본의 경험 및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그림 4-7〉 JICA 본부 조직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 개발협력기관 편람」, 2015, p.31 그림 인용

JICA의 주요업무는 기술협력, 차관원조(ODA Loan 등), 민간 활동 지원이다. 기술협력은 개도국의 인재 육성,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정책 결정 및 공공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차관 원조는 ODA 차관으로 개도국 정부에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ODA 차관은 프로젝트 차관과 비프로젝트 차관으로 분류되는데, 프로젝트 차관은 기술지원 차관, 금융중개기관 차관(전대차관), 기자재 차관, 섹터 차관이며, 비프로젝트 차관은 프로그램 차관, 원자재 차관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활동 지원은 리스크가 높아 상업 금융기관의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에 진출한 자국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 및 대출을 지원하는 ‘해외투융자 제도(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PSIF)’와 자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축성 원조 방식의 엔차관인 ‘자국기술활용 조건부차관(Special Term for Economic Partnership, STEP)’이 있다.

JICA는 일본 수산분야 ODA 사업의 약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지만 JICA 전체 ODA 사업 중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이다. 수산 전담 부서는 없으며, 농촌개발팀에서 수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산분야 사업의 주요 주체는 역할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문 지식 및 학술적인 부분은 대학교, 가치사슬(value chain) 부분은 민간 기업, 연안 관리는 정부 및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수산분야 ODA는 SDGs Goal 14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 관리 관련 사업이다.

2015년 기준, JICA가 수행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기술 협력은 총 572개 프로젝트가 8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ODA 지원 규모는 1,917억 엔(약 1조 9천억 원)이다. 차관은 75개 관련 사업이 31개 국가 및 지역 그리고 1개 기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2조 2,069억 엔(약 21조 4천억 원)이다. 이 중 민간부문 투자 금융은 1,866억 엔(1조 8천억 원)으로 4개 기관에 지원되었다. 무상원조는 154개 프로젝트가 58개 국가 및 지역에 수행되었으며 1,117억 엔(약 1조 8백억 원)이다.

〈표 4-8〉 JICA 주요 사업(2015년)

구분		예산 (억 엔)
기술 협력(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프로젝트 572개 (84개 국가/지역)	1,917
차관(Loan Aid)	차관 보조사업 75개 (31개 국가/지역, 1개 기구)	22,069
무상원조(Grants)	무상원조 프로젝트 154개 (58개 국가/지역)	1,117

자료 : JICA 홈페이지(<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나. 일본해외어업협력재단(OFCF)

일본어업협력재단(OFCF)은 수산분야 해외어업 관련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에 설립되었다. OFCF의 기본 이념은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이며, 주요 목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연안국과 지역 어업관리기관에 기술협력 및 경제협력, 둘째, 일본 수산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셋째, 일본 어선의 해외 어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FCF는 연안국의 어업 진흥, 해외 어업 교류 촉진, 해외 어업 협력 사업 자금 대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OFCF 조직은 본사의 관리부, 회계부, 기술지원부 등 3개 부서로 있고 피지와 미크로네시아에 각각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1990년 설립된 OFCF 피지 사무소는 남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며, 미크로네시아 사무소는 팔라오, 마셜 등 3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 다랑어의 약 50% 이상이 생산되는 남태평양은 일본 어업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일본은 남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수산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대상국은 나우루협정(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PNA) 국가로 일본 원양어업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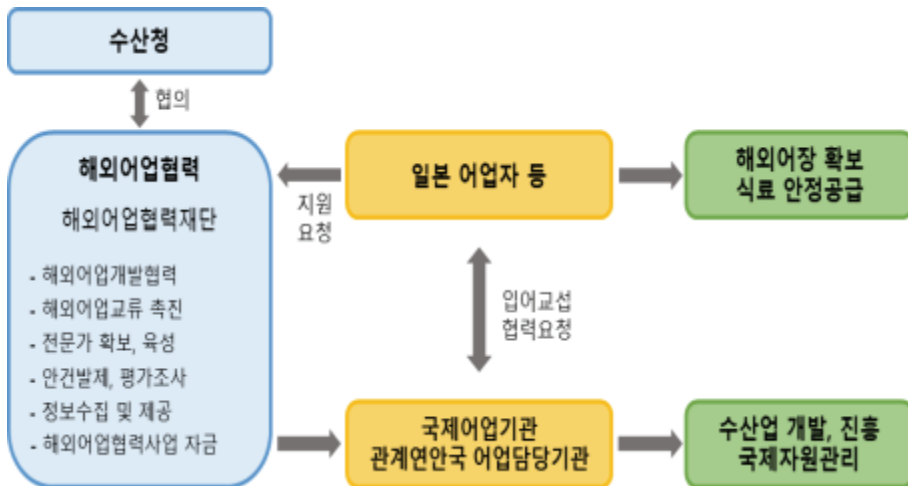
OFCF는 주로 일본 어업자의 해외 어장 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어업자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해외어업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수산 관련 국제기구, 관계 연안국의 수산 담당기관에 수산업 개발 진흥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한 지원을 수행한다.

〈그림 4-8〉 OFCF 조직도



자료 : OFCF 홈페이지(<http://www.ofcf.or.jp/>)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그림 4-9〉 OFCF 지원 흐름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2011, p.194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OFCF의 주요 사업 형태는 기술협력이다. 2017년 OFCF의 사업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기술협력 자금은 약 12억 엔(약 117억 7천만 원)으로 연안국 수산업 진흥 사업이 약 11억 엔(약 109억 원), 해외어업 교류 촉진 사업이 약 8,500만 엔(약 8억 원)이다. 연안국 수산업 진흥 사업에는 수산 진흥·자원관리 협력 사업, 국제수산자원 관리 사업, 연수 사업, 어장 확보 사업, 수산 진흥 협력 지원 사업, 지속가능한 체제 확립 사업, 과학 읍서버 조사 분석 사업 등 총 7개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어업 교류 촉진 사업에는 어업 협력 협의회 개최, 인사 초청, 어업 협정 협상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이 있다.

〈표 4-9〉 2017년 OFCF 사업 자금계획

구분		사업명	자금 (천 엔)
기술협력	1. 연안국 수산업 진흥 사업	① 수산 진흥·자원관리 협력 사업	521,685
		② 국제수산자원 관리 사업	37,645
		③ 연수 사업	67,806
		④ 어장 확보 사업	24,211
		⑤ 수산 진흥 협력 지원 사업	14,447
		⑥ 지속가능한 체제 확립 사업	269,943
		⑦ 과학 읍서버 조사 분석 사업	181,449
	2. 해외어업 교류 촉진 사업	① 어업 협력 협의회 개최	12,256
		② 인사 초청	62,863
		③ 어업 협정 협상 지원	10,331

자료 : OFCF 내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OFCF의 대표적인 사업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매년 약 30~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외 수산 연수생 초청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별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4-10〉과 같다.

〈표 4-10〉 OFCF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주요 사업 및 내용
연안국 수산업 진흥 사업	① 수산 진흥·자원관리 협력 사업 - 어업 관련 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기술 이전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조직 활성화 - 자원 관리, 양식업, 어업 개발, 물류 개선 등 관련 전문가 파견 또는 장비/기자재 지원
	② 국제수산자원 관리 사업 - 수산자원 관리 조치와 관련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전문가 파견
	③ 연수 사업 -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국제기구의 수습연수생 초청
	④ 어장 확보 사업 -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해 관련 연안국에 전문가 파견 - 연안국의 어업 협력 가능성 조사 - 연안국의 요청에 따라 장비 지원 프로젝트 수행
	⑤ 수산 진흥 협력 지원 사업 - 해외 어업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별 연수생 초청 - 해외 어업 정보 수집·제공 및 전문가 평가 실시
	⑥ 지속가능한 체제 확립 사업 - 고래 등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일본에 우호적인(일본을 지지하는) 국가 및 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문 요청
	⑦ 과학 옵서버 조사 분석 사업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 옵서버 육성 - 어선에 승선하여 대상 어종 및 어획 데이터 수집
해외어업 교류 촉진 사업	① 어업 협력 협의회 개최 -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 개최
	② 인사 초청 - 일본 수산업 현황 점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교류를 위해 관계국 수산 인사 초청
	③ 어업 협정 협상 지원 - 해외 어장 확보 및 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해외지역 조사 - 연안국과 협의 또는 협상 촉진 지원

자료 : OFCF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3) 수산분야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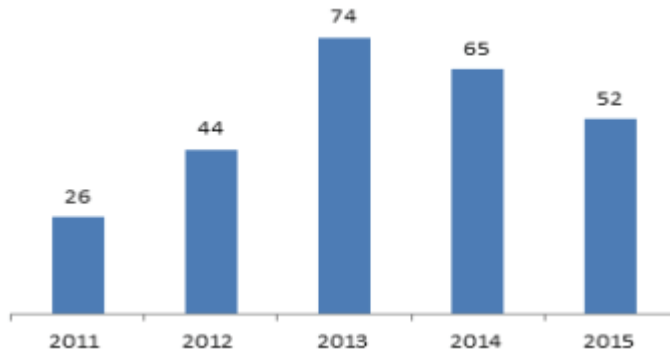
가. 일본 수산분야 다자원조 현황

2015년 기준 일본의 수산분야 ODA는 5,200만 달러(약 565억 원)로 전체 ODA 총액인 92억 달러의 약 0.5%를 차지한다. 그러나 DAC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수산분야 ODA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최근 5년간 (2011~2015년) 일본의 수산분야 ODA 평균 지원액은 5,220만 달러로 2위인 노르웨이 2,600만 달러, 3위인 미국 1,200만 달러보다 약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일본의 수산분야 ODA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 참조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수산분야 다자원조는 2011년 418만 달러에서 2015년 288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268만 달러 가운데 약 17%인 46만 달러가 FAO에 지원되었다.

〈표 4-11〉 일본 수산분야 다자원조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개년 평균
4.18	3.02	3.65	2.94	2.68	3.29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 참조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2015년 기준 일본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ODA 사업은 총 5건으로 아시아,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의 국제기구이며 지원 목적은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와 수산업 개발이다.

〈표 4-12〉 일본 수산분야 다자원조 ODA 사업(2015년)

단위 : 백만 달러

시행기관	수원국	지원 채널	사업명(영문)	목적	금액
농림수산성	개발도상국(미지정)	기타 다자기구	PICES Project on 'Marine Ecosystem Health and Human Well-Being'	수산업 개발	0.06
농림수산성	아시아	기타 다자기구	Promotion of Sustainable Fisheries in Southeast Asian Region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1.79
농림수산성	개발도상국(미지정)	FAO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for sustainable use of marine living resources in the face of changing systems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0.46
농림수산성	아프리카	기타 다자기구	ICCAT-JAPAN capacity-building assistance project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0.22
농림수산성	오세아니아	기타 다자기구	WCPFC Project on Capacity Building in Fisheries Statistics, Regulation and Enforcement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0.15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 참조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나. 주요 다자원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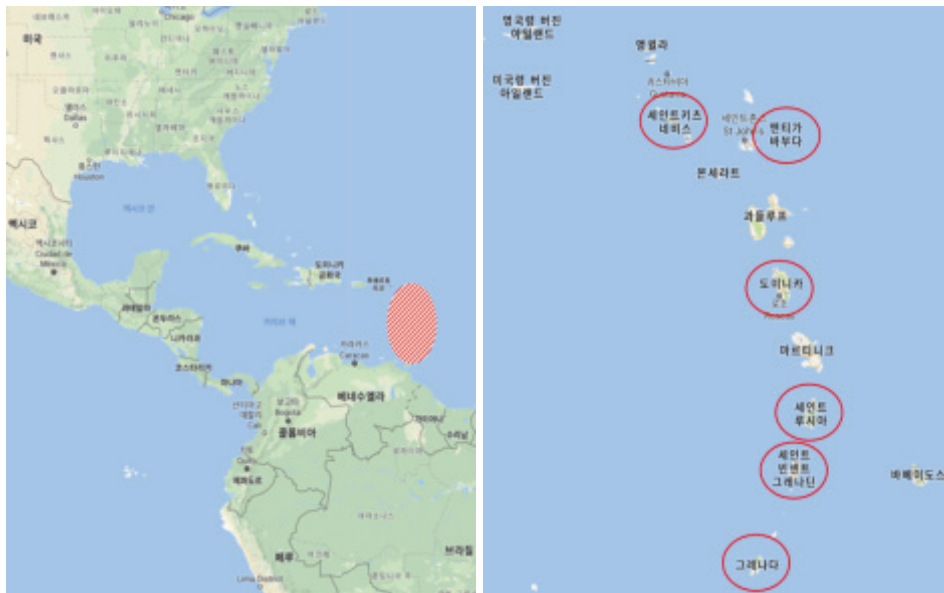
(1) 카리브해 어업 공동 관리 프로젝트

JICA는 카리브지역수산기구(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이하 CRFM)와 소앤티리스(Lesser Antilles)³⁶⁾ 지역에 위치한 6개 국가(세인트 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³⁶⁾ 카리브해에 있는 서인도 제도(The West Indies)는 남북으로 2,400km에 걸쳐 있는 섬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앤티리스(Antilles)라고 불림. 이들 도서의 총면적은 236,000km² 정도로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잡은 라에스 파놀라 및 푸에르토리코 등의 큰 섬으로 구성된 지역은 대앤티리스(Greater Antilles)이며, 버진아일랜드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이르는 지역은 소앤티리스(Lesser Antilles)로 양분됨.

그레나다를 대상으로 어업 공동 관리 프로젝트(Caribbean Fisheries Co-Management Project, 이하 CARIFICO)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4-11〉 CARIFICO 대상국 위치



자료 : Google map(<https://www.google.co.kr/maps/>)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https://www.google.co.kr/maps/>)

대부분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수산 자원 공동 관리(co-management)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JICA는 CARIFICO 사업을 통해 각 대상 국가에 적합한 어업 공동 관리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를 카리브해 전체 지역에 공유함으로써 정부, 어업인,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산자원 공동관리 방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3년 5월에 시작되어 2018년 4월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어업인 컨설팅, 어업인 조직체 구성, 어군 집어장치(Fish Aggregating Device, FAD) 관련 기술 개선 및 사용자 지침 마련, 어획데이터 수집, 마케팅 등이다.

〈그림 4-12〉 CARIFICO 주요 활동

1. 어업인 컨설팅 FAD 어업 공동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CARIFICO 활동을 계획한다. 	5. FAD 어획 데이터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획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2. 어업인 조직체 구성 어업 공동 관리를 수행을 위한 어업인들을 조직화 한다.	6. FAD 금융 메커니즘 FAD 어업 공동 관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FAD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
3. FAD 관련 기술 개선 FAD 구축 및 실시 등 관련 기술을 개선한다. 	7. 마케팅 원지 및 해외 시장의 수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4. FAD 사용자 지침 마련 FAD 운영을 위한 사용자 지침을 마련한다.	8. FAD 유지 FAD 어업 공동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FAD를 유지보수한다.

자료 : JICA 홈페이지(<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CARIFICO의 운영 전략은 다음의 〈그림 4-13〉과 같다. CARIFICO 대상 지역인 6개 국가별로 어업 공동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및 내부 규칙을 개발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각 국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 및 지식 등을 기술 문서로 작성·기록하고, CARIFICO 합동 워크숍 및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며 상호간 교류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가별로 어업 공동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4-13〉 CARIFICO 운영 전략



자료 : JICA 홈페이지(<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2) IOTC-OFCF 프로젝트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이하 IOTC)는 인도양 수역의 다랑어류 자원보존과 최적관리를 위한 기구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IOTC와 OFCF간 협력 사업은 IOTC 총회에서 도출된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현안 문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 4월부터 시작된 IOTC-OFCF 프로젝트를 통해 IOTC 사무국과 OFCF는 어업 관련 통계 수집, 처리, 보고하는 시스템을 IOTC 지역 연안국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IOTC 지역 연안국 수산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IOTC의 관리 어종 평가에 사용되는 통계 및 기타 과학적 자료에 대한 IOTC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IOTC-OFCF 프로젝트는 1단계(2002~2007년), 2단계(2007~2010년) 인도양 다랑어 자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 3단계(2010~2013년) 인도양 옵서버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4단계(2014~진행 중)는 인도양 다랑어 자원 통계 시스템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은 〈표 4-14〉와 같다.

〈표 4-13〉 IOTC-OFCF 프로젝트 추진 개요

구분	내용
1단계 (2002~2007년)	인도양 다량어 자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1차)
2단계 (2007~2010년)	인도양 다량어 자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2차)
3단계 (2010~2013년)	인도양 옵서버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4단계 (2014~ 진행중)	인도양 다량어 자원 통계 시스템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

자료 : IOTC 홈페이지(<http://www.iotc.org/data/iotc-ofcf>)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표 4-14〉 IOTC-OFCF 프로젝트 주요 활동

구분	내용
1단계 (2002~2007년)	· 2002년 : 국제 워크숍 개최(IOTC FINSS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운영, 세이셸) · 2002년 :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 및 임무 도출(인도네시아, 태국, 오만) · 2003년 :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 및 임무 도출(스리랑가, 이란, 인도, 몰디브,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 2004년 : 지역 워크숍 개최(IOTC 지역 국가의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시스템, 세이셸) · 2004년 : 국제 워크숍 개최(IOTC FINSS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운영, 인도네시아) · 2005년 :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 및 임무 도출(탄자니아, 케냐) · 2005~2016년 : 태국 선망어업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정 및 군수 지원
2단계 (2007~2010년)	· 2007년 :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 및 임무 도출(모리셔스, 태국) · 2008년 :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 및 임무 도출(예멘) · 2009년 :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 및 임무 도출(코모로) · 2009년 : 인도네시아 어업 관련 워크숍(인도네시아) · 아라비아해 샘플링 프로그램 수행(artisanal gillnet and hand-line fisheries) · 선박표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도네시아연방조달청(DGCF) 지원
3단계 (2010~2013년)	· 2011~2012년 : 선박 국제조사 시행 및 관련 현장조사를 위한 자금 조달(코모로) · 어획량 산정에 관한 워크숍 개최 및 표본추출 체계 개선 권고(인도네시아) · 데이터 수집·통계·처리 평가(모리셔스)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업그레이드(이란) ·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스리랑가)
4단계 (2014~진행중)	· 인도네시아 기국 연승어선 감시 강화 · 데이터 수집 및 관련 워크숍 개최(인도네시아) · 연안 다량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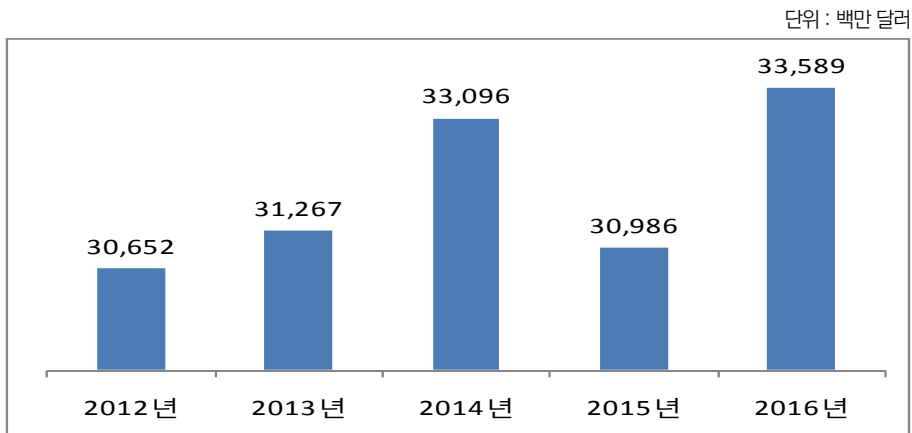
자료 : IOTC 홈페이지(<http://www.iotc.org/data/iotc-ofcf>)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2. 미 국

1) ODA 추진 현황

미국은 전 세계에서 ODA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다. 2016년 기준 미국의 전체 ODA 규모는 336억 달러로, 전 세계 ODA 지원 규모의 20%를 차지하고, OECD DAC 회원국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한다.

〈그림 4-14〉 미국의 전체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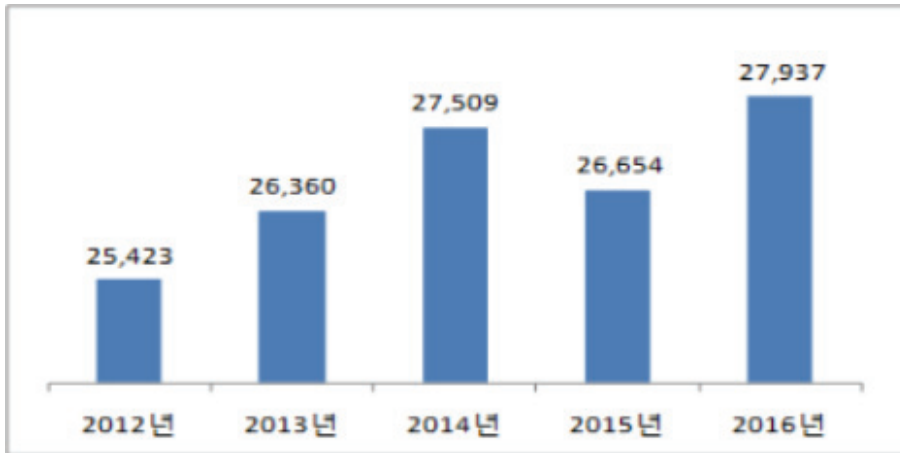


자료 : OECD DAC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LTISYSTEM>)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미국의 2016년 전체 ODA 중 17%인 57억 달러가 다자원조이다.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인 28%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지원 규모면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크다. 나머지 83%는 양자원조로 지원되는데, 2016년 양자원조의 규모는 268억 달러로 다른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4-15〉 미국의 양자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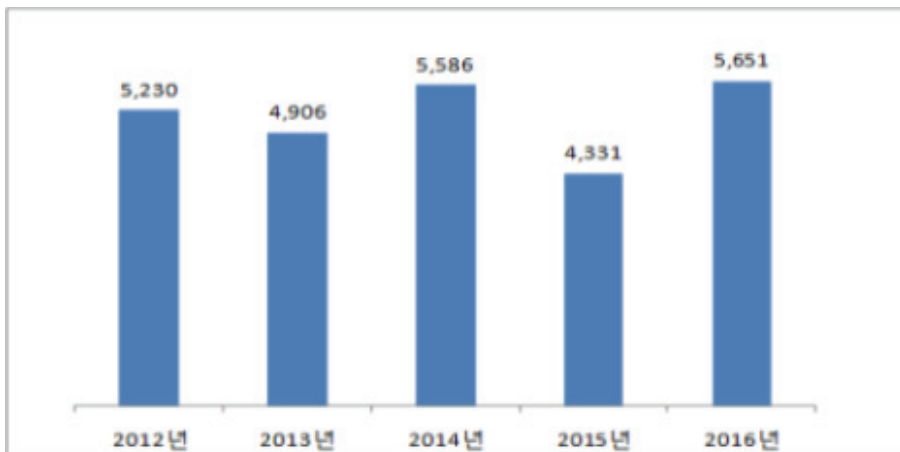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통계,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LTISYSTEM>)
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그림 4-16〉 미국의 다자원조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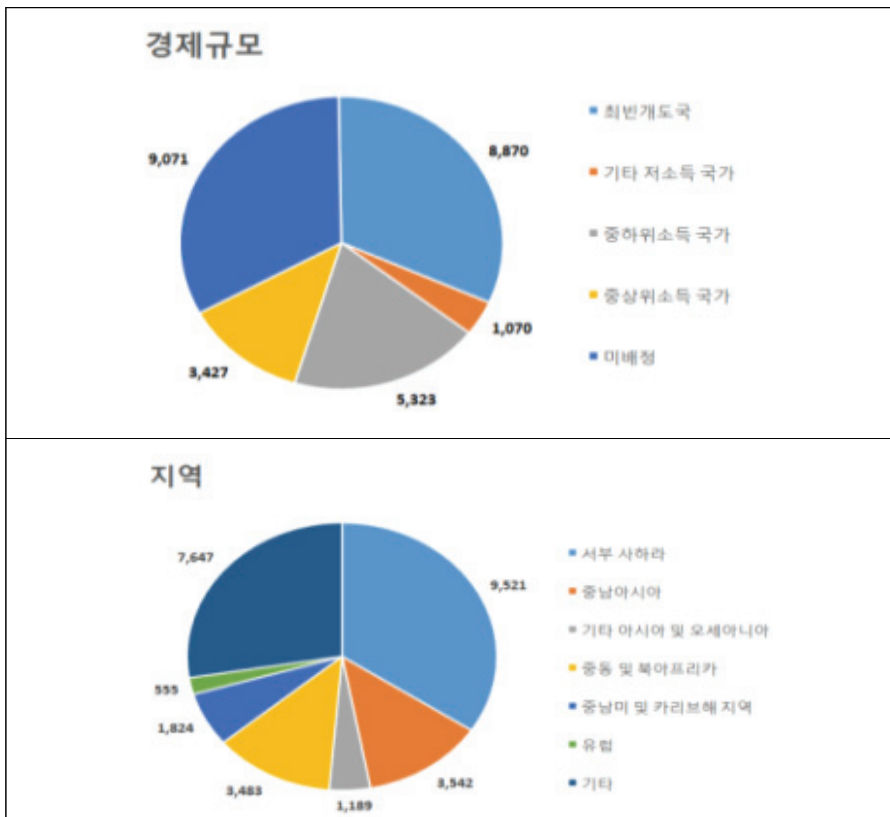


자료 : OECD DAC 통계,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LTISYSTEM>)
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미국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구성비는 약 8:2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다자원조 규모가 52억 달러에서 2015년 43억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6년 5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미국 ODA의 지역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에 18.2억 달러, 요르단에 8.7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ODA의 상당 부분이 중동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 안보 및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교육, 보건 및 인구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도적 지원, 사회 인프라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4-17〉 미국 ODA 지원 지역과 및 경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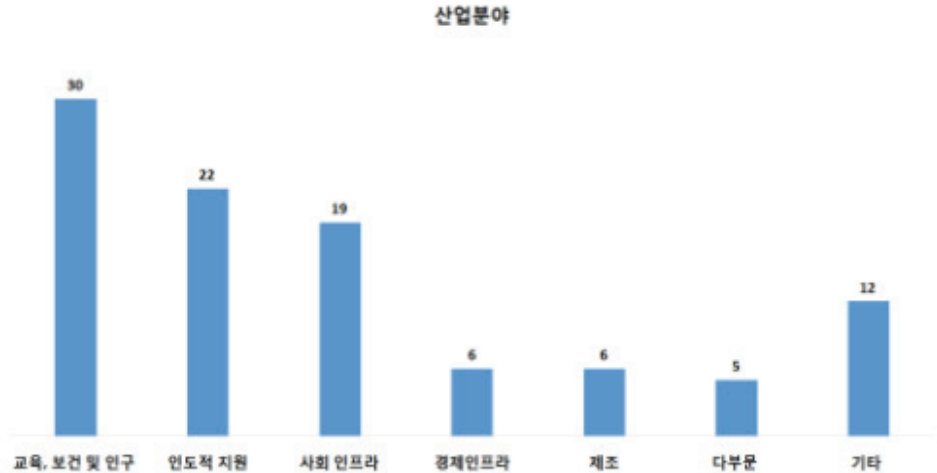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16, p.9 그림 인용 저자 재작성

〈그림 4-18〉 미국 ODA 지원 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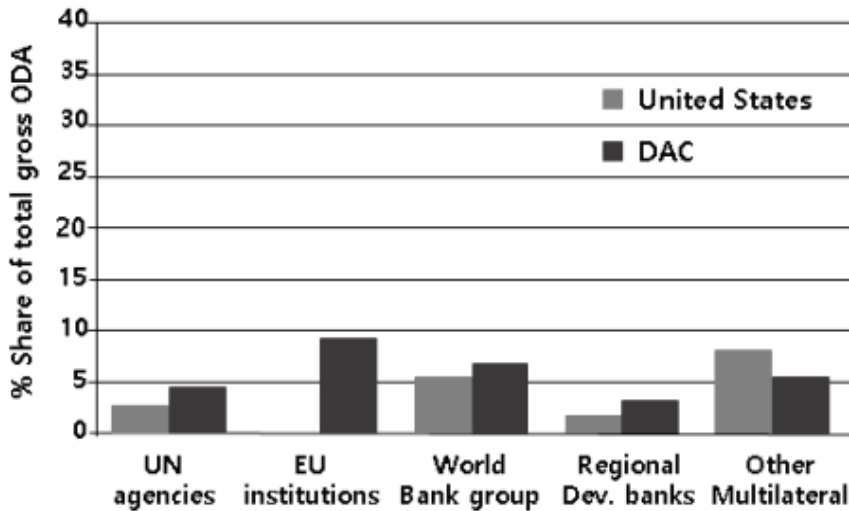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OEC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16, p.9 그림 인용하여 저자 재작성

최근 5년 미국의 다자원조의 가장 큰 특징은 2012년을 지정기여(non-core)가 비지정기여(core)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미국의 지정기여는 60억 달러이다. 주로 WBG와 WF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같은 UN 기구들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기여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57억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비지정기여는 WBG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재단(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이하 GFATM)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졌다.

〈그림 4-19〉 미국의 주요 국제기구별 지원규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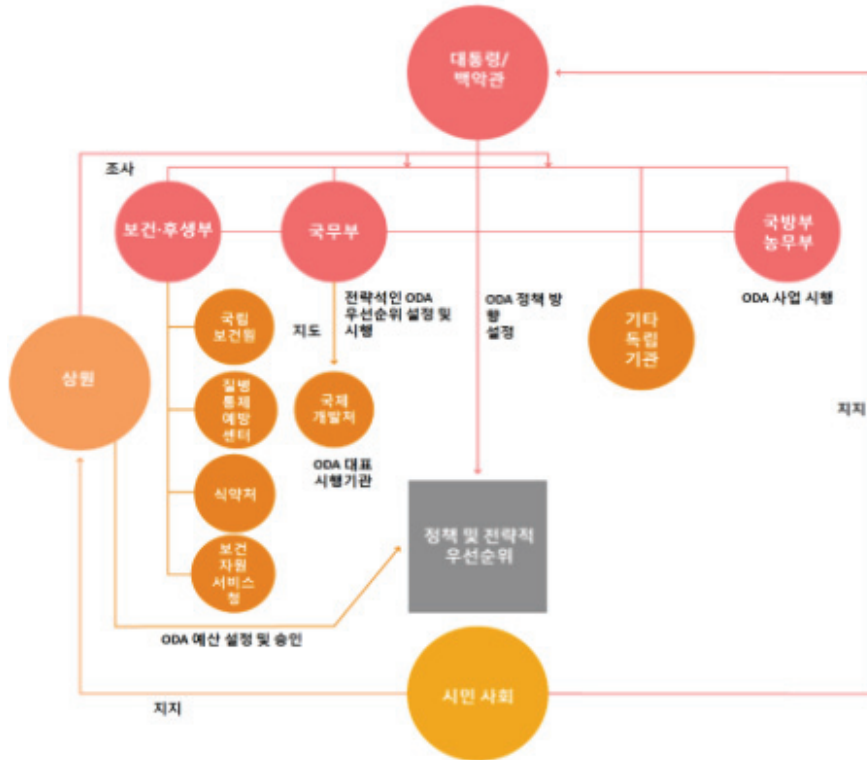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16, p.114 그림 인용(검색일: 2017.09.29)

2) ODA 사업 추진체계와 지원정책

미국의 ODA는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새천년도전협회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관 성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 또는 상호유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지원 규모는 미국 재무부가 결정하고, 관련 기관들은 다자기구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시 해당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미국 ODA 사업의 주무 부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이하 USDS)와 대표 시행기관은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20〉 미국 ODA 체계도



자료 :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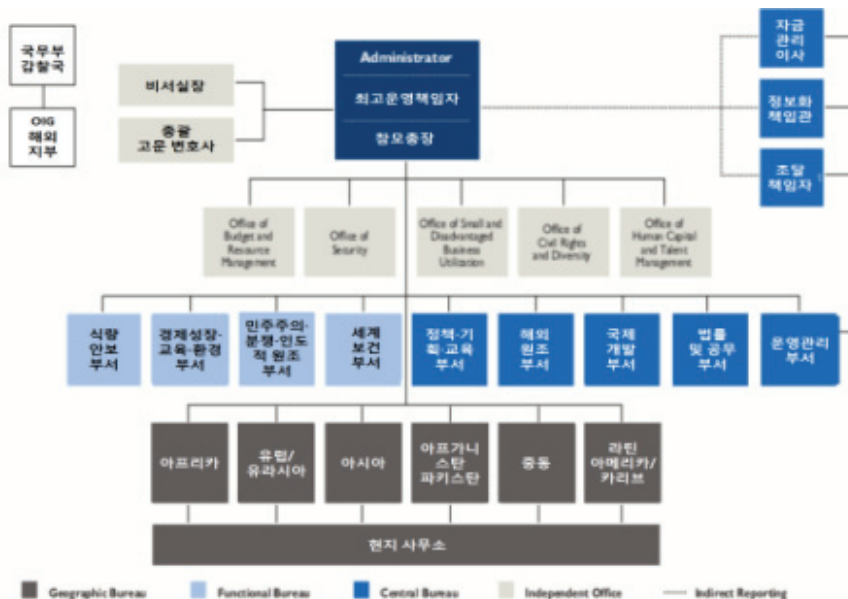
미국의 외교정책은 USDS가 총괄한다. USDS는 평화 유지, 민주주의, 세계 보건, 식량 안보 등에 대한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ODA의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USDS 내 해외원조지원국(Office of US Foreign Assistance Resources)은 국무부 장관을 지원하여 ODA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주요 기관들과의 행정 체계화를 이룬다.

USDS는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을 운영하며, WBG, IMF와 같은 국제 기구 및 지역개발은행(RDB)에 지원을 한다. 미국 ODA 시행 기관인 USAID는 ODA 는 국무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나, 대통령, 국무부, 국가안

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의 외교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ID의 부서(bureaus)는 지역적(regional), 기능적(functional)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 부서들은 총 5개로 아프리카, 유럽 및 유라시아, 아시아, 중동,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을 담당한다. 기능적 부서들은 총 4개로, 식량 안보, 경제성장·교육·환경, 민주주의·분쟁·인도적 지원, 세계 보건과 관련된 부서들이다. 이 부서들 이외에도 운영관리, 홍보, 법률, 정책 등과 같은 본부의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 부서들이 추가적으로 있다. 이러한 부서들 이외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10개의 실(offices)을 두고 있다.

〈그림 4-21〉 USAID 조직도



자료 : 미국 USAID 홈페이지(<https://www.usaid.gov/>)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29.)

USAID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 2004년에 설립된 새 천년도전협회(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이하 MCC)가 있다. MCC는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사명 아래, 정의로운 정부, 자국민에게 투자, 경제적인 자유를 독려하는 국가에게만 원조를 제공한다. 주요 원조 분

야는 농업, 교육, 에너지, 보건, 토지 및 재산권, 수자원 및 위생 등이며, MCC의 원조사업들은 큰 규모 계약인 컴팩스(compact)와 작은 규모인 트레시홀드(threshold)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4-22〉 MCC 조직도



자료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https://www.cgdev.gov/>)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29)

미국 ODA는 기본적으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³⁷⁾, 일반적으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 예산 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SC, 미국의회(Congress) 등이 ODA의 기본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미국의 ODA 정책 방향은 「국제개발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Policy Dir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이하 PPD-6)」이나 「미국 국무부와 USAID의 공동 전략 계획(FY 2014-2017 Joint Strategic Plan of the State Department and USAID)」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PPD-6은 경제 성장, 민주주의, 세계 보건, 식량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그리고 다자주의

³⁷⁾ Mission Statement : Shape and sustain a peaceful, prosperous, just, and democratic world, and foster conditions for stability and progres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nd people everywhere. - FY 2014-2017 STRATEGIC PLAN of USDS & USAID

(multilateralism) 등과 같은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와 USAID의 공동 전략 계획」은 경제성장, 글로벌 안보, 기후, 에너지, 외교 및 개발의 현대화 같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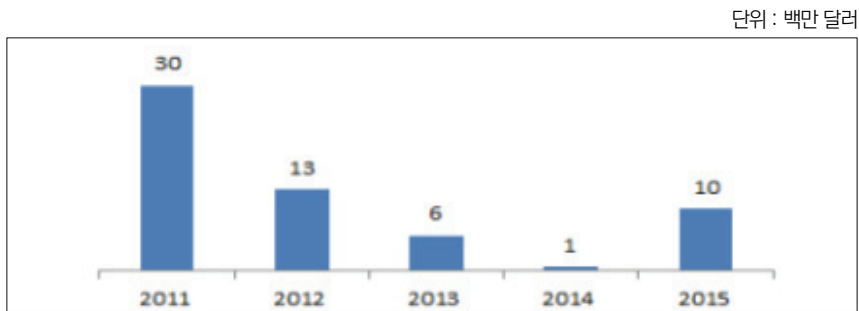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ODA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과 관련 없는 국제사회 분쟁에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이는 2017년 5월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ODA 예산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자국 이익과 관련이 없는 국제 보건,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적인 지원 ODA 사업은 축소시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ODA 사업들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가. 수산분야 ODA 현황

미국의 수산분야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OECD DAC 국가들과 비교할 때 2011년~2015년 5년 평균 ODA 금액이 1,200만 달러로, 일본,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다.

〈그림 4-23〉 미국 수산분야 ODA



자료 : OECD DAC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LTISYSTEM>)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³⁸⁾ KOICA, 개발과 이슈 - 미국·프랑스·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 2017

국제기구를 통해 수산분야에 지정기여된 다자성양자원조 금액은 2015년 기준, 510만 달러로 규모면으로는 OECD DAC 회원국 중 660만 달러의 노르웨이 다음으로 많다. 이 중 500만 달러는 세계은행 사업에 지원되었다. 2015년 기준 미국의 수산분야 ODA 사업은 총 11건으로, 이 중 양자원조사업은 8건 그리고 다자성 양자원조사업은 3건이다.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산업 개발,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교육·훈련 등의 사업에 지원한다.

〈표 4-15〉 미국 수산분야 다자원조 지원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5개년 평균
18.04	0.13	0.31	0	5.11	4.7

자료 : OECD DAC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LTISYSTEM>)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 2017.09.15.)

〈표 4-16〉 2015년 미국 수산분야 ODA 사업

단위 : 백만 달러

시행기관	수원국	지원 채널	사업명(영문)	목적	금액
IADF	아르헨티나	NGO	Sustainable Fisheri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rtisanal Fisherman in the Chaco	수산업 개발	0.04
국무부 (USDS)	칠레	기타 국제기구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in Chile	교육·훈련	0.025 (지정기여)
아프리카 개발재단 (ADF)	나이지리아	NGO	United Ufuoma Fish Farmers Association	수산업 개발	0.0989
아프리카 개발재단 (ADF)	잠비아	NGO	Sepa-Sahao Agricultural Co-Operative Society Limited	수산업 개발	0.015
국제개발처 (USAID)	가나	대학교 및 기타 연구기관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 Agricultural Enabling Environment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3.4684
아프리카 개발재단	짐바브웨	NGO	Tony Waite Organisation	서비스	0.6666

시행기관	수원국	자원 채널	사업명(영문)	목적	금액
(ADF)					
국무부 (USDS)	중남미	WBG	Caribbean Oceans and Aquaculture Facility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5 (지정기여)
국무부 (USDS)	중남미	기타 국제기구	Support for Regional Governance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 CAFTA-DR Countries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0.08 (지정기여)
아프리카 개발재단 (ADF)	지부티	NGO	Lassociation Diffu (Association Light)	수산업 개발	0.012
상무부 (USDC)	페루	중앙 정부	NOAA International Program	수산정책 및 행정관리	0.0025
아프리카 개발재단 (ADF)	케냐	NGO	Naremiet Beach Management Unit (BMU)	수산업 개발	0.4863

자료 : OECD DAC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LTISYSTEM>)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 2017.09.15.)

나. 수산분야 다자원조 주요사업

(1) 남태평양

미국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ODA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은 지난 5년간 전무하며, 모두 남태평양수산포럼(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 FFA)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FFA는 남태평양 지역 EEZ의 다랑어 어업 발전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서, 현재 회원국은 17개국이다.³⁹⁾⁴⁰⁾ 미국과 남태평양수산포럼간 해양수산분야 경제원조의 역사는 1988년 체결된 다랑어어업협정(South Pacific Tuna Treaty, SPT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⁴¹⁾. SPTT는 1993년과 2003년에 두 번 연장되었

39) 호주,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마셜 군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http://www.ffa.int/members#0/-56/-487>)(검색일: 2017.09.15.)

40) 미국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등도 이미 남태평양 도서국 개별국보다는 협의체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음 (<http://www.ffa.int/members#0/-56/-487>)(검색일: 2017.09.15.)

고, 2003년 미국은 FFA와 2013년까지 유효한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미국은 SPTT 협정을 2014년 10월까지 연장하여 협정 갱신, 2015년 SPTT 협정 재논의를 통해 2016년 최대 40척의 미국 원양선망어선이 남태평양 도서국 EEZ에서 8,301일 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합의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최대 40척의 미국 원양어선(주로 선망)과 합작 투자 형태의 어선 5척이 남태평양 도서국의 EEZ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⁴²⁾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USAID는 2013년까지 1,800만 달러를 FFA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기금에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2,1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FFA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기금에 이외에 미국 다랑어 업계는 FFA에 옵서버 관련비용(트레이닝 포함), VMS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recurring cost)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체결된 협정하에서 업계가 옵서버 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체 비용에는 1회 조업에 소요되는 옵서버 승선비, 프로그램 관리비, 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SPTT 협정 내용의 운영, 관리, 시행 기관은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이며, 주요 업무는 NMFS의 태평양섬지역 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2) 중남미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증가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다. 실제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카리브해 국가들의 피해액은 연간 GDP의 50%가 넘는 경우도 많고, 2004년에 그레나다는 연간 GDP의 2배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USDS는 2015년부터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해양 및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사업(Caribbean Oceans, Aquaculture Substantiality Facility, 이하 COAST)

41) SPTT 대상국과 FFT 회원국이 동일함 (http://www.fpir.noaa.gov/IFD/ifd_sptt.html) (검색일: 2017.09.15.)

42) 미 국무성과 남태평양 정부 대표는 공식연례회의 또는 비공식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함 (http://www.fpir.noaa.gov/IFD/ifd_sptt.html) (검색일: 2017.09.15.)

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은행, FAO, 카리브해재해보험기구(CCRIF)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COAST 사업은 어가의 생계 보호, 해안 재난에 대한 회복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제공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미국 국무성은 2015년부터 세계은행에 5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민간 분야 기부금을 지원받아 본 사업의 총 예산을 2천만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리브해 전역에 걸쳐 18만 이상의 어가 및 관련 산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의 3자 원조(Trilateral Model)

USAID는 다자기구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 지역에 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 차원에서 다자성 양자원조를 지원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실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NGO, 정부, 민간분야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3자 원조 모델(Trilateral Model)을 활용하고 있다.

3자 원조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의 합법성 및 이력제 구축을 위한 ‘수산물 얼라이언스 구축 사업(The Seafood Alliance for Legality and Traceability, 이하 SALT)’이다. SALT 사업에는 USAID, 글로벌 개발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 이하GDA)⁴³⁾, FISHWISE⁴⁴⁾, 3개의 민간 재단⁴⁵⁾등 산·관·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개도국이 생산하는 수산물의 생산 정보를 수집·체계화함으로써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불법어업을 지양함으로써 수산 제품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동 사업은 2014년 미국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립한 ‘IUU 어업 및 수산물 위조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U.S. National Action Plan on IUU Fishing and Seafood Fraud)’의 권고사항 14번, 15번의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구축과 매우 유사하다. 해당 사업은 2017년 10월에 착수되었고, 대상

43) USAID의 민간협력프로그램

44) 수산자원 보호 NGO 단체

45) Walton Family Foundation, David & Lucile Packard Foundation, Gordon & Betty Moore Foundation

국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안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00만 달러이며, GDA 회원 기부를 통해 1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화 사업, 어업관리 및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얼라인먼트(Data Alignment) 사업, 데이터 표준화, 이력추적제 시범 사업, 개도국의 이력추적제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어업관리 개선사업이다. 또한 국제기구, 연구소,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SALT 사업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7〉 SALT사업 개요

분야	사업기간	사업비	대상국가	사업내용	참여범위
수산업/ 환경	2017.10 ~ 2022.10	5백만00만 달러불	전체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플랫폼 구축	USAID, GDA, FISHWISE 등

자료 : USAID SALT 사업 담당자 인터뷰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제3절. 시사점

제4장에서는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과 해외 주요 선진공여국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추진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농업분야 ODA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농업분야는 ODA의 추진체계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며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가 협력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가 국제농업협력 관련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3개 기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에서 농업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양자원조 사업과 다자성양자 및 순수다자 사업을 적절한 비중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지원하고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하에 2010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⁴⁶⁾은 국제개발협력 원조모델로서 농촌종합개발(새마을운동)을 선정하면서 다양한 농업분야 ODA 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2년 발표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⁴⁷⁾에서도 농어업영역 ODA 프로그램이 농업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

제2절에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수산분야 선진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의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추진체제와 추진 사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 체제가 2006년 JICA법 개정으로 2008년 신JICA가 출범함으로써 ODA 정책의 일원화가 이뤄졌다. 각 부처 및 기관에서 ODA 사업을 기획·실행하기 위해서는 외무성과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본 전체 ODA 정책의 일관성을 높였고 기관별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수산분야 사업 수행 기관인 JICA와 OFCF는 기본적으로 외무성이 마련한 ODA 원조 방침을 따르며, 각각 개별 사업을 수행하되 필요시 지식 제공, 지원 등의 형태로 협조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익 실현과 관련있는 나라에 협력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수산분야에서는 지역수산기구의 세미나 및 연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대상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다자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최근 다자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였다. 기존의 공여국-다자기구라는 국한된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채널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연계시킴으로써 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NGO, 정부,

46)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1호)』, 2010,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검색일: 2017. 12.15.)

47)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3-1호)』, 2012, ODA코리아(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검색일: 2017.12.15.)

민간분야가 참여하는 “ODA 얼라이언스”를 통해 3자 원조모델(Trilateral Model)을 구축하였다. 즉 공여국과 수원국, 선진국과 개도국 등 다수의 직·간접적인 지원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전문성,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하고 집적된 재원으로 해양수산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요약하면 첫째,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개발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고 농업 사례와 같이 상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개발협력의 모델은 우리나라 수산분야가 가지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되, 국제사회 및 연안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IUU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수산분야 양자원조, 다자원조간 균형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학·관·연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산 ODA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상호 공유하고 보완함으로써 수산 ODA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원조 인식도 조사 《

앞서 제3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수산분야 ODA 지원 규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산 ODA 사업의 양적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ODA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해외 어장 확보와 관련한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 ODA 사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제4장은 선진공여국인 일본, 미국의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추진 동향과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필요성, 추진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수산분야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조사 개요

설문조사의 목적은 수산분야 ODA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균형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수산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다자원조의 인식 수준, 추진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수산 원조사업에 참여한 수산 유관기관 및 대학, 수산 민간단체이다. 전체 전문가 100명 모집단을 기준으로 표본 수는 42명이며, 표본 오차는 90% 신뢰수준에서 $\pm 9.8\%P$ 이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주간이며 온라인 설문과 추가 전문가 심화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5-1〉 조사 설계

구 분	설문조사
조사대상	해양수산 ODA 전문가
표본 수	42명
표본오차	90% 신뢰수준에서 $\pm 9.8\%P$ (전문가 100명 모집단 기준)
조사방법	Google 설문 및 e-mail에 의한 온라인 조사, 전문가 심화 면담 조사
조사기간	2017.11.13. ~ 2017.11.24. (2주간)

2.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유형은 연구기관(48%)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14%), 대학(14%), 산업체(1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ODA 관련 근무 연수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0%, '15년 이상'이 24%로 전체의 1/3 이상이 10년 이상 ODA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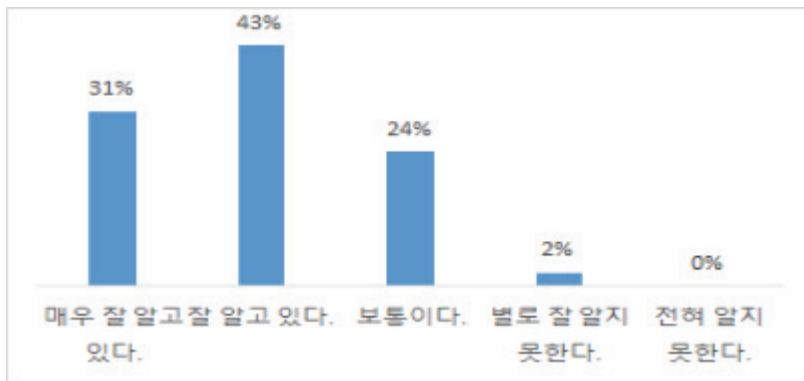
〈표 5-2〉 설문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2	100
근무기관 유형	정부기관	6	14
	연구기관	20	48
	대학	6	14
	산업체	6	14
	기타	4	10
근무 연수	2년 미만	10	24
	2년 이상~5년 미만	8	19
	5년 이상~10년 미만	10	24
	10년 이상~15년 미만	4	10
	15년 이상~	10	24

2) 수산분야 다자 ODA 사업의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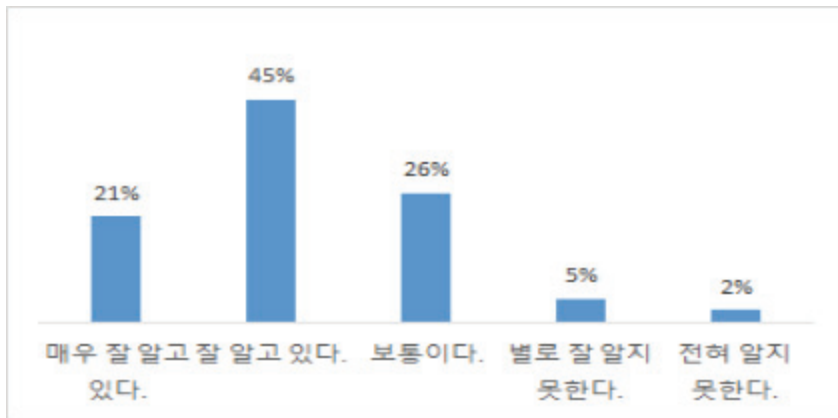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ODA 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74%(31명)가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4%는 인식 수준을 ‘보통이다’로 평가하고 있었다. 해양수산 유관기관 및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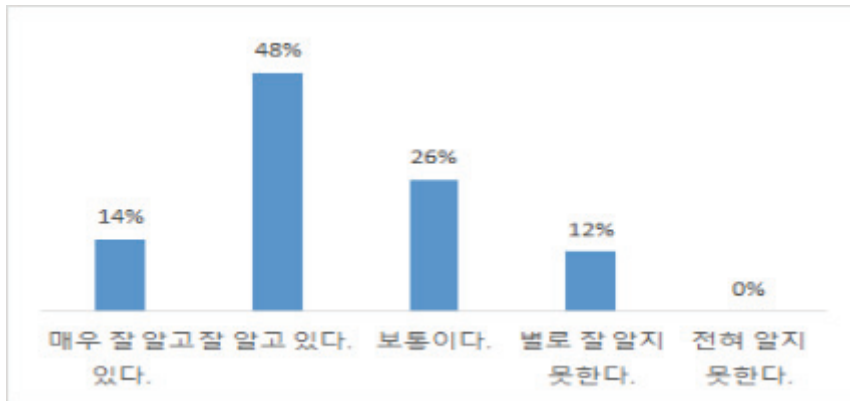


그러나 ODA 사업의 종류, ODA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 기본 계획 등 ODA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조 전달 경로에 따른 ODA 사업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양자원조 사업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응답자의 66%가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7%만이 양자원조 사업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다자원조 사업의 경우는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62%로 양자원조 사업에 비해서는 인식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양자원조 사업의 인식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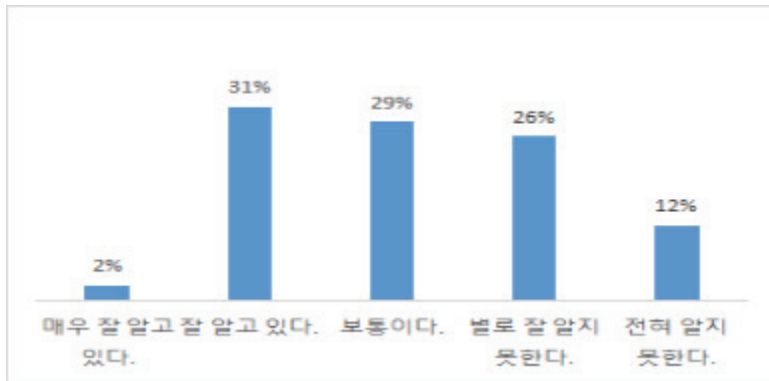
〈그림 5-3〉 다자원조 사업의 인식도 수준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기본계획인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53%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대체로 알고 있다’는 21%,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6%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의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지원 비율 목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33%가 ‘알고 있다’라고 하였고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즉, 수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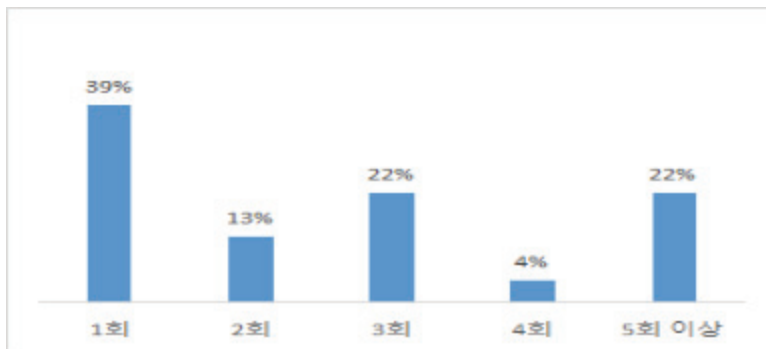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우리나라 국제개발계획의 인식 수준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양자사업의 참여 경험’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55%가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사업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5% 수준이었다.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3회 미만’이 전체의 74%를 차지하였고 ‘5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그림 5-5〉 수산분야 양자원조 참여 횟수



ODA 사업의 대상 지역은 크게 아프리카, 남태평양 지역, 중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세네갈, 기니, 기니비사우 등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동부의 탄자니아,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지역으로 양분되었다. 남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입어와 관련된 지역으로 피지, 투발루, 키리바시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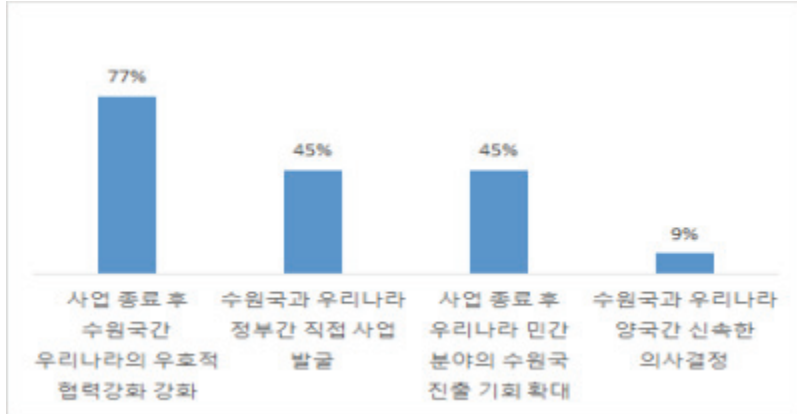
〈그림 5-6〉 우리나라 ODA 사업 대상 지역 분포도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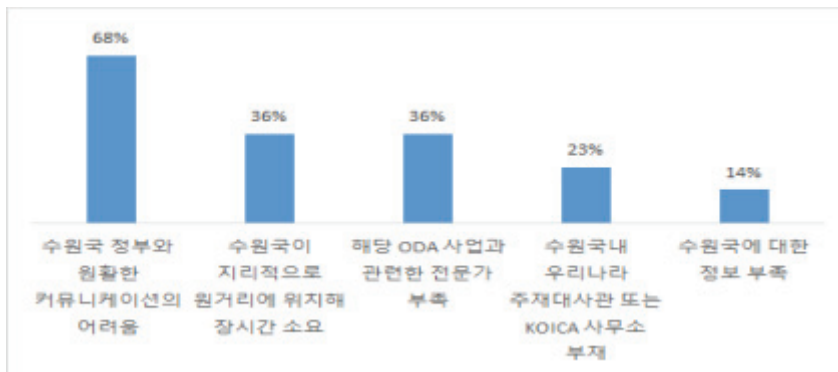
‘수산분야 양자 ODA 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수원국과 우리나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수원국과 우리나라간 직접적 사업 발굴’, ‘사업 종료 후 민간분야의 수원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를 차지하였다. 그 외 ‘수원국과 우리나라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즉 양자 ODA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원국간 사업 발굴과 추진 등이 빠르게 이뤄지는 점과 사업 종료 후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수원국 진출 기회 확대, 수원국간 협력 관계 증진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간접적 기대효과의 주요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5-7〉 수산분야 양자원조의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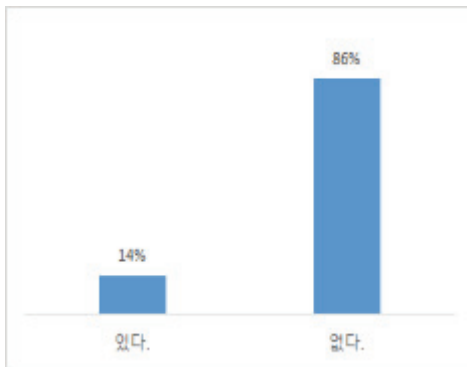
‘수산분야 양자 ODA 사업 수행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수원국 정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수산 ODA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부족’이 36%, ‘수원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36%를 차지하였다. ‘수원국 내 우리나라 주재대사관 또는 KOICA 사무소 부재’, ‘수원국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응답 비율도 각각 23%, 14%를 차지하였다.

〈그림 5-8〉 수산분야 양자원조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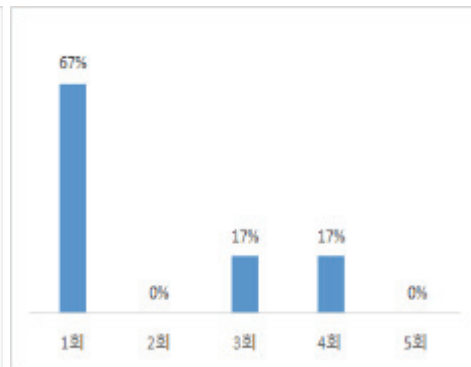


한편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4%만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수산분야 ODA 다자 사업의 참여 횟수를 질의한 결과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즉,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경험이 매우 낮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 횟수가 1회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그림 5-9〉 다자원조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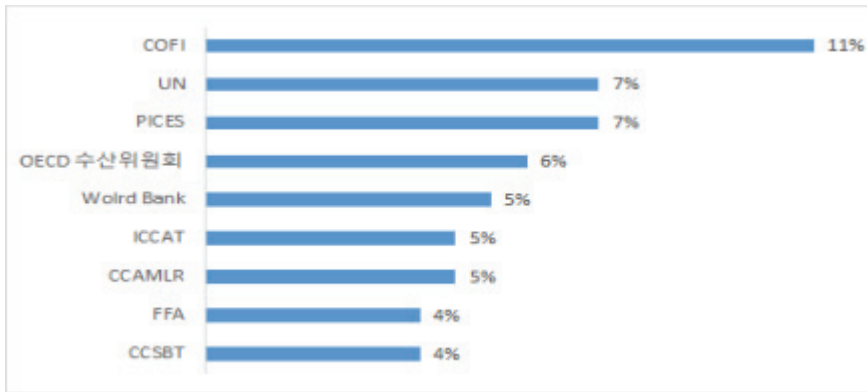


〈그림 5-10〉 다자원조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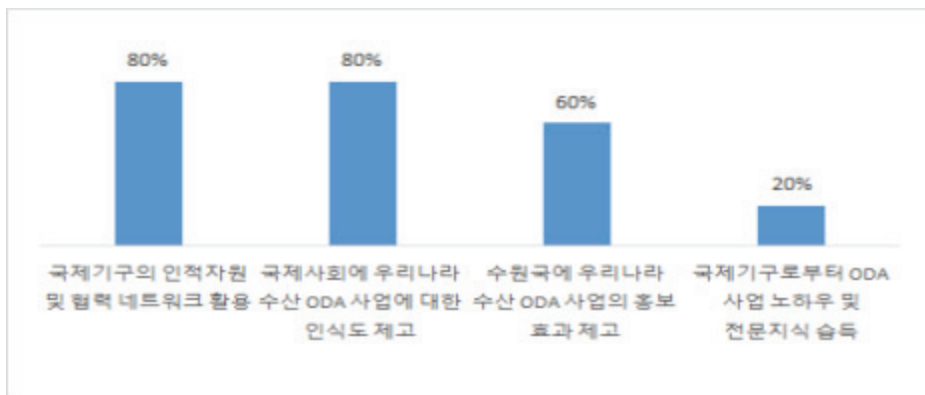
주로 협력하거나 또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에는 ‘세계은행’, ‘FAO 수산위원회(COFI)’, ‘UN’, ‘OECD’가 있었으며, ‘지역수산기구 및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태평양 수산위원회(FFA)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5-11〉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기관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각각 80%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의 홍보 효과 제고’, ‘국제기구에서 ODA 사업 노하우 및 전문지식 습득’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60%, 2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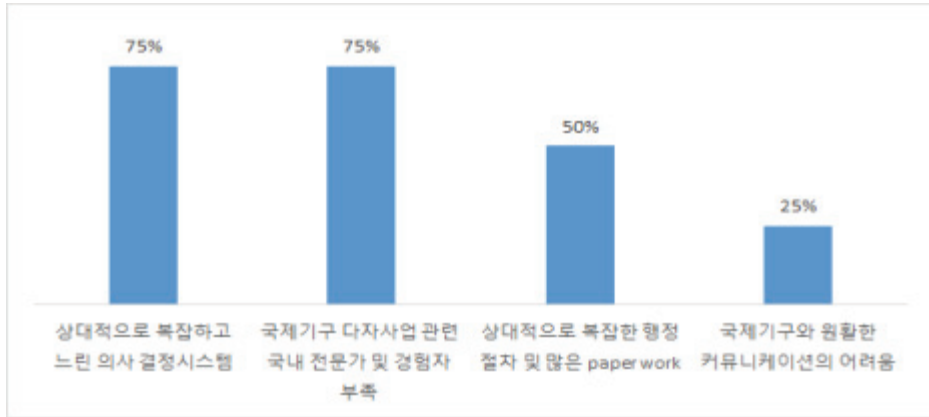
〈그림 5-12〉 다자원조의 장점



한편 ‘다자원조 사업 수행의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느린 의사 결정시스템’과 ‘국제기구 다자원조 사업 관련 국내 전문가 및 경험자 부족’이 각각 75%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복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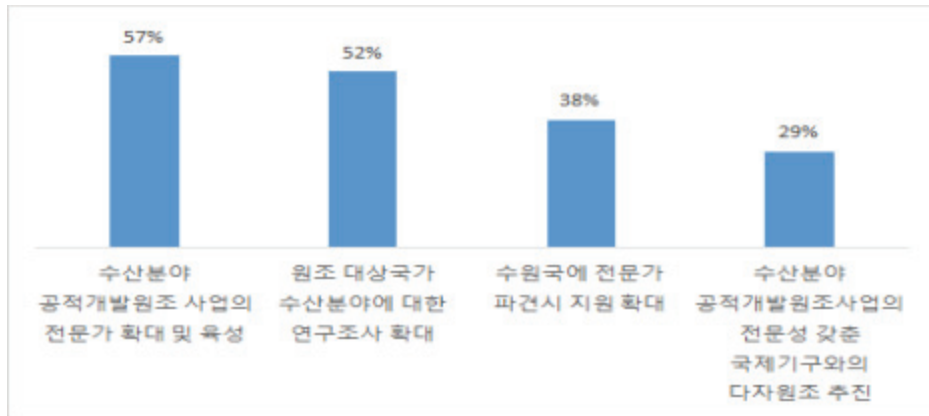
한 행정 절차 및 많은 문서 작업(paper work)', '국제기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 25%로 나타났다.

〈그림 5-13〉 다자원조의 추진시 애로사항



‘우리나라 수산분야 다자 ODA 사업 추진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57%는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전문가 확대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전문성 갖춘 국제기구와의 다자원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29%를 차지하였다.

〈그림 5-14〉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추진시의 개선사항



제2절. 시사점

본 장은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수산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병행하였다. 크게 다자원조의 인지 수준, 다자원조의 비교우위, 다자원조 수행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산 ODA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양자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자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개발은행(ADB)의 ‘말라위 내수면양식개발사업’과 가장 최근 세계은행의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 프로그램’ 사업 참여를 제외하고,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에 대한 참여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3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이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과 남태평양 지역에 집중되는데, 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다수가 양자원조의 애로사항으로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수원국의 물리적 장거리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즉 시차 문제, 수원국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낮은 사회·문화적 이해도 등이 사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주재대사관 또는 KOICA 사무소 등의 부재도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응답자들은 평가한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의 비교우위로 국제기구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 지역 및 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활용, 선진 ODA 사업 추진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자원조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수원국에 대한 전문가 부족, 수원국 중심의 사업 발굴의 어려움 등을 다자원조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하며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균형감 있는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만 다자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국제기구와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수산분야 다자원조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

제1절. 비전 및 목표

1. 비전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우리나라 수산분야 국익 추구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양자원조 사업과 함께 다자원조 사업의 상호 보완 및 균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연안국은 자원민족 주의를 넘어서 자국과 인접한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경제협의를 중심으로 통일된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자원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기여와 국격 제고」를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2. 정책 목표

수산분야 다자원조 증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의 선진화를 달성한다. 해양수산부의 2015년~2017년 ODA 규모는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물자지원 및 프로젝트 중심의 초기 단계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 또는 거시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에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 경험과 다양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산분야 주요 협상 대상국인 군소도서국 및 아프리카 지역에 국내 현장 사무소 등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장 지원 체계를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우리나라 수산 ODA 지원 채널 다양화·규모화를 통해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 양자원조 중심의 수산 ODA에서 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로 지원 채널을 다원화시킨다. 지역국제기구에는 연안국과 관련된 지역경제협의체, 지역개발은행(RDB)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지역별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수원국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프로젝트, 초청연수 중심의 수산 ODA 사업에서 수산 계획 등 수산서비스, 수산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 내용 다양화를 도모한다.

셋째, 다자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수산 ODA의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지역수산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다양한 원조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심포지엄 개최, 홍보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특정 원조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ODA 사업의 목적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과 우리나라 국익의 균형 있는 달성이라고 전제할 때,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사업은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수원국별 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진다.

제2절.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

1. 기본 방향

이상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필요성을 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수산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요인으로는 수산연구조사, 수산인프라 구축 등 사업 규

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현지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KOICA 사무소가 없는 지역, 수원국과 연계된 현지 지역경제협력체와의 연대 관계 등이다. 셋째, 우리나라 수산분야와 관련있는 국제기구(지역수산기구 포함)를 선정·중점 지원한다. 지역수산기구의 경우에는 기본 분담금 이외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신탁 기금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우리나라 신탁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국제기구 관할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IMF,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 UN, WTO, 한-아세안협력기금 등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이러한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수산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외교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추진 과제

1)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SDG 14 목표 달성과 관련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세계은행,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다자원조의 비율을 25% 이상 높일 것을 권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양자원조에 편중되어 있는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양자원조와 다자원조간 비중을 적절히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칭 ‘2020~2030년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되고 전체 계획하에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균형 있는 구성안을 도출한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향후 마련될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수산분야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개발협력의 모델은 우리나라 수산분야가 가지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연안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산 교

육, 수산 IT, 수산 양식, 수산 서비스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산 협력 모델을 마련하여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중점협력 국가와 중점협력분야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개발협력 모델을 선정하고, 정형화함으로써 양자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분야 개발협력 모델을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 수산분야 중점 협력기구 선정 및 중점 지원

수산분야 중점 협력기구를 선정하고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중점 협력기구의 선정시 고려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진출 연안국, 수산 기업이 다수 진출한 연안국 및 군소도서국의 수산경제협의기구의 존재 유무와 영향력 정도, 지역수산기구, 지역개발은행 등이다. 앞서 조사된 다자원조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UN 및 UN 산하기관 이외에도 우리나라 수산분야 국익 실현과 국격 제고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산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체계적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별로 분류하고 이들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 사업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전략적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3)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기여도 제고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2-TRACK 전략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OECD DAC가 분류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도 제고이다. 여기에는 UN,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지역수산기구와 해양수산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기여도 제고이다. 지역수산기구는 OECD DAC가 분류하는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선 입어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12개의 지역수산기구뿐만 아니라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등 다양한 해양수산과학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연안국 등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다수의 수원국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공통의 조직 목표를 가지고 있어 사업 발굴 및 추진시 타 국제기구에 비해

용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연례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추진 및 주제별 현안에 대한 소규모 국제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참석에 그치지 않고, 국제수산기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제안, 국제기구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전략적 다자원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산분야 양자원조 지원 규모가 크지만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다자원조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수산기구, 지역경제협력체, 해양수산과학기구 등을 통해 공동자원조사, 연안국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원한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구축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을 연례회의에 소개하거나 또는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유,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수산 지원 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신탁기금 활용 지원체계 구축

수산분야 다자원조의 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신탁기금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제기구별 신탁기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산 ODA 사업 특성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분담금 이외에도 녹색성장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핵심 개발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UN의 SDGs 채택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해양 등 관련 주요 개발의제를 포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 세계은행에 녹색성장기금을 설치하였고 2012~2015년간 4,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녹색성장기금으로 101개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48개 수원국에 우리나라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자문,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 중 많은 사업들이 세계은행 차관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해양간 긴밀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녹색성장기금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국내 수산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합목적성과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산분야 양자원조 사업과 더불어 다자원조 사업의 전략적 병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장에서 다자원조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다자원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자원조의 효과성과 공여국에 대한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Milner(2006)는 다자원조가 상대적으로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Miquel-Florensa(2006), Milner & Tingley(2013)도 다자원조가 양자원조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원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다자원조는 원조 행정의 인력과 비용 및 재정적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대수원국 개발정책과 투자사업에 효과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원조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정치·군사적 문제로 양자원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다자원조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 동향에 부합하기 위해 수산분야 ODA 사업에서도 다자원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제 OECD DAC 국가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확대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선언은 5대 원칙과 12개 지표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성과가 없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고려할 때 원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SDGs 달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라는 세부 목표에 입각하여 국제기구의 다자원조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수산 공유자원에 대한 공동 관리의 시급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안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수원국이 아프리카 지역 또는 남태평양의 군소도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수산소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ODA 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 정책 또는 계획과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ODA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수산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 사업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실제로 OECD DAC 국가들의 2015년 기준 다자원조 규모는 592억 달러로 전체 원조 규모의 41%를 차지하였고, 2004년부터 지정기여에 해당하는 다자원조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분야에 한정해 볼 때도, 2011년~2015년 5년 평균 양자원조 규모는 연평균 4.9%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다자원조는 3.1% 증가하여 2015년에는 다자원조 규모가 양자원조를 앞서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수산분야 ODA 사업을 하는 주요 국제기구로는 세계은행, UN으로 규명되었으며, 주요 지원 분야는 수산정책과 수산개발 분야이다. 특히 세계은행의 경우,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프로그램, 페루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우리나라 전반의 다자원조 추진체계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수산분야 ODA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현재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다자원조의 규모는 전체 ODA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 ODA 지원규모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나 대부분 양자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냈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자원조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확대추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수산기구의 회의 참석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현안 발굴과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 등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제 금융기구 다자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간, 해양수산부와 UN 관련 기관 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와외의 협업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다자원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농업 사례 및 주요 선진 공여국의 수산분야 다자원조 정책 및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예산은 2015년 510억 원에서 2017년 599억 원으로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자원조를 비롯한 농업분야 ODA 규모가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 농업분야 ODA 사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둘째, 농업분야 ODA 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협업이 가능한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농업분야 ODA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한국형 ODA모델 추진방안」에서 농촌종합개발(새마을운동)이 원조 모델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개발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고 가장 상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모델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개발협력의 모델은 우리나라 수산분야가 가지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연안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IUU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사례에서는 수산 선진공여국인 일본과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국익과 연관된 국가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며 관련 국제수산기구의 세미나 및 연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대상 지역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행하고 있었다. 국제기구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다자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순수 다자원조를 지양하고 ODA 사

업을 국의 실현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공여국-다자기구에 국한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 채널들이 참여하는 신원조 모델(Trilateral Model)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전문성,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5장은 수산분야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수산 ODA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관계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병행하였다. 크게 다자원조의 인지 수준, 다자원조의 비교우위, 다자원조 수행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산 ODA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양자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다자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과거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말라위 내수면양식 개발사업 참여를 제외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추진 사업이 거의 없었고, 일부 응답자가 세계은행의 ‘서부아프리카 지역 어업 프로그램’ 사업 참여에 대해서 응답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의 다수가 양자원조의 애로사항으로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수원국의 물리적 장거리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즉 시차 문제, 수원국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낮은 사회·문화적 이해도, 전문가 부족이 사업 수행을 어렵히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주재대사관 또는 KOICA 사무소 등의 부재도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응답자들은 다자원조의 비교우위로 국제기구의 폭넓은 인적 자원 및 전문성 활용,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의 가시성 확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자원조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수원국에 대한 국내 사업 사무소 부재, 수원국에 대한 전문가 부족의 문제점을 다자원조를 통해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균형 있는 병행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만 다자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국제기구와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수산분야 다자원조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 목표는 첫째, 우리나라 수산 ODA의 선진화 달성을 위한 기틀 마련, 둘째, 우리나라 수산 ODA 지원 채널 다양화·규모화를 통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셋째, 다자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수산 ODA의 인지도 제고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수산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필요성을 확립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수산 사업을 선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분야와 관련있는 국제기구(지역수산기구 포함)를 선정·중점 지원하고, 재원 확보 차원에서 현행 우리나라 신탁기금이 구성되어 있는 국제기구 관할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되어 4가지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 수산분야 중점 협력기구 선정 및 중점 지원,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기여도 제고, 우리나라 신탁기금 활용 지원체계 구축이다.

마지막 7장은 본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1. 법제도 개선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제21조 개정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거 마련

해양수산 다자원조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부처에서 조직 재량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관법률이 존재하는 정부 부처의 원조액은 545억 원으로, 소관법률이 없는 기관에 비해 490억 원 정도의 원조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⁴⁸⁾ 소관법률과 부처의 원조액과는 상관관계가 크다고

48) 박건우 외(2017) ‘정부부처별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사례를 중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로는 「원양산업발전법」과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이 있으나 국제협력으로 포괄되어져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의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6항이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고, 제18조(국제수산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서 “국제수산물협력체계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물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물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⁴⁹⁾고 되어 있어 협력의 목적을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협력의 범위도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로 한정하고 있어 연안국과 관련된 지역경제협력체, 국제해양과학기구 등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 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 및 국제기구로 협력의 대상은 적절하나 협력의 목적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수산물 개발 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의 제2조 개정 통한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근거 마련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의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및 해양수산물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심으로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2017. 3), p. 193

4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검색일 2017.12.03.)

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조직 정비

1)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 컨트롤 타워 구축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이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ODA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협업이 가능한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유관기관, 연구소, 학계 등 관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수산분야 ODA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 등 해양수산 ODA 전문 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관별 ODA 사업을 연계하여 다자사업으로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조직 및 업무를 명시한다.

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수산분야 다자원조 사업 발굴 협력 체계 마련

현행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산하 국제원양정책관에는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통상무역협력과 등 3개 과가 있다. 국제협력총괄과는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원양산업과는 원양산업과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와의 협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통상무역협력과는 수산과 관련된 WTO 등 다자협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양산업과가 담당하는 지역수산기구와의

다자원조 사업 발굴, 통상무역협력과의 WTO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산교역분야 역량개발 기술협력 사업 등이 가능하다. 각 과가 담당하는 지역수산기구, WTO 등과 추진할 수 있는 다자원조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3) 해양수산부-세계은행 환경국 MOU 체결 통한 수산 다자원조 사업 기반 마련

세계은행은 UN 다음으로 수산분야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기구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녹색성장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후 녹색성장 기금의 활용한 사업 추진 및 세계은행 추진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수산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계은행 환경국 및 세계은행 내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신탁기금과의 수산협력 양해각서와 협력의향서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환경부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은행 환경국 및 세계은행 내 한국 기획재정부 출연기금인 녹색성장신탁기금과 각각 환경협력 양해각서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개도국의 환경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종섭 외(2016), “다자성양자원조: 다자원조의 양자화인가 양자원조의 다자화인가? 국가사례의 제도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2016 봄, pp.1~47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2017 대한민국 ODA백서』
- 권율 외(2013),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지홍 외(2012), 『주요 수원국의 ODA사업 관리체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박건우 외(2017), “정부부처별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p.193
- 손혁상 외(2013),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계우 외(2006), 『다자간 개발 원조기관과의 협력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 외교통상부
- 이상미(2017), “미국·프랑스·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 『개발과 이슈』 30권, 한국국제협력단
- 오꽃별 외(2013), 『해외 주요국 농업 ODA 체계 및 현황 조사 : 농업관련 국제기구 포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임광택 외(2008),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통일연구원
- 정지원 외(201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Vol. 5, No. 46
- 박형중 외(2008),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통일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한국농어촌공사(2015),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21
- 한국수출입은행(2015), 『2015 세계 개발협력기관 편람』
- 한국수출입은행(2015), 『OECD DAC 동향』
- 허장 외(2017),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제32호
- 홍현표(2010),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현표(2011),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수산부(2015),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 SDGMUN 자료수집 보고서(한국어)(2015),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종합 보고서

〈해외 문헌〉

- Acharya, A., Fuzzo de Lima, A.T., & Moore, M. (2006), Proliferation and fragmentation: transactions costs and the value of aid,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1), pp.1-21.
- Alesina, A. & Dollar, D.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 Bird, G., A. Mori, and D. Rowlands. (2000), “Do the Multilaterals Catalyze Other Capital Flows? A Case Study Analysis,” *Third World Quarterly* 21, pp.483-503
- Burnside, C. and 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 pp.847-68
- Cassen, R. et al. (1994). Does Aid Work? *Report to an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Second edition. Oxford: Clarendon Press.
- Charron, N. (2011) ‘Exploring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 Has the “Anti-Corruption” Movement’ been Effective?’ *Developing Economies* 49(1): 66-88 (<http://doi.org/10.1111/j.1746-1049.2010.00122.x>).
- Christensen, Z., Homer, D. and Nielson, D.L. (2011) ‘Dodging Adverse Selection: How Donor Type and Governance Condition Aid’s Effects on School Enrollment’, *World Development* 39(11): 2044-2053 (<http://doi.org/10.1016/j.worlddev.2011.07.018>)
- FAO. (2016).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 Contributing to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or all* (<http://www.fao.org/3/a-i5555e.pdf>)
- Frank Voller. (2012), *Increasing Vi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How to reconcile two competing objectives?”*,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 IDA. (2007). *Aid Architecture: An Overview of the Main Trend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New York: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Resource Mobilization (FRM).
- Headey, D. (2005). *Foreign Aid and Foreign Policy: How Donors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CEPA working paper 5, Centre fo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Kingombe, C., Massa, I., & te Velde, D. W. (2011). *Comparing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Literature Review*. Report commissioned by DFID. London: ODI.
- Minoiu, C., & Reddy, S.(2007). Aid does matter, after all: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growth. *Challenge*, 50(2), 39-58
- Milner, H. (2006). Why multilateralism? Foreign aid and domestic principal-agent problems. In Hawkins, D.G., Lake, D.A., et al. (Eds.), *Delegation and Agenc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07-13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ner, H. V., & Tingley, D. (2013). *The choice for multilateralism: Foreign*

- aid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3), 313-341.
- Miquel-Florensa, J. (2006). *Aid Effectiveness: A Comparison of Tied and Untied Aid*.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Pierre Biscaye, Katie Panhost Harrus, Travis Reynolds, C, Leigh Anderson. (2015). *Relative Effectivenes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on development and social outcomes*, University of Washington Evans School Policy Analysis and Research(EPAR)
- OECD(2013), *Multilateral Aid 2013*
- OECD(2015), *Multilateral Aid 2015: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 Rio Ocean Declaration(2012), *Calling for strong and immediate action to me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oceans, coast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t Rio+20 and beyond* (<https://globaloceanforumdotcom.files.wordpress.com/2013/03/riooceandeclaration.pdf>)
- Rodrik, D.(1995). *Why is there multilateral lead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5160.
- Romero, M. J., Van de Poel, J. (2014). *Private finance for development unraveled*. Eurodad. Retrieved from: (<http://www.eurodad.org/files/pdf/53bebd93dbc6.pdf>)
- Ram, R. (2003) 'Role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Kyklos* 56(1):95-110 (<http://doi.org/10.1111/1467-6435.00211>).
- Schraeder, P., S. Hook, and B. Taylor. (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and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294-320.
- WorldBank(2016), *The little Green Data Book*
- WorldBank(2017), *The Potential of the Blue Economy : Increasing*

Long-term Benefits of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Coastal Least Developed Countries,

〈온라인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한국형 ODA모델 추진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3-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7-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3-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제2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0-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국내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pmo/office/office02_03.jsp#n)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ItSlPL.do?brd_seq=24&bltn_div=oda)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개도국 농업발전 손잡다’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33181&pageIndex=1&startDate=2008-02-29&endDate=2017-05-01&repCodeType=&repCode=&srchWord>)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gov.kr>)

〈해외 홈페이지〉

미국 국제개발처 홈페이지(<https://www.usaid.gov/>)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홈페이지(<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
 일본해외어업협력재단(OFCE) 홈페이지(<http://www.ofcf.or.jp/>)
 일본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policy/oda/budget/index.html>)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홈페이지(<http://www.iotc.org/data/iotc-ofcf>)
 카리브지역수산물기구(CRFM) 홈페이지(http://crfm.in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Itemid=101)
 세계은행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74981509978681209/pdf/ICRR-Disclosable-P106063-11-06-2017-1509978657400.pdf>)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https://www.cgdev.gov/>)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

OECD Stats(<http://stats.oecd.org/Index.aspx>)

UN홈페이지(<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부록 《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자원조 활용 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 자체 연구사업으로 수행중인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자원조 활용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수산분야 ODA의 균형있는 양자·다자원조 수행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자원조 활용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연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문의 : KMI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정명화 실장 / (Tel) 051-797-4571 (E-mail) jmh@kmi.re.kr
김세인 연구원 / (Tel) 051-797-4575 (E-mail) sein87@kmi.re.kr

[참고 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운용 계획,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비율 목표를 약 75:25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16개 부처가 50여개 기구에 약 1,655억 원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제1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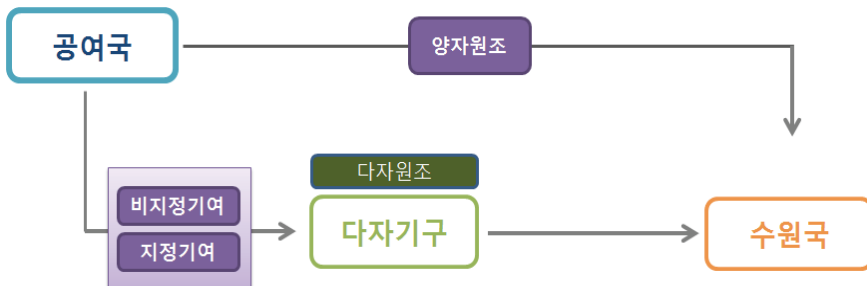
* 제2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

〈양자원조, 다자원조의 개념〉

국제사회의 ODA는 원조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뉜다.

양자원조는 자금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증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구분되며, 원조 유형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 등이다.

다자원조는 개도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국제기구 분담금 또는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PART I. 수산분야 다자원조사업 인식도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잘 알지 못한다.
- ⑤ 전혀 알지 못한다.

2. 귀하께서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양자원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잘 알지 못한다.
- ⑤ 전혀 알지 못한다.

3. 귀하께서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다자원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잘 알지 못한다.
- ⑤ 전혀 알지 못한다.

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잘 알지 못한다.
- ⑤ 전혀 알지 못한다.

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지원 비율 목표를 약 7:3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잘 알지 못한다.
- ⑤ 전혀 알지 못한다.

PART II. 수산분야 다자원조사업 추진 필요성

1. 귀하께서는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양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6번 문항으로 이동

2. 귀하께서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양자사업에 참여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사업 기준)

* KOICA/해양수산부/기관 자체사업 등 구분 없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3. 귀하께서 참여한 사업의 사업명과 대상 국가를 기재해 주십시오.

사업명	대상 국가

4. 귀하께서는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양자사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수원국과 우리나라 정부간 직접 사업 발굴
- ② 수원국과 우리나라 양국간 신속한 의사결정
- ③ 사업 종료 후 수원국간 우리나라의 우호적 협력강화 강화
- ④ 사업 종료 후 우리나라 민간 분야의 수원국 진출 기회 확대
- ⑤ 기타 ()

5. 귀하께서 겪으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양자사업 수행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수원국에 대한 정보 부족
- ② 해당 ODA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부족
- ③ 수원국 정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 ④ 수원국내 우리나라 주재대사관 또는 KOICA 사무소 부재
- ⑤ 수원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장시간 소요(예: 비행시간 및 출장 일수 등)
- ⑥ 기타 ()

6. 귀하께서는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다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1번 문항으로 이동

7. 귀하께서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다자사업에 참여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사업 기준)

* KOICA/해양수산부/기관 자체사업 등 구분 없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8. 귀하께서 참여한 사업의 사업명과 대상 국제기구를 기재해 주십시오.

사업명	대상 국제기구

9. 귀하께서는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다자사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국제기구로부터 ODA 사업 노하우 및 전문지식 습득
- ② 국제기구의 인적자원 및 협력 네트워크 활용
- ③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
- ④ 수원국에 우리나라 수산 ODA 사업의 홍보 효과 제고
- ⑤ 기타 ()

10. 귀하께서 겪으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다자사업 수행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많은 paper work
- ②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느린 의사 결정시스템

- ③ 국제기구 다자사업 관련 국내 전문가 및 경험자 부족
 ④ 국제기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⑤ 기타 ()

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로 협력하거나 또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수산)기구를 다음의 표에서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선택 가능)

* 리스트에 없는 기구는 기타 란에 직접 작성

기구명	선택(√ 표시)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World Bank (세계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FAO 수산위원회 (COFI)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APFIC)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ICCAT)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국제포경위원회 (IWC)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아·태경제협력체 / 수산실무 그룹회의 (APEC/FWG)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OECD 수산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Committee for Fisheries)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 (CBSPC)	
남방 참다랑어 보존위원회 (CCSBT)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전미 열대참치위원회 (IATTC)	
북태평양 소하성 어족위원회 (NPAFC)	
서남대서양지역의 수산자문위원회 (ARPAS)	
아프리카내수면 어업위원회 (CIFA)	
라틴아메리카 내수면 어업위원회 (COPESCAL)	
유럽내수면 자문위원회 (EIFAC)	

기구명	선택(√ 표시)
지중해 수산협의회 (GFCM)	
발틱해어업위원회 (IBSFC)	
국제해양탐사기구 (ICES)	
북태평양수산위원회 (INPFC)	
태평양남치위원회 (IPHC)	
태평양연어어업위원회 (IPFSC)	
동구수산위원회 (JFC)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 (NASCO)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NEAFC)	
북태평양물개위원회 (NPFSC)	
남태평양상임위원회 (SPPC)	
남태평양 위원회 (SPC)	
아·태지역 양식 기구 (NACA)	
라틴아메리카수산개발기구 (OLDEPESCA)	
아·태지역 수산물시장 정보 기구 (INFOFISH)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유럽 경제 공동체 (EEC)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북극이사회 (AC)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태평양 수산위원회 (FFA)	
기타.	

12. 향후 귀하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다른 수산관련 기관에서 국제기구와 수행할 수 있는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1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① 원조 대상국가 수산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확대
- ②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전문가 확대 및 육성
- ③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전문성 갖춘 국제기구와의 다자원조 추진
- ④ 수원국에 전문가 파견시 지원 확대
- ⑤ 기타 ()

PART III. 일반 정보

1. 귀하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 ① 정부기관
- ② 연구소
- ③ 대학
- ④ 산업체
- ⑤ 기타 ()

2. 귀하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얼마입니까?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경력

- ① 2년 미만
- ② 2년 이상 ~ 5년 미만
-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 15년 미만
- ⑤ 15년 이상 ~

부록 2. 전문가 자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세종

- PICES(생물해양학위원회) 위원장 및 국제해저지구 법률기술위원

○ 일본정부지원 특별 사업 목록

1. Development of the prevention systems for harmful organisms expansion in the Pacific Rim
 - 지원 기관: 일본 농림수산성(MAFF)
 - 사업 기간: 5년(2007.04.01~2012.03.31)
 - 사업 예산: CAD \$ 924,900



프로젝트 홍보 브로셔

2. Marine Ecosystem Health and Human Well-Being (MarWeB)

- 지원 기관: 일본 농림수산업성(MAFF) 산하 수산청
- 사업 기간: 5년(2012.04.01~2017.03.31)
- 사업 예산: CAD \$ 505,600

* 일본 농림수산업성의 사업 지원 예산은 일본 정부 ODA 자금으로 지원됨

3. Assessing the Debris-Related Impact From Tsunami (ADRIFT)

- 지원 기관: 일본 환경성
- 사업 기간: 3년(2014.04.15~2017.03.31)
- 사업 예산: CAD \$ 3,681,547

4. Building Capacity for Coastal Monitoring by Local Small-scale Fishers (추진 중)

- 지원 기관: 일본 농림수산업성(MAFF) 산하 수산청
- 사업 기간: 약 3년 (2017.12월 경~2020.03.31)
- 사업 예산: 1 차년도 CAD \$ 96,385 (2, 3차 미정)

* 일본 농림수산업성의 사업 지원 예산은 일본 정부 ODA 자금으로 지원예정

○ 일본정부 지원으로 수행된 PICES 특별 사업별 상세 내용

I. 해양 생태계 건강성 및 웰빙(Marine Ecosystem Health and Human Well-Being : MarWeB)

1. 사업 기간: 2012년 4월 - 2017년 3월

2. 사업 배경

최근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Ecosystem Based Fisheries Management)에 적용된 것처럼 해양 시스템 관리에 생태계 접근법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 개념에 대한 최근 시도에는 인간의 활동과 영향을 포함한 해양과 결합된 사회적-생태적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식된 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 비용 때문에 관리활동을 위한 훌륭한 과학적(생물리학적 또는 생태학적) 주장이 수락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태계 변화가 인간의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통합된 이해는 해양 생태계의 관리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 사회-생태적 시스템은 복잡한 피드백 관계에 사회(인간) 및 생태(생물리)의 하위 시스템을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 발생한다. PICES는 이러한 통합된 접근 개념의 발전에 기여하고 생태계 기반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태평양에서 이러한 개념을 지역범위에서 적용해 보았다. 또한 PICES는 해양 생태계에서의 인간활동/영향을 과학기반활동과 연결시키는 전문가 그룹을 2011년에 설립하여 현재는 영구 과학위원회가 되었다. 두 번째 PICES 통합 과학프로그램 인 FUTURE (Forecasting and Understanding Trends, Uncertainty and Responses of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 또한 주요 연구 목표에 생태계와 인간과의 강력한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 사회-생태적 시스템에서 인간 웰빙의 개념은 중요한 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웰빙은 지역 또는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리, 사회, 인간, 자연, 재정적 자원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의 대상적인 기준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웰빙도 포함하도록 그 관점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 해양자원의 개발자에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계 건강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 역동성과 웰빙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지속 및 복원 가능한 해양 사회-생태적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Charles 2012). 따라서 이 사회-생태적 시스템 접근 하에서 인간은 시스템의 필수 불가결 한 부분이다. 일본의 바다 공동체라는 '사토 우미 (Sato-umi)' 개념은 건강한 생태계가 인간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인간 본성적 접근의 한 버전을 나타내지만, 인간 활동은 생태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토 우미는 해양 환경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인간 상호 작용이 높은 해양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을 가져온 인간 공동체를 지칭한다(CBD Technical Series # 61). 일례로 일본 Seto Inland Sea의 지역 공동체가 실시한 잘피 재건 및 복구 활동이 있다. 비슷한 종류의 잘피 및 다시마 복원 활동이 캐나다 조지아 해협의 지역 공동체에 의해 제안되었다. 일본 정부는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하위 글로벌 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의 사토 우미 유형의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생태적 측면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사업목표

어업 사회 생태계 시스템(일본에서 ‘사토 우미’ 수산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음) 개념 하에 북태평양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 공동체와 생산적인 해양 생태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변화가 기후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a) 해양 생태계는 인간 웰빙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 (b) 인간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는가?
-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1) 인도네시아의 통합 다 영양 양식 (IMTA)과 관련된 사회 - 생태계 상호 작용
 - 2) 과테말라의 소규모 굴 양식과 관련된 사회적 생태적 상호 작용
 - 3) 해양 시스템과 관련된 국가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웰빙 큐브(well-being cube) 접근 방식 개발

4. 조직 구성과 예산

2012년 PICES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업부(MAFF)가 일본수산청(JFA)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해양 생태계 건강 및 인간 웰빙’에 관한 5개년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4월에 시작되어 2017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 505,660 CAD 였다. MAFF 예산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금에서 기인 한 것이므로 프로젝트 활동에 환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본 사업은 PICES FUTURE 프로그램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인간의 활동이 해안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인간사회는 생태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PICES Section-Human Dimension(현재 Human Dimension Committee)과 연계되어 수행되었다. Mitsutaku Makino 박사(일본 수산 연구원)와 Ian Perry 박사(캐나다 수산청)가 공동의장을 맡아 Project Science

Team (PST)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PST의 공동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과학적 실행 및 MAFF/JFA 및 PICES 과학위원회에 연례활동보고를 하였다. Alexander Bychkov 박사는 사업 및 예산관리 그리고 MAFF/JFA, PICES 집행위원회 보고 등을 담당하였다.

- PST 참여 연구원 명단: Hal Batchelder(PICES 사무국), Mitsutaku Makino/Ian Perry (공동의장), Keith Criddle(미국), Masahito Hirota (일본), Juri Hori(일본), 김도훈(한국), 김수암(한국), Skip Mckinnell(캐나다), Grant Murray(캐나다), 남종오(한국), Tom Therriault(캐나다), Vera Trainer(미국), Charles Trick(캐나다), Mark Wells(캐나다)

5. 예산 집행 내역:

	Year 1 2012- 2013	Year 2 2013- 2014	Year 3 2014- 2015	Year 4 2015- 2016	Year 5 2016- 2017
Revenue					
MAFF Contribution	\$149,880	\$130,036	\$83,553	\$75,202	\$66,989
Interest	\$151	\$479	\$137	\$49	\$83
Total	\$150,031	\$130,515	\$83,690	\$75,251	\$67,072
Expenses					
Travel and meetings	\$65,637	\$67,974	\$49,244	\$33,136	\$31,750
Contracts	\$32,680	\$45,271	\$35,013	\$44,413	\$33,891
Equipment and supplies	\$0	\$0	\$548	\$0	\$0
Miscellaneous	\$293	\$383	\$93	\$364	\$133
Overhead	\$19,484	\$16,905	\$10,862	\$9,776	\$8,709
Total	\$118,094	\$130,533	\$95,760	\$87,689	\$74,483
Remainder from previous year		\$31,937	\$31,919	\$19,849	\$7,411
Revenue less Expenses	\$31,937	-\$18	-\$12,070	-\$12,438	0
Balance forward	\$31,937	\$31,919	\$19,849	\$7,41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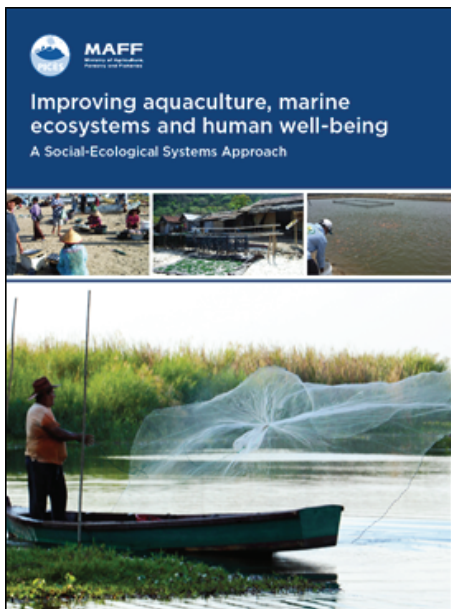
6. 결과물 (보고서, 출판물, 홍보자료, 워크숍, 교육훈련)

a) 보고서/출판물

- ① MarWeB 과학보고서 요약문 -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로

PICES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게시

- ② MarWeb Advisory Report (그림 2; <http://meetings.pices.int/publications/projects/Marweb/MarwebAdvisoryReport.pdf>).
- ③ PICES Scientific Report Series No. 52, (2017) 출판
(그림 3; <http://meetings.pices.int/publications/scientific-reports/Report52/Rpt52.pdf>)



MarWeb Advisory Report



PICES Scientific Report No. 52

b) MarWeB 데이터베이스 제공

- ① PICES 회원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 웰빙 분석 자료
- ② 인도네시아의 2014-2016 양식 연못 실험 자료
- ③ 과테말라 지역 사회 요구 평가를 위한 electronic clicker survey 자료
- ④ 프로젝트에서 인용 활용된 참고 문헌 목록

c) 그 외 PICES 뉴스 기사

- PICES 프레스에서 출판된 기사 (7 개) : Vol.21, No. 1, pp.26-28 (2013 년 겨울) 및 2 권, 18-19 페이지 (2013 년 여름), Vol. 23, No.

2, pp. 28-30 및 pp. 31/40 (2015 년 여름), Vol. 24, 1, 29 ~ 30 절 (2016 년 겨울)과 2 권, 28 ~ 31 절 (2016 년 여름), 그리고 Vol. 25, 2, 31 ~ 34 절 (2017 년 여름)

d) 심포지움 및 토평 세션 개최

- ① PICES 2014 (한국, 여수): 토평세션 ‘Ecological and human social analyses and issues relating to Integrated Multi-Trophic Aquaculture’
- ② ICES/PICES 심포지움 2016 (프랑스, 브레스트): ‘Understanding marine socio- ecological systems: Including the human dimension in Integrated Ecosystem Assessments’
- ③ PICES 2017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토평세션 ‘Marine ecosystem health and human well-being: A social-ecological systems approach’

II. 쓰나미 연계 해양 쓰레기 영향 평가(Assessing the Debris-Related Impact From Tsunami: ADRIFT)

1. 사업 기간: 2014년 4월 - 2017년 3월

2. 사업 배경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동북부 지진은 규모 9.1로 일본의 토호쿠 해안을 강타하여 해안선을 넘어 내륙으로까지 대규모 쓰나미 영향이 미쳤다.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이 재해로 1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6,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 쓰나미로 약 500만 톤의 쓰나미 잔해(파괴된 건물, 집기, 자동차, 선박 등을 포함한 파편 및 잔해)가 육지와 해안에서 바다로 휩쓸려 유입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잔해의 70 %가 해안 가까이 바다에서 해저로 가라앉을 것이며, 약 150 만 톤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북미 및 하와이 해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였다.

북미 해안에서 일본 쓰나미 잔해가 처음으로 확인 된 것은 2012년 3월이었으며, 그 후로 1600개가 넘는 잔해가 목격됐으며 이들 잔해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잔해로 확인 되었다. 북미 해안은 이미 육상 및 해양기원의 잔

해로 부터 이미 영향을 받아 왔지만, 이번 쓰나미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과 다량의 잔해 유입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에 추가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잔해 자체의 영향 외에도, 이 잔해들이 일본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종을 북미 연안으로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잔해들 중에는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 해변에서 발견된 두 개의 대형 콘크리트 부두 구조물(일본 미사와 기원)에는 일본 연안에만 서식하는 생물 수 백종의 수 만 개체(불가사리, 히드라, 홍합, 물고기 등)가 살아있으며 활동적으로 생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물종의 대부분은 이전에 북미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으며, 이들 외래 생물종의 유입은 북미 연안의 연안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3. 사업 목표

전반적인 사업 목표는 2011 년 일본 동부 지진 (일본 쓰나미 기원 잔해/파편), 특히 쓰나미 잔해를 통한 북미와 하와이 연안에서의 외래 생물종(non-indigenous species)유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여 관련 연구 및 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a) 북태평양에서의 쓰나미 잔해 이동 모델링
- b) 쓰나미 잔해의 상륙과 축적 모니터링
- c) 북미 태평양 지역의 연안 생태계에 대한 쓰나미 잔해 및 관련 외래생물종 유입의 잠재적 영향 평가

4. 조직 구성과 예산

2014 년에 PICES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ADRIFT 사업을 사업기간은 3년, 총 사업비 3,681,547 캐나다달러로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PICES FUTURE 프로그램 (인간의 활동과 해안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주제 3) 및 PICES 전문가 그룹(WG 21과 31)과 연계하여 관련 활동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Thomas Therriault 박사(캐나다 수산해양부), Hideaki Maki 박사(일본 환경연구원)와 Nancy Wallace(미국 NOAA)이 공동 의장을 맡아서 Project Science Team(PST)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공동 의장은 프로젝트의

과학적 수행과 일본 환경성 및 PICES 과학평의회에 연례보고를 담당하였으며, PICES 첫 번째 방문 과학자인 Cathryn Clarke Murray 박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였다. Alexander Bychkov 박사는 사업 및 예산관리 그리고 일본 환경청, PICES 집행위원회 보고 등을 담당하였다.

- PST 명단: Alexander Bychkov(사업관리), Thomas Therriault/Hideaki Maki/Nancy Wallace(공동의장), Cathryn Clarke Murray(캐나다), Patrick Cummins(캐나다), James Carlton(미국), Atsuhiko Isobe(일본), Hiroshi Kawai(일본), Amy MacFayden(미국)

ADRIFT 참여 연구자 명단: John Chapman(미국), Kristine Davidson(미국), Toshio Furota(일본), Jonathan Geller(미국), Gayle Hansen(미국), Takeaki Hanyuda(일본), Takami Hideki(일본), Hirofumi Hinata(일본), Shin'ichiro Kako(일본), Masafumi Kamachi(일본), Tomoya Kataoka(일본), Sandra Lindstrom(캐나다), Nikolai Maximenko(미국), Jessica Miller(미국), Kirsten Moy(미국), Brian Neilson(미국), Michio Otani(일본), Gregory Ruiz(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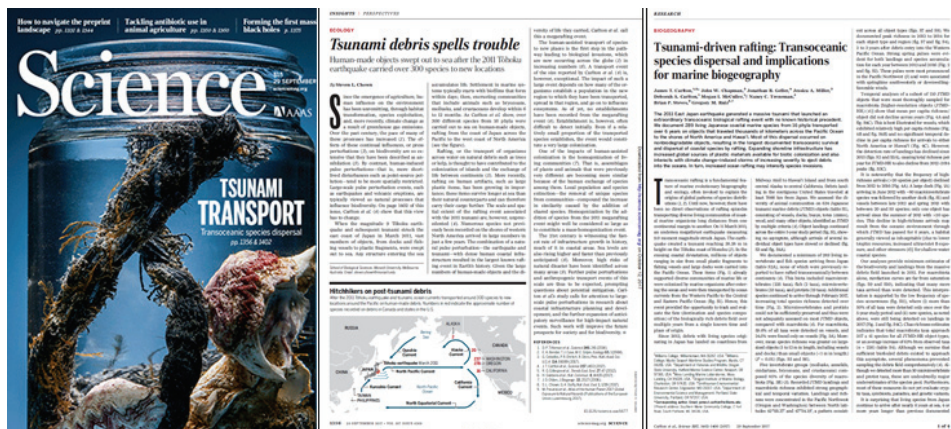
5. 예산 집행 내역:

	Year 1, 2014-15	Year 2, 2015-16	Year 3, 2016-17
Revenue			
Contribution	\$1,099,691	\$1,290,929	\$1,290,927
Interest	\$3,667	\$2,839	\$787
Total	\$1,103,358	\$1,293,768	\$1,291,714
Expenses			
Travel and meetings	\$77,904	\$98,180	\$94,105
Contracts and grants	\$742,230	\$1,150,668	\$938,496
Equipment and supplies	\$9,105	\$2,501	\$598
Publications			\$89,965
Miscellaneous	\$813	\$2,353	\$3,320
Overhead	\$142,960	\$167,821	\$167,821
Total	\$973,012	\$1,421,523	\$1,294,305
Remainder from previous year		\$130,346	\$2,591
Revenue less Expenses	\$1,303,460	-\$127,755	-\$2,591
Balance forward	\$130,346	\$2,591	\$0

6. 결과물 (보고서, 출판물, 홍보자료, 워크숍, 교육훈련)

a) 보고서/출판물

- ① Science지 표지, 기사 및 논문(그림 4 참조)
- ② ADRIFT Scientific Report(2018년 예정)
- ③ A Special Issue of Aquatic Invasions (open access journal) on 'Transoceanic dispersal of marine life from Japan to North America and the Hawaiian Islands as a result of the Japanese Earthquake and Tsunami of 2011' (Guest Editors: James Carlton and Amy Fowler) (in press)
- ④ A Special Issue of Marine Pollution Bulletin on 'The effect of marine debris caused by the Great Tsunami of 2011' (Guest Editors: Cathryn Clarke Murray, Thomas Therriault, Hideaki Maki and Nancy Wallace) (2018년 출판 예정)
- ⑤ 일본 쓰나미 잔해 관련 저서 생물 해조류에 대한 형태학적 문서: Oregon State University의 온라인 도서관 (<https://ir.library.oregonstate.edu/xmlui/>) (2017).



관련사업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2017. 9.29일자 사이언스지의 표지, 기사와 논문으로 출간

b) 홍보 자료

- ① ADRIFT Factsheet - 일반인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결과를 강조한 브로셔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음) (인쇄물 형태와 웹을 통해 배포됨. 그림 5 참조; <http://meetings.pices.int/publications/other/ADRIFT-Factsheet-English.pdf>)
- ② ADRIFT Videoscribe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목적 및 결과를 강조하는 4 분짜리 동영상(유튜브에 게시됨)



사업 홍보물

c) 데이터베이스 제공

- ① 스미소니언 환경 연구 센터에 일본 쓰나미 잔해 관련 생물종 데이터베이스 (<http://invasions.si.edu/nemesis/jtmd/index.jsp>) 구축
- ② Royal British Columbia Museum (RBCM, Victoria, BC, Canada, <https://royalbcmuseum>)에 일본 쓰나미 잔해 관련 생물 표본 기탁 보관(2017년 완료)
- ③ 코베 대학 (http://www.research.kobe-u.ac.jp/rcis-kurcis/KURCIS/FieldGuide2017_may14LR.pdf) 형태적 해초 식별 안내서 정보 온라인 제공

d) 그 외 PICES 뉴스 기사

- PICES 프레스에서 출판된 기사 (6 개) : Vol. 23, No. 1, pp. 28-30

(2015 겨울) 및 2 권, 32-36 (2015 년 여름), Vol. 24, No. 1, pp. 24-28 (겨울 2016) 및 제 2 권, 26-27 (여름 2016), Vol. 25, No. 1, pp. 32-35 및 36-39 (겨울 2017).

e) 심포지움 및 토픽 세션 개최

- ① 제9차 해양생물침입종 국제컨퍼런스 (2016년 1월, 호주 시드니).
- ② PICES 2016 (미국, 샌 디에고): 토픽세션 'Effects of marine debris caused by the Great Tsunami of 2011'
- ③ ICES 2017 (미국, 포트 라더렐): PICES/ICES Theme session 'Bioinvasion trajectories and impacts in contrasting marine environment'
- ④ 6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 (2018, 미국, 샌 디에고): 토픽세션 'The risk of marine debris mega-pulse events: Lessons from the 2011 Great Japan Tsunami'
- ⑤ 사업결과 홍보 및 공유를 위한 일본 국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017)
 - 미니 심포지움 (일본, 동경) 'Effects of marine debris caused by the Great Tsunami of 2011'
 - 세미나 'Marine debris from the Great Tsunami of 2011 - Overview' (일본 센다이, 토호쿠 대학)
 - 대민 홍보 이벤트 'Where have the tsunami-rafted objects gone?' (일본 센다이)

III. 지역 소규모 어업을 통한 연안 모니터링 역량 구축 (추진 예정)

(Building Capacity for Coastal Monitoring by Local Small-scale Fishers)

〈제안서 내용 요약〉

1. 사업 배경 및 목표

일본 농림수산성은 공식적으로 "지역 소규모 어업을 통한 연안 모니터링 역량 구축"이라는 새로운 PICES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반적인 사

업 목표는 환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어부가 연안 생태계 및 연안 어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을 통해 답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 (a) 기후와 경제의 세계적 변화가 연안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b) 지역 어업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연안 지역의 어업 관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예 : 어류의 증가, 지속 가능한 어업의 실현)?

2. 예산지원 및 운영

농림부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수산청 (Japan Fisheries Agency of Japan, JFA)을 통해 기금을 제공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비 PICES 회원국 및 관련 국제 프로그램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예산은 일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금에서 기인하므로 환태평양 지역 개발 도상국의 프로젝트 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3. 사업기간 및 자금 조달

최대 예상 사업기간은 3 년으로서 : 2017 년 11월(잠정)부터 2020 년 3 월 31일까지 사업 1년차(사업 시작일부터 - 1 년 동안)의 지원 예산은 96,385 캐나다 달러이며, 예산에는 13 %의 PICES 간접비(오버 헤드)가 포함되어 있다.

4. PICES 활동과의 연결성

본 사업은 PICES 인간 활동 위원회(HD) 및 수산학 과학위원회(FIS), PICES 모니터링 기술위원회 (MONITOR) 및 FUTURE 프로그램의 연구테마 3(인간 활동이 연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인간사회가 어떻게 영향 받는가?)와 연계되어 있다.

이들 관련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될 PST에 대표를 추천하여 PST 의장은 PICES 멤버가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공동 위원장 중 한 명은 일본 과학자인 HD 부회장인 Mitsutaku Makino 박사(일본 수산 연구원, mmakino@affrc.go.jp)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5. 주요 이니셔티브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2 가지 주요 내용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 1) 생태계 변화 (예: 새로운 종의 출현 또는 수질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지역의 소규모 어업활동을 통한 연안 생태계 모니터링;
- 2) 연안수산자원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의 소규모 어업활동을 통한 감시 (예: 지역어업활동(어구, 어망 등)과 시장에서의 어종에 관한 정보)

이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PICES 회원국의 과학자들의 참여와 함께 역량 구축 워크숍을 PST 첫 회의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6. 결과물

- ① PICES Scientific Report
- ② 홍보용 팸플렛 출판
- ③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④ PICES Press에 기사 기고

※ 추가 세부 원칙: 사업 수행에 대한 MAFF/JFA 및 PICES간의 동의 내용

- ① PST의 공동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과학적 실행과 MAFF 및 HD위원회를 통한 PICES 과학위원회에 대한 연례보고를 담당한다.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일본 수산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연차별 활동 계획에 대한 요약 및 차년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송금한 예산을 입금하기 위해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PICES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한 사업관리자는 연차별 사업종료 후 90 일 이내에 MAFF/JFA 및 PICES 집행위원회에 예산 관리 및 집행에 대해 보고한다.
- ③ 매 회계연도마다 이자와 잔액은 JFA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자료, 데이터,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PICES 및 일본 정부에 부여되며 각 당사자는 그 결과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출처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Appendix- PICES 특별사업에 대한 승인 및 관리에 대한 정책 규정(초안)

[PICES - Policy of approving and managing Special Projects]

I. Definition and Principles

A Special Project (hereinafter as the Project) is a limited duration project supported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by a Contracting Party and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PICES, in support of the scientific mission of the Organization.

The Project welcomes the participation of all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given due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and balance between PICES and the proponent.

The Project will use the existing mechanisms of PICES with the objective of minimizing any additional workload in the PICES Secretariat which cannot be compensated through the overhead retained by the Organization from the project funding.

The ownership of the outputs of the project, including materials, data,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specified in the Project Proposal.

For the purposes of evaluation, approval and implementation, Projects will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rojects with budgets below CAD \$50,000.

Projects with budgets of CAD \$50,000 or above.

II. Approval Procedures

1. The proponent shall provide the Project Proposal.
2. Projects with budgets below CAD\$50,000 will be evaluated and approved by the PICES Chair, Science Board Chair and Executive

- Secretary, with notification to the members of Governing Council.
3. For Projects with budgets of CAD\$50,000 and above, the following approval process will apply:
 - a. Science Board is responsible for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Project Proposal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to Governing Council.
 - b. The Chair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Executive Secretary are also required to review the Project Proposal, with a focus on financial aspects, workload and operational feasibility, forwarding recommendations to Governing Council.
 - c. Governing Council is responsible for approval of the Project. The PICES Chair will consult with all Contracting Parties for consensus to make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PICES procedures.

III. Implementation

1. For Projects with budgets below CAD\$50,000, the following management processes will apply:
 - a. Project funds will be deposited in the PICES Working Capital Fund.
 - b. The Secretariat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on financial aspects of the Project to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who provide recommendations to Governing Council.
 - c. Identified paren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on scientific progress to Science Board, who provides recommendations to Governing Council.
2. For Projects with budgets of CAD\$50,000 and above, the following management processes will apply:
 - a. Project funds will be deposited in a separate account.

- b. The Secretariat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on financial aspects of the Project to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who provide recommendations to Governing Council.
- c. A Project Science Team (hereinafter as PST) will be established,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tailed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project, and reporting on scientific progress to the identified parent Committee.
- d. Science Board is responsible for recommending the members of PST, with the agreement of relevant Committee(s). If the Project does not have members from all PICES Contracting Parties, then any Contracting Party who does not have a member on the PST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name a member or provide a statement declining this opportunity.
- e. A representative of the proponent organization may serve as a co-chair of the PST.
- f. The Secretariat may designate certain personnel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s well as keeping close contact with the proponents.
- g. Science Board or the designated parent Committee will take responsible for oversight of the scientific activities of the Project, and to review the reports.
- h. Science Board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to Governing Council on the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the Project.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to Governing Council on the financial and management aspects of the Project.

IV. Sharing the achievements of the Project

1. The PST shall submit scientific reports of the Project to the relevant Committees, Science Board and the proponent agency.
2. Science Board is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scientific report and reporting results to the Governing Council.
3. Governing Council will approve any reports as part of the normal process for approval of the PICES Publication plan.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자원조 활용 방안

• 인 쇄	2017년 12월 29일 인쇄
• 발 행	2017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양 창 호
•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조판·인쇄	(주)디자인월드 Tel :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6,000원